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제2판

Explanation of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제2판

Explanation of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eface

발간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1976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5년부터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산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취가격 형성과 농산물 출하자, 도매시장 유통주체 및 소비자 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통 촉진 등 농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분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청과부류 농산물 52%가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는 등 먹거리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도매시장 변화 요구를 반영하고, 유통주체의 의견수렴과 학계·연구를 포함한 '도매시장 전문가 협의체' 논의·검토를 통해 '23.1월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1판 출간 이후 10년이 지나 제2판을 발행하는 2023년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첫해로, 출하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도매시장 기능과 유통환경 혁신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전자송품장 도입, 출하자 지원 공익기금 출연 및 산지 스마트 APC 구축 등 도매시장의 디지털 혁신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은 온라인도매시장과 연계하여 시장 내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통합 물류거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도매시장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지 출하농업인, 도매시장 유통주체 및 소비자에게 운영·관리와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오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지 출하자와 유통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적극적인 참여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농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욱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제2판 발간으로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금년도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매시장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은 농안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농산물 유통 관련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 | | | |
|----|------|-------------------------------------|-----|
| 목차 | 발간사. |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 | 002 |
|----|------|-------------------------------------|-----|

Part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
| 01. 농안법의 역사 | 008 |
| 02. 농안법의 제정 및 개정사항 | 016 |
| 03. 농안법의 구성 | 040 |
| 0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 | 041 |
| 05. 대형 유통업체 규제 해외 사례 | 045 |
| 06.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현황 | 050 |

Part 2.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농안기금

| | |
|--------------------|-----|
| 01.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 054 |
| 02. 농림업관측 | 061 |
| 03. 계약생산 | 064 |
| 04. 가격예시 | 067 |
| 05.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 068 |
| 06. 정부비축사업 | 074 |
| 07.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 079 |
| 0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085 |
| 09. 농안기금의 조성 | 088 |
| 10. 기금의 운용·관리 | 089 |
| 11. 기금의 용도 | 090 |

Part 3. 농수산물도매시장

| | |
|---------------------|-----|
| 01. 도매시장의 분류 | 095 |
| 02.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 100 |
| 03. 도매시장의 개설 | 101 |
| 04.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 106 |
| 05.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108 |
| 06.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111 |
| 07.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115 |
| 08.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 116 |
| 09. 중도매인의 허가 | 117 |
| 10.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 124 |
| 11.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 130 |

| | |
|-------------------------|-----|
|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 132 |
| 13. 경매사의 임면 | 134 |
|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 137 |
| 15. 출하자 신고 | 140 |
|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 141 |
| 17. 거래의 특례 | 148 |
| 18. 수탁의 거부 가능 사유 | 149 |
| 19. 출하대금결제 | 150 |
|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153 |
| 21.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157 |
| 22. 하역업무 | 160 |
| 23.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163 |
| 24. 도매시장 등의 평가 | 164 |

Part 4.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 |
|----------------------|-----|
| 01. 공판장의 개설·운영 | 168 |
| 0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 172 |
| 03. 산지유통제도 | 175 |
| 04.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 | 177 |
| 0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 179 |
| 06.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181 |
| 0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 | 1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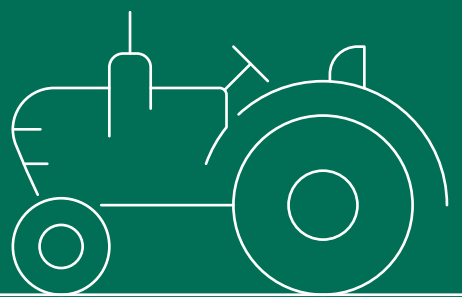
부록.

| | |
|--|-----|
| 01. 농안법 판례(대한민국 법원) | 186 |
| 02. 농안법 유권해석 요약(농림축산식품부) | 201 |
| 03.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고시 제2020-25호) | 220 |
| 04.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2020년) | 223 |
| 05.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고시 제2017-77호) | 228 |
| 06.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고시 제2013-71호) | 229 |
| 07.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고시 제2013-309호) | 230 |
| 08.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고시 제2014-5호) | 235 |
| 09.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고시 제2016-53호) | 236 |
| 10. 시장도매인 운영지침(2000.10.) | 237 |
| 11.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용어 | 250 |
| 12.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 홈페이지 | 266 |
| 13. 도매시장 거래체계 | 267 |

Part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의 역사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농협 및 수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당시 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고급화의 요구가 커지면서 시장거래 가격도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 중심의 필수양념류의 가격이 일반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부차원에서의 농수산물가격안정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에 그동안 시행되어 온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축산법, 양곡관리법 등 농산물유통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유통개선사업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농안법 변천과정

1951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 전문 16개,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 상공부에서
시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

1973



1973년 2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전문 37개 조문)

1976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전문 68개,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

Now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59회에 걸쳐 개정

STORY 1.

1970년대 양념류 가격폭등 - “결혼반지 대신 고추를...”

1970년대 후반에는 고추를 비롯한 마늘, 양파 등 필수 양념류의 가격 폭등이 아주 심하였는데, 고춧값이 600g당 1만 원으로 당시 자장면 한 그릇 값이 200원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이었다. 이렇게 가격이 치솟다 보니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 대신 고추를 끼워주는 만화가 신문에 등장할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는 고추를 ‘금(金)추’라고 불렀다.

STORY 2.

2010년 배춧값 폭등 이슈

2010년도 8월 29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 기습 호우,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배추 한포기의 가격이 1만 5천 원까지 폭등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국내산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사업을 강화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 등에 대응하고자 2013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 경쟁구조의 변화]

| 1945~1950 | 1950년대 | 1960년대와 그 이후 |
|---------------------------------|------------------------------|-------------------------------|
| <p>많은 위탁상에 의한 위탁도매시장 구조</p> | <p>많은 위탁상에 의한 유사도매시장</p> | <p>무수한 위탁상에 의한 유사도매시장</p> |
| | <p>법정도매시장 (1도시1시장)</p> | <p>법정도매시장 (1도시1시장)</p> |
| <p>무법·혼란</p> | <p>2원적 경쟁구조</p> | <p>농협공판장</p> |
| | | <p>3원적 경쟁구조</p> |

1) 혼란과 모방시대 (1945.8~1951.6)

- 도매시장에 관한 법 없음, 행정력도 없었던 공백의 무법혼란의 기간
- 일제에 의해 개설·운영되던 중앙도매시장이 일제의 관행을 승계하여 모방·운영
- 경성중앙도매시장(1939년 중림동, 합동 일대)
 - 경성수산물배급주식회사 → 서울수산물주식회사('47년)
 - 경성중앙청과주식회사 → 중앙청과주식회사('46년) → 서울청과주식회사('63년)
- 주요상권

일제 중앙도매시장(중림동, 합동)

청과(북창동 일대, 남대문시장) 위탁도매시장권 형성

[1935년 부산 중앙도매시장]



1935년 개장했던 중앙 도매 시장의 전경이다. 2층 건물[시장 본관]이 1동 있었으며, 선어부와 청과부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부지는 7,418.4㎡[2,248평]이었으며, 건물의 총 건축 면적은 4,913.7㎡[1,489평]의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시장 본관]이 1동 있었다.

중매인의 경우 선어부는 약 50명, 부속 소매인은 약 200명이었고, 청과부의 경우에도 거의 같은 수였다. 도매업무는 크게 선어부(鮮魚部)와 청과부(靑果部)의 2부로 대별되는데, 각 부마다 도매인을 지정하여 생산자[화주(荷主)]로부터 화물의 판매 위탁을 받아서 주로 경매에 의해 지정된 중매인에게 판매하였다. 도매인의 경우 선어부는 부산수산물주식회사, 청과부는 부산청과주식회사로 각각 지정하여 시장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 출처 : 부산향토문화백과

2) 중앙도매시장법 적용시대 (1951.6~1973.1)

(1) 중앙도매시장법과 동법의 특징

- 일제의 “시장규칙” 준용하여 「중앙도매시장법」 법률 제정(51.6.22)
-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공포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골자는 「일본 중앙도매시장법(1923)」 모방법

(2) 1950년대

- 일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도매회사를 승계한 부분만을 양성화
- 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부재
- 중앙도매시장 설치 현황(1957)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이리(익산), 전주, 군산, 대구, 청주, 목포, 김천, 포항, 광주, 마산, 경주

(3) 1960년대와 그 이후

- 3원화 경쟁체제(중앙도매시장/농협공판장('61.4월~)/위탁상)
 - 농협이 농수산물도매기능에 능동적으로 참여(1961년~), 부산에서 농협 공판장이 처음 개설되었으며, 1962년 서울, 대전, 대구, 광주로 늘어났음. 농협공판장에 늘어남에 따라 법정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됨
 - 시장점유율(서울, '72년) : 중앙도매시장 15%, 농협공판장 20%, 유사도매 시장 65%
 - 상공부는 공판활동을 배제하려고 하고 농수산부는 공판활동 보호

[1962년도 “농산물은 공판장에서” 영상 발취]



왼. 1962 부산 농산물 공판장 전경 / 오. 1962 부산 농산물 공판장 거래모습

- 출처 : 한국정책방송원

- 중앙도매시장 소관부서 이관 노력('67년) : 상공부 → 농수산부
- 염천교 중앙도매시장(중매인) 중심으로 독자적 위탁도매시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
 - 서울청과 경영쇄신 일환으로 상장물품만을 중개/위탁수수료 7% 중 3% 납부 압력('63년)
 - 시설임대업자가 나진산업주식회사 설립, 용산 시장시설 임대 시작('67년)
- 주요상권 : 용산시장 시대(1969~1985)

법정도매시장(서울청과/농협공판장) / 유사도매시장(나진시장/태양시장)

[1960년대 말,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염천교시장)]



(1960년대 말) 서울청과주식회사 전경

- 출처 : 농업인신문

[1969. 5. 10.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개장(대한뉴스 발취)]



왼. 1969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개장 전경 / 오. 1969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경매모습

- 출처 : 한국정책방송원

3)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시대 (1973. 2~1976. 12)

(1) 농수산물도매시장법('73년)과 동 법의 특징

- 농수산부의 관장을 제도적으로 실현
- 공적시장으로서의 성격 강화 : 유사도매행위 금지와 벌칙 강화

(2) 무정책과 불법시장의 변창

-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미흡
- 정책부재가 불법적인 위탁상들의 발호 촉진
 - “불법”도매시장을 “유사”도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줌
- 법 제정 전후('72년/ '77년) 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 비교(서울)
 - 유사도매시장(65% ⇒ 73.7%), 법정도매시장(15% ⇒ 19.4%), 농협공판장(20% ⇒ 6.9%)

[1977년 용산 김장시장]



왼. 1977 용산 김장시장 / 오. 1977 용산 김장시장 전경

- 출처 : 국가기록원

4) 농안법과 유통개혁정책 추진시대 (1976. 12. 31 이후)

(1) 농안법의 제정·공포와 동 법의 특징 및 정책의 변화

- 비현실적인 조항은 피하고 현실에 접근함으로써 유통개선을 유도하려는 적극적, 실천적 의지를 보여줌 (ex. 1도시 1시장 원칙 폐기, 복수법인 제도 채택)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적시장으로 건설·육성하고자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건설을 적극 추진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① 도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법정도매시장이 취약한 상태 하에서 유사도매시장에 의해 압도되어 도매시장 기능이 크게 위축
- 법정도매시장 소유현황 : 개설자 소유(14%), 도매회사 소유(65%), 임차(21%)

② 가락동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 1977.8.3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 방침 결정
- 1979.8.6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결정
- 1980.4.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건설계획 수립
- 1982.4.13 건설 공사 착공
- 1984.4.10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인가
- 1985.6.19 청과, 수산시장 개장
- 1988.5.15 직판시장 개장

5) 가락동 도매시장의 개장 당시 현황

(1) 현대적 유통실현의 좌절과 그 원인

- 대규모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개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은 과거 용산청과도매시장의 전근대적, 비능률적 상관행을 유지
- 원인 : 법을 무시한 채 불합리하게 상인조직 구성/배치
 - 도매법인/중도매인 → 지정도매인/중매인/보조중매인/소매인
 - 도매기능을 담당할 유통주체와 법에 의한 유통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잡상인들을 도매시장에 모두 함께 입주
- 상인들에 의해 불법적 위탁거래량이 법인에 의한 상장거래량을 훨씬 초과하고 도매기능 업무분담에 대한란 이야기 ⇒ 1988년 불합리한 상인조직을 직판시장동 강제입주의 미봉책

(2) 농안법과 도매시장의 조직 및 기능

- 농수산물유통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허가받은 상인들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업무를 잘 수행하여 도매기능 원활히 함
- 현실은 농안법에도 없는 보조중매인, 소매인을 잔품처리명분으로 입주시켜(개장 당시 3,885명) 생업유지 어려움에 따라 불법영업을 하게 됨
- “기록상장제” : 불법위탁판매에 의한 거래량의 일부를 상장경매한 것처럼 서류처리
 - 지정도매인 입장 : 상상수수료 취할 수 있음
 - 중매인 입장 : 불법 위탁판매 영업 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상장된 물품 구매 실적 필요, 1인당 매달 20만 원~50만 원 범위 금액을 납부

(3) 가락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실태

① 중도매인 불법행위 : 불법위탁판매/거래실적 노출 안됨

- 기록상장, 서류상장(법인, 중도매인 간 상호협력)
- 차명출하(출해주세탁 : 8% 위탁수수료 5% 법인, 출하장려금 중도매인 취득)
- 중도매인 선취매매(경매 전 상품 빼기, 품질하락으로 경락값이 떨어짐)
- 중도매인 장외거래(경매참가→산지 물품 수집하여 직접 납품)

- 중도매인 폭리
- 중도매인 조직적 경매방해 : 고의적 저가 응찰, 응찰 불참
- 중도매인 명의대여 : 경매참가자들이 종업원이나 차명 중도매인
- 중도매인 점포 불법매매, 임대

2 법인 불법행위

- 기록상장 : 경매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 경매비리 : 부득이한 낙찰가격 재수정 외(ex. 숙박이로 인한 품질 불일치) 중도매인에게 유리하도록 관행적 경락 가격 조작하여 부당이득 공유

3 앞자리상의 존재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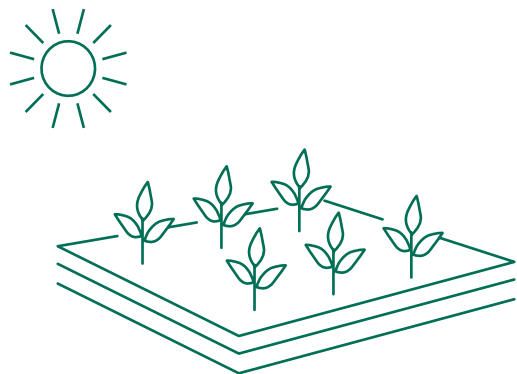
- 앞자리상 : 중매인 점포 앞에 하매인, 앞자리상인이라고 통칭
- 위탁판매업시 물품 인수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 전담하고 중도매인은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음 (유통단계 추가)

[1990년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왼. 1990 가락시장 전경 / 오. 1990 가락시장 전경

- 출처 : 한국정책방송연구원, 국가기록원



농안법의 제정 및 개정사항

1) 중앙도매시장법

(1)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1951.6.22 법률 제207호 상공부]

지방공공단체가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일상 식료품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의 적정 등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1 생선어류·패개류·염건어개류·염장어개류·과실류·소채류·조수육류·조란류 기타 일용식료품 중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도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 구역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함
- 2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3 상공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개설하고자 하는 중앙도매시장이 그 업무규정에 제출된 취급물품의 운반·저장·판매 기타에 관한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한 설비가 구비되거나 또는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 4 개설자는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5 개설자는 다음에 계기(揭記)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중앙도매시장의 취급물품 및 그 소속부류
 - 중앙도매시장의 수수할 사용료·보관료 및 수수료
 - 도매업무를 행할 자의 수수할 사용료·보관료 및 수수료
- 6 상공부장관 또는 지방 장관은 중앙도매시장개설자 또는 도매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7 중앙도매시장의 폐지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중앙도매시장법

[일부개정 1952.12.16 법률 제267호 상공부]

- 1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2 상공부장관이 중앙도매시장을 허가할 때에 도매시장유사업무 또는 도매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 또는 폐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개설자는 폐쇄 또는 폐업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2)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1)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1973. 2. 6 법률 제2483호 농림부]

상공부장관이 관장하던 도매시장업무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함으로써 주로 농수산물을 다루는 도매시장과 농협 및 수협이 개설하는 공판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도매시장과 공판장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중앙도매시장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① 도매시장의 개설은 부류별로 1도시 1시장제로 함
- ② 농수협이 개설하는 공판장은 원칙적으로 1도시 1시장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함
- ③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기금을 적립하게 함
- ④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자의 도매시장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구역내에서 겸업행위를 할 수 없게 함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76. 12. 31 법률 제2962호 농수산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①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약생산, 출하조정, 보상, 비축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함
- ②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운영과 도매시장에 두는 지정도매인, 중매인 및 경매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③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농수산물유통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④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600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⑤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⑥ 법률 제2483호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법률 제1815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함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78. 12. 5 법률 제3118호 농수산부]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신선식품 및 기호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하여 농수산물은 공급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요의 불균형으로 그 가격이 불안정하므로 농수산물의 증산을 지속화하여 공급의 안정을 기하고 가격진폭이 큰 농수산물은 그 수요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품목의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최소물량을 상시비축하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매 적절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기동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금의 운용관리 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① 농수산부장관은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자 단체와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채소류등 비저장성농수물을 수매하여 판매·수출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③ 용자 또는 대하(貸下)만 인정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함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48호 농수산부]

축산물 등 농수산물의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수협 이외의 축산진흥회 등 공익상 필요한 법인도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양곡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양곡류를 추가하여 양곡부류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② 농수협만이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공판장을 축산물등 농수산물등의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도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이용, 우선제공대상에 농수협 이외의 공익법인도 추가함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5호 농림수산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 ① 종전에는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부류마다 개설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부류별로 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 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함
- ②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시설관리·거래질서유지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③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54호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가 여러단계로서 중간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도 문란하여 반사회적 거래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여, 중앙도매시장 중심의 종합유통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② 지정도매법인·중매인 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정함 →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조항으로 '94년 5월 농안법 파동 발생

- ③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게 하고 경매사의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 ④ 대량입하품목·규격포장품목의 우선판매제도,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
- ⑤ 소비자단체·소매상·협동조합·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공판장의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함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4.11.1 법률 제4785호 농림수산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① 종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안법 파동으로 인한 중도매업의 업무범위 재조정 반영
- ② 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전매매(발떼기)를 제도화하고, 산지 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함
- ③ 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④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등이 공동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⑤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등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⑥ 도매시장의 집하·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 대한 판매를 인정하고, 중도매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접 집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⑦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제시제와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함
- ⑧ 개설자가 하역업무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⑨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⑩ 도매시장 이용자에게 환경·위생 등 질서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⑪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의 중도매인허가나 매매참가인등록은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도매인이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⑫ 산지농어민과 도시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유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47호 농림수산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1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
- 2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함
- 3 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농림부]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사업목적이 중복·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 1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5조)
- 2 농림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3 생산자 등은 농수산물의 자률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하여 그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 4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하여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 방법 등을 정함(법 제36조 및 제37조)
- 5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 절감 및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함(법 제40조)
- 6 민간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용방법등을 정함(법 제47조 및 제48조)
- 7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보증금납부제도·폐업허가제도·휴업승인제도 및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 등을 폐지함(현행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 삭제)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5.1.1] [법률 제7275호, 2004.12.3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수산부문 기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7.7.4] [법률 제8178호, 2007.1.3,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매사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 마련(법 제23조제2항, 법 제23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법인의 대형화가 필요함
 -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으면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의 규모화 및 도매시장의 정비축진이 기대됨
- ② 경매사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법 제27조의2 신설)
 - 경매사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의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경매사 자격취득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경매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③ 수탁거부금지 의무의 완화(법 제38조)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 의무로 인하여 도매시장에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및 유해농산물 등이 유입되어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발생 등이 초래됨
 - 유통명령 위반 출하품,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품, 안전성검사결과 기준 미달 출하품 및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출하품 등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품질 농수산물의 출하 확대 및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④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법 제38조의2 신설)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⑤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법 제78조의2 신설)

- 도매시장내 농수산물거래과정에서 유통주체간 또는 거래당사자간에 자주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출하자 간, 유통인 간 또는 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도매시장 내 민원의 외부확산 방지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⑥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법 제90조제1항 신설)

- 유통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행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유통명령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9.6.27] [법률 제9178호, 2008.12.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①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법 제5조 및 제7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를 폐지함

②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법 제27조의2)

현행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③ 거래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법 제35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④ 양벌규정과 과태료 절차초항의 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 현행 제91조 삭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과태료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함

(12)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7.26] [법률 제9954호, 2010.1.25,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기준 국내의 전자거래 규모는 630조 원에 달하고 이 중 기업 간 거래(B2B)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분야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 기업 간의 거래는 표준화·규격화,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기존 거래관행의 선호 등으로 전자거래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임으로,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전자거래를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함(법 제2조 제14호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의2 신설)
- ③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70조의3 신설)

(13)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22] [법률 제10886호, 2011.7.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4)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3] [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部類)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는 한편,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시장도매인제 확대의 제약요인 해소(안 제22조)
현행 중앙도매시장에 부류(部類)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시장도매인에 의한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②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안 제23조)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함
- ③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3조의2, 제25조 및 제47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함
- ④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함
- ⑤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출하대금과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한 정산 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 ⑥ 포전매매 계약 관련 개선(안 제53조제3항 및 제9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을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으며,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⑦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안 제7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나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⑧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및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함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59호, 2013. 8. 13.,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상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유통인을 일반인은 물론 산지유통인 당사자도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2조제11호 중 “자”를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1. “산지유통인”(產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38호, 2013. 12.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인바,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고, 산림청장이 임업관측 실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에 산림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업 관련”을 “농림업 관련”으로,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 ③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 ④ 제8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9호, 2014. 3.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 ②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46조제2항,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 ③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주체 확대(제3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④ 농수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제70조의2제1항 및 제70조의3제1항)
- ⑤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제77조제1항)
- ⑥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정가·수의매매 관련 행정처분 삭제(제82조제2항제9호 삭제)
- ⑦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자격과 중도매인·경매사 자격의 결격사유 변경(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제36조제2항제3호)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2.3.] [법률 제13131호, 201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허가·임면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여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 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제23조제3항제2호 중 “임원 중”을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로 한다.
- ② 제25조제3항제2호 중 “금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 ③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금고”를 각각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로 한다.
- ④ 제1호 중 “임원 중”을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로 한다.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3.25.] [법률 제12509호, 2014.3.24.,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 ②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46조제2항,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 ③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주체 확대(제3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④ 농수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제70조의2제1항 및 제70조의3제1항)
- ⑤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제77조제1항)
- ⑥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정가·수의매매 관련 행정처분 삭제(제82조제2항제9호 삭제)
- ⑦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자격과 중도매인·경매사 자격의 결격사유 변경(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제36조제2항제3호)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54호, 2015.6.22.,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부정 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에 관한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체납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관리에”를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자격증 발급”을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로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3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제5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82조제4항 중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 ⑦ 제83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의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면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 [법률 제14290호, 2016.12.2.,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 생산, 가격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 조절 기능을 하도록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 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발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3호, 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도별 주산지협의회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민간인 등의 행정 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4조제1항 중 “수급”을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크고”를 “크거나”로 한다.

③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의2(주산지협의회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회(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 한 것으로 본다.

㉑ 사·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제8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수산물을 사용한 자

㉒ 제87조를 삭제한다.

㉓ 제89조 본문 중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제86조 및 제88조”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부터 적용한다.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0호, 2016.12.2.,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생산, 가격 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 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발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643호, 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도별 주산지협의회 및 중앙주산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민간인 등의 행정 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만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4조제1항 중 “수급”을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크고”를 “크거나”로 한다.
- ③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조의2(주산지협약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 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약체(이하 “협약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협약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협약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8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 ⑧ 제87조를 삭제한다.
 - ⑨ 제89조 본문 중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제86조 및 제88조”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부터 적용한다.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43호, 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도별 주산지협의회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민간인 등의 행정 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4조제1항 중 “수급”을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크고”를 “크거나”로 한다.
- ③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 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 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8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제

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⑧ 제87조를 삭제한다.

⑨ 제89조 본문 중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제86조 및 제88조”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부터 적용한다.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이득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4항 신설)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38조의2제2항)
- ③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④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5조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 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2호의2·제26호 및 제82조제5항제10호·제11호 신설)

- ⑥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8조제9호의2 신설)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39호, 2019. 8.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자거래 방식에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35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주요 제정 및 개정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p>조선총독부가 시장규칙 제정 (1914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사업 실시(1913 ~ 1917년) ■ 시장을 4종류로 구분하고 시장의 개설과 감독, 상권 장악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시장 : 한국의 전통시장(정기시장) - 2호시장 : 공설시장(일용품시장) - 3호시장 : 청과물·수산물의 경매식 시장 및 딸나무 시장 → 오늘날 도매시장 - 4호시장 : 곡물과 유가증권 거래시장 ■ 우리나라를 자기나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부산중앙도매시장 개설(19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1923년에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
| <p>「중앙도매시장법」 제정 (1951.6.2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만 허용 - 개설 : 시청소재지에 개설(1도시 1시장체제), 상공부장관의 개설 허가 필요 - 운영 : 공익상 인정되는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 |
| <p>「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1973.2.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 상공부 → 농수산부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 지방정부 - 개설 : 1도시 1시장 원칙 명문화, 농수산부장관의 개설 허가 필요 - 기금 : 시설기금 적립의무화 (수수료 및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재투자, 정부의 재정지원 명문화) |
|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76.12.3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 1도시 1시장제 폐지 - 운영 : 도매업무 대행제 → 지정업체 - 농수산물 가격 및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판매·비축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충 운영 |
| <p>제7차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54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도매법인에 수탁판매외에 매취판매를 허용 - 소매상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구성과 경매참여 허용 - 경매방식을 거수수지식과 전자식으로 한정 - 산지경매식 집하장의 공판장 전환허용 조항 신설 -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 제한 ■ 소위 「농안법 파동」의 직접적 계기가 됨 |

[주요 개정사항 요약 2]

| 구분 | 주요 내용 |
|---|--|
| <p>제8차 일부개정 (1994. 11. 1, 법률 제4785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파동」이후 마련된 유통개혁대책을 반영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개영업 허용 - 포전매매의 제도화 및 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 지정도매인의 명칭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변경하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출자법인제도 도입으로 관리·운영 일원화를 가능하게 함 -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제도 및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거래 허용 - 출하자의 경락 최저가격제시제 도입 |
| <p>제9차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47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 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추천을 받음 - 농림수산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 - 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 <p>제14차 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23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도매 시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측, 가격예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등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수급안정 프로그램 반영 -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 -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 - 민간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 개설 허용 -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보증금납부제도·폐업허가제도·휴업승인제도 및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 등을 폐지 |
| <p>제23차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78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 마련 - 수탁거부금지 의무의 완화,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

[주요 개정사항 요약 3]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26차 일부개정 (2008. 12. 26, 법률 제9178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 -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으로 거래한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 허용 |
| 제30차 일부개정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곡물 수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곡물관측사업 실시 - 안전성검사 결과 미달품의 도매시장 출하제한 -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 제한 |
| 제35차 일부개정 (2012. 2. 22, 법률 제11349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거래방식 다양화, 대금정산조직 설립, 포전 매매방식의 개선 등 제도 보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방식을 경매입찰 원칙에서 정가·수의매매로 확대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 마련 - 중앙도매시장 소속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계약 및 과태료 기준 마련 - 부진한 도매시장 관리위탁 권고 |
| 제57차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18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 |
| 제58차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39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자거래 방식에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 |

농안법의 구성

농안법은 현재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은 91개 조문,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은 57개 조문으로 되어있다.

농안법의 구성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적용배제 등)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제4조~제16조)

-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계약생산, 자조금 제도, 가격예시,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몰수농수산물 관리, 유통명령, 비축사업, 수입추천, 수입이익금의 부과 등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제17조~제42조)

- 도매시장의 개설, 개설구역, 허가기준, 개설자의 의무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인수·합병, 공공출자법인
- 중도매업허가, 매매참가인신고, 경매사임면 및 신고, 산지유통인등록, 출하자신고
- 수탁판매원칙, 매매방법, 경매 또는 입찰방법, 거래의 특례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수탁 거부금지 등
-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하역업무, 대금결제, 수수료징수제한, 지방도매시장 운영특례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제43조~제53조)

-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특례, 민영도매시장
- 집하장, 산지유통센터, 포전매매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

■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제62조~제78조)

- 정비기본방침, 소매유통개선, 종합유통센터 설치
- 유통자회사, 교육훈련, 평가실시, 도매시장관련 위원회 등

■ 제7장 보칙(제79조~제85조)

- 보고, 검사, 명령, 허가취소 등

■ 제8장 벌칙(제86조~제91조)

Chapter 0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¹⁾

1) 목적²⁾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규모점포, 체인사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등의 기준 설정 및 육성, 지도
 - 유통표준코드, 유통표준전자문서, 판매시점정보관리, 물류설비 등의 촉진
- ※ 1997년 4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제정

2) 법의 구성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적용배제³⁾

1) 농안법은 유통산업 중에서 농수산물을 다루는 특별법적 성격

2)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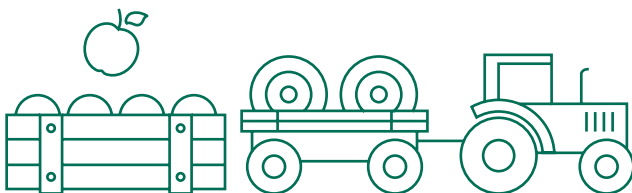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관련 조항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제5조~제7조의4)
 -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유통산업 실태조사, 유통업생생발전협의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제3장 대규모점포 등(제8조~제14조)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개설계획 예고, 등록취소, 개설자의 의무, 영업시간 제한, 휴업·폐업 신고, 전통 상업보존지구 지정, 영업정지, 임시시장 개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업시간 제한
 -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제15조~제20조)
 - 분야별 발전시책,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지원, 상점가진흥조합지원, 전문상가 단지 건립지원 등
-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제21조~제25조)
 - 유통정보화 시책, 유통표준전자문서, 유통전문인력 양성, 유통관리사, 유통산업 국제화 촉진 등
-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제26조~제35조의2)
 -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제36조~제43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의 조정, 분쟁 조정절차,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상거래의 투명화
- 제8장 보칙(제44조~제48조)
 - 청문,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보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수수료, 과태료
- 제9장 벌칙(제49조~제52조)

[국가별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일반현황]

| 구분 | 일본 | 프랑스 | 미국 | 한국 |
|-----------|---|--|---|---|
| 법·제도 | 도매시장법 | 법령 1), 정령 2) | PACA 3) | 농안법 4) |
| 법 제정의 목적 | 도매시장의 계획적 정비, 개설 및 거래 규제 | 거래의 투명성과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매시장 중 공익시장 지정 | 농산물 유통 전체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 금지, 업자의 면허제, 거래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 등) |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개설 및 거래제도 관리 |
| 행정기관 | 농림수산성 | 농업식품부, 재경부, 내무부 | 미국 농무부 (USDA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농림축산식품부 |
| 도매시장의 구분 |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기타 | 공익시장, 공익시장 이외의 시장 | 법률이 아닌 관례로 구분 Terminal Market, Wholesale Market 등 |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
| 도매시장 주요통계 | 중앙도매시장 65개소 - 도매업자 156개소 - 중매업자 2,875개소 - 매매참가자 20,474개소 지방도매시장 908개소 | 공영도매시장 20개소 - 도매사업자 2,200개소 | 도매시장 19개소 (주 정부 소유)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32개소 - 도매시장법인 49개소 - 도매시장공판장 33개소 - 중도매인 6,083개소 - 매매참가인 518개소 |
| 개설·운영 | 중앙(지방공공단체), 지방(지방공공단체 및 민간) | <공익시장> 개설: 국무원의 정령 관리·운영: 지방공공단체, 혼합경제회사, 국무원의 정령에 의한 기관 <공익시장 이외의 시장> 개설·관리·운영: 지방공공단체, 지방의 상공회의소, 민간업자 감독: 지방공공단체 | 법률과 무관, 개설·운영은 주, 시장조합, 민간 등 (건설자본과 소유권은 상이) * 총 44개 도매시장 중 민간 투자 16, 주정부 투자 14, 공동투자 14 | 중앙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방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민영(민간인) |
| 거래제도 | 일대 다(소수와 다수)의 경매입찰, 상대매매 | 상대매매의 일반화 (다수와 다수) | 상대매매의 일반화 (다수와 다수) (법률과 무관) | 일대 다(소수와 다수)의 경매입찰, 정가·수의 (비상장, 시장도매인) |
| 거래 관계자 | 도매업자(도매법인), 중도매회사, 매매참가인 | 도매상 (매취판매업자, 위탁판매업자, 위탁 겸 매취 업자, 중매인, 생산자) | 도매상(면허제) (도매하수업자, 위탁판매상인, 중매업자, 도매서비스업자, 식재구매업자, 대리점, 중매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시장도매인 |
| 도매시장 경유율 | 약 76.9% ('19. 청과기준) | 약 46% ('17. 청과기준 공영도매시장, 도매사업자 경유율) | 약 10% 내외 추정 ('15. Terminal Market 기준) | 약 50.8% ('21. 청과기준) |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자율화('09~) 채소(8.5), 과일(7.0), 수산(5.5), 축산(3.5) | 수수료 자율 일반적(8~15%) | 수수료 자율 일반적(10~20% 내외) | 청과(7.0), 수산(6.0), 축산(2.0) |

- 1) 법령(1967년, 공익도매시장에 관한 규칙을 법전화)
- 2) 정령(1968년, 공익도매시장의 기본적인 조직을 규정)
- 3)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ct, 신선농산물법)
- 4)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5) 기타 국가 : 영국-농산물 및 원예법, 중국-농업부 관리지침, 대만- 농산물시장거래법
- 6) 일본 농림수산성 『2021년 도매시장 데이터자료집』 및 2022년 일본 도시매장 실태조사 결과 참조
- 7) KREI 2016~2017. 『농산물 유통 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향 1차년도, 2차년도』
- 8) aT. 2021.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Chapter 05

대형 유통업체 규제 해외 사례¹⁾

1) WTO 세계무역기구의 규범 주요 내용

- 1995년 창설한 WTO의 핵심은 다수의 무역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일련의 협정들이며, 단순히 무역 자유화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WTO 규범들이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함
- 2001년 11월 채택된 WTO 도하각료회의 각료선언문은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상계관세 협정과 지역무역협정 관련 제반규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그 운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규범협상을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 하도록 규정함²⁾
- DDA(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규범협상은 ① 반덤핑협정 개정, ② 일반보조금 규정 개정, ③ 수산보조금 규정 제정, ④ 지역무역협정 개정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됨
- 현재 전통산업보존구역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법안들은 해당 지역 지정과 SSM 신청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외관상 일견 “지방자치단체 구역정비(Zoning Regulation)”의 형태를 띠고 있음³⁾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역정비(Zoning Regulation)의 경우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간주되어 서비스무역 협정(GATS⁴⁾)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WTO는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국가정책 목표(지역중소유통업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규제, 새로운 규정도입은 인정, 시장접근 방식으로 양허표에 기재된 것은 제한이 가능하나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제한할 수 없음
- 국내 규제에 있어 대형 유통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시장접근 중 상업적 주재에 대해 대형 유통업 종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 국내 유통시장은 1996년에 완전히 개방했으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시간 규제(의무휴업일, 폐점시간의 제한), 품목제한,

1) 대형 유통업체 규제 해외 사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2007에서 일부 발췌함.

2) 외교부, 2007, WTO 이해하기

3) 이재민, 2009, “전통산업보존 구역 도입 법안과 WTO 서비스 협정”, 법학논의, 제4호.

4)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재조치(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개설 허가 취소 등)를 취할 수 있음

-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적용 과정이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국내외 기업모두에게 적용 시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음
 - ※ 산업통상자원부(2022. 12. 28)⁵⁾: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
- (유통법 제12조의2)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0~10시 범위)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 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음
-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불가

2) 일본의 규제 사례

- 일본은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제정하여 500㎡ 이상의 대형소매점의 매장 면적, 영업일수, 폐점 시간 등을 지자체에서 사전 심사하는 형태(허가제)로 점포 출점을 규제하였음
- 1993년에는 자민당이 「대규모소매점포의소매업활동조정에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형 유통업체 설립을 제한 하며 소매상 보호에 나섰음
- 기존 대점법은 외국 소매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받아 미국에 의해 WTO에 제소(1997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통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중소형 소매점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2000년에 폐지되었음
- 2000년 제정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의 점포개설 시 절차상 제한요건(신고제)을 두고 있으며 생활환경문제(교통혼잡, 소음, 폐기물)로 제한 가능함
- 1,000㎡ 이상의 점포개설시 신고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설명회, 출점의 제반문제 조정, 생활환경유지를 위한 시설 배치와 운영을 조정, 출점계획서 및 지역공헌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0년 이후 대형 소매점들이 도심내 유지, 운영 비용 증가의 이유로 교외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중심 시가지 공동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2007년 기존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대형소매점의 교외 지역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직접적인 출점규제정책을 다시 도입

[일본의 유통 규제]

| 구분 | | 대규모점포법('74) | 대규모점포입지법('00) |
|----|----|-----------------------------------|---------------|
| 출점 | 대상 | 1,500㎡ 이상 점포('74)→500㎡ 이상 점포('92) | 출점규제 없음 |
| | 방식 | 지자체 허가제 | 1,000㎡ 이상 신고제 |
| 영업 | 대상 | 1,500㎡ 이상 점포('74)→500㎡ 이상 점포('92) | 영업규제 없음 |
| | 방식 | 폐점시간, 휴업일수 지자체 규제 | |

- 영업시간은 시장 및 마케팅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 소음방지를 위해 영업 시간 제한 가능

5) 산업통상자원부, 2022.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 첫걸음

3) 영국의 규제 사례

- 영국은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고 있음
- 도시계획정책가이드(Planning Policy Guidance)에 의해 중심시가지의 대형소매점 개발은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장면적 10,000㎡(도심지역 기준), 20,000㎡(시 외곽지역 기준)를 넘을 경우, 사업자는 입점이 예정된 지방당구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중소소매업에 대한영향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건설과 운영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판단하기 위함임
- 주중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Sunday Trading Act와 Christmas Day Trading Act에 의해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함
- 영업시간 제한 위반시 5만 파운드 벌금 부과

4) 미국의 규제 사례

- 일부 지방 정부에서 용도지역제(Zoning System)를 실시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함. 미국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상품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 경제적 규제보다는 용도지역제(zoning)에 의한 입지 규제가 기본임
 - 용도지역제(zoning)는 미국 주정부의 도시계획정책 중 대표적 규제로서, 교통혼잡, 소음방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부지·건물의 용도와 부지 내의 건물의 위치·규모·형태 등의 측면에서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 전반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
 - 반드시 유통시설의 규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공공의 복리 및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유통시설 설립을 규제
 - 도시환경 측면으로 접근하여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Smart Growth”를 천명함
- 대형유통점의 개점, 운영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대형유통점 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용도지역제와 같은 도시계획법이 전부이며, 독과점 금지, 배타적 거래, 판매지역 제한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
- 뉴욕의 경우 소매점 최대 크기가 10,000ft²(929㎡)를 초과할 수 없음

5) 프랑스의 규제 사례⁶⁾

- 르와이에법은 대형마트의 무차별 성장정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신규 점포 개설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 장관이던 르와이에가 제안하여 채택한 법으로 1973년도에 제정함
- 인구 4만 이상 지역에 면적 1,500㎡ 이상의 점포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때, 혹은 4만 명 이하 지역에는 1,000㎡ 이상의 점포를 개점하려면 ‘상업 도시계획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지역구 의원 9명, 업계 대표 9명, 소비자 대표 2명으로 구성되었음
 - 대형할인점인 하이퍼마켓은 성장이 억제된 반면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슈퍼마켓 규모가 더 커졌음. 또한 신규 개점이 어렵게 되자 기존의 업체를 매수하여 대형화하였으며,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됨

6) 프랑스의 규제 사례는 김동환 외, 2012, “EU의 농산물 유통정책”에서 일부 발췌하였음

- 라파랭법은 1971년에 제정된 르와이에법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자 1996년에 동법을 수정 강화한 법으로, 300㎡ 이상의 신규매장 개점은 지자체로부터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중전의 1,000㎡에서 300㎡으로 요건 강화)는 것으로 하드디스크카운트 매장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하드디스크카운트 매장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업종변경 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300㎡ 이상의 매장 부속 주유소 개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점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아야 함
 - 사실상 2000~2006년간 프랑스의 하이퍼마켓 출점은 거의 슈퍼마켓이 하이퍼마켓으로 변환된 것임
- 프랑스 전지역에서 300㎡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 시 엄격한 허가절차와 재래상가가 있는 도시 내 상권지역에는 대형마트가 아예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재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전무함
 -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에는 120여 개의 소규모 상가와 전통시장들 뿐임
-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진입장벽은 소매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⁷⁾
-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임.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통하여 허가 대상 기준을 종전 3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상인대표 비중을 축소하였음
- ‘마크롱 법(Loi Macron)’이 2015년 8월 통과되어 2017년 1월에 시행되면서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일 영업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주말 휴업을 풀고 영업시간도 밤늦게까지 연장함
 - 기존 프랑스 대형 상점들은 1년 동안 5회 일요일 개점이 가능했으나, 마크롱법이 시행되면서 1년에 12회까지 늘어났으며, 일요일 개점 시 영업시간도 낮 1시까지 였으나 전 시간대로 늘림. 다만 조건으로 ‘임금 30% 인상, 직원 동의, 휴식 시간 추가 제공’을 지켜야 함
-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일요일 개점을 허용하되, 밤 9~12시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두배를 적용함⁸⁾
- 프랑스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상인 보호를 위한 경제적 규제 성격이 약화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노동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 노동법 상 근로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중에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일요일에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음

6) 독일의 규제 사례

- 독일은 건축법의 규제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고 있음
- 1996년 제정된 “도시 건설법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따라 일정한 연면적 이상의 시설은 개설 허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마트가 들어서고 난 후의 교통, 환경, 주거, 상권의 영향을 예상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개설할 수 있음
- 독일에서는 매장면적이 1,200㎡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특별지구 내에서만 출점 가능. 또한, 베를린에는 “10% 가이드라인”이란 특별한 규정을 두고, 대형마트가 진출할 경우 주변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점이 불가능함

- 바이에른 중심지에 1,200㎡ 규모의 대형 소매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필수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출점이 가능⁹⁾
- 입점한 대형 마트에 대해서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 휴점으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 유통업체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은 평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
 - 예외규정: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에 대한 특례규정

7) 이탈리아의 규제 사례

- 1998년도 이전까지는 모든 소매유통 업체들은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998년 Decree Legislative(베르사니법)에 의해 규모에 따라 시 또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중규모 소매점은 시의 허가, 대규모 소매점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구 1만 명 이하 시의 경우 1,500㎡, 인구 1만 명 이상의 시의 경우 2,500㎡ 이하
-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 모든 상점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됨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현황(2023년 6월 기준)

1) 대형마트 현황

[대형마트 현황]

| 업체 | 설립년도 | 홈페이지 | 점포수 | 전화 | 팩스 |
|---------------------------------|------|--------------------------|------------------------------------|--------------|--------------|
| 농협 하나로유통(주) | 1995 | www.nhhanaro.co.kr | 마트 38 물류센터 6 | 02-2022-4500 | 02-2022-0997 |
| (주)세이브존 세이브존 I&C 세이브존 리베라 | 1998 | www.esavezone.co.kr | 마트 9 | 031-978-9000 | 032-320-9070 |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 1998 | www.lotteshoppingir.com | 마트 176(해외 65) 슈퍼 363 물류센터 10 | 02-771-2500 | 02-2145-8581 |
| 메가마트(주) | 1975 | home.megamart.com | 마트 9(미주 1) 물류센터 1 | 02-820-8500 | 02-820-8685 |
| 이랜드리테일(주) | 1978 | www.elandretail.com | 백화점 13 아울렛 16 마트 1 물류센터 1 | 02-323-0456 | 02-2029-9048 |
| 이마트(주) | 1993 | www.emartcompany.com | 마트 162(미국, 베트남2, 몽골3) 물류센터 6 | 02-380-5678 | 02-380-9339 |
| 코스트코코리아(주) | 1998 | www.costco.co.kr | 마트 18 물류센터 2 | 02-2630-2600 | 02-2630-2743 |
| 홈플러스(주) | 1999 | corporate.homeplus.co.kr | 마트 133 물류센터 7 | 02-3459-8000 | 02-3459-1679 |

2) 대형마트 매출현황

[대형마트 매출현황]

단위 : 백만 원, %

| 업체 | 총매출 | | 영업이익 | | 순이익 | |
|-------------|------------|-------|---------|--------|---------|-------|
| | 매출액 | 증감률 | 매출액 | 증감률 | 매출액 | 증감률 |
| 농협 하나로유통(주) | 1,226,742 | -63.2 | -43,255 | -164.1 | 17,021 | -49.4 |
| (주)세이브존아이앤씨 | 122,173 | -9.3 | 11,023 | -24.4 | 7,411 | -25.2 |
| 롯데쇼핑(주) | 8,408,203 | -3.4 | 86,094 | -35.7 | 191,835 | 118.5 |
| 메가마트(주) | 504,820 | -4.0 | -14,812 | -22.4 | -9,952 | 25.2 |
| 이랜드리테일(주) | 1,724,895 | -1.8 | -39,117 | 24.7 | 1,910 | 101.1 |
| 이마트(주) | 15,053,811 | 5.9 | 265,918 | -9.8 | 774,712 | 38.1 |
| 코스트코코리아(주) | 5,352,286 | 18.3 | 177,546 | 24.2 | 134,734 | 27.7 |
| 홈플러스(주) | 6,966,220 | -4.5 | 93,345 | -41.7 | 88,349 | 116.6 |

주) 2021년 1-12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기준



Part 2.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농안기금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관련 조항 |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 ③ 주산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개정 2013.3.23.>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 일 것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1) 주산지 제도 운영목적

- 농수산물의 집단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과 생산성 증대
 - 농림수산부 고시 제84-11호('84.3.14), 소득작목 주산단지 지정고시
 - 채소류 위주로 주산단지 추가지정·변경 등 실시

2) 산지와 주산지 관계

- 산지는 주산지의 전단계로서 산지간의 경쟁을 통한 지역우위성에 의해 주산지가 형성
 -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농가가 한데 모여서 존재(생산의 집단화)

- 그 지역의 총판매량은 거래하는 판매시장으로부터 명산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많음(판매시장의 점유 및 확대)
- 그 지역의 생산농가가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 있어서 기능적 조직을 형성(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3)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시행령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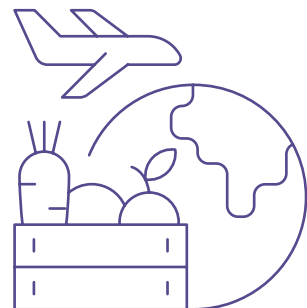
-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주산지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4)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시행령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5) 주산지 운영효과

- 생산측면: 개별생산의 지역적인 집단생산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규모 확대와 대규모 생산의 장점 추구
- 유통측면: 유통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상품유통 비용의 절감효과, 생산 및 출하의 계획화,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채소류 주산지 기준 * 일부개정 2022. 9. 3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2호

◆ 주산지 중심의 정책지원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배양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기준(품목, 면적 등) 현행화

■ 대상품목

- 현행 고시품목* 외 1품목(양배추)** 추가

* 5대 채소(배추·무·고추·마늘·양파), 대파, 생강, 당근,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 (신규품목 기준) 부류별 재배면적 상위품목, 노지재배 비중, 생산집중도, 수급조절 필요성

■ 지정기준(재배면적, 출하량)

- 재배면적은 지역 및 생산 시기 집중도, 수급 조절 필요성, 최소한의 자급률 유지 필요성 등 지정 시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 ▶ (현행유지) 봄·여름배추, 봄·여름·가을무, 대파, 생강, 당근,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 ▶ (개편품목) 가을·겨울배추, 겨울무, 고추, 마늘, 양파

① (생산집중도) 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 시군까지 확대하고, 집중도는 낮으나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30%수준으로 최소한의 자급률 유지

* 집중도가 높은 품목 - 겨울배추·겨울무 : (현행) 비중 68.4%/70%

→ 89%/98.3%로 인접 시군까지 확대

* 집중도가 낮은 품목 - 가을배추·고추 : (현행) 비중 16.1%/20.8%

→ 31.1%/30.7%로 최소한의 자급률 유지

② (수급조절 필요성)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분화하여 전체 재배면적의 70%수준으로 확대하여 주산지 지자체 중심으로 수급 조절체계 기반마련

* 마늘 : (현행) 1,000ha/비중 45.3%/9개시군 → (개선) 300ha/74.5%/15개시군(한지형 3, 난지형 12)

* 양파 : (현행) 800ha/비중 41.6%/6개시군 → (개선) 190ha/73.1%/16개시군(조생종 3, 중만생종 13)

- ▶ (신규품목) 양배추 → 전국 재배면적 대비 주산지 비중 54.7%인 210ha 설정

- 출하량은 기준 재배면적과 생산단수(5년 평년, '16~'20년)를 적용하여 도출

■ 변경된 재배면적 및 비중을 적용한 주산지 지정기준

[변경된 재배면적 및 비중을 적용한 주산지 지정기준]

단위 : ha, %

| 품 목 | 현행 | | 변경 | | 품 목 | 현행 | | 변경 | | 품 목 | 현행 | | 변경 | |
|------|-----|------|------|-----|-----|-------|------|------|-------|-------------------------------|-------|------|------|-----|
| | 면적 | 비중 | 비중 | 면적 | | 면적 | 비중 | 비중 | 면적 | | 면적 | 비중 | 비중 | 면적 |
| 봄배추 | 150 | 52.6 | 52.6 | 150 | 가을무 | 150 | 8.4 | 8.4 | 150 | 마늘 | 1,000 | 45.3 | 74.6 | 300 |
| 여름배추 | 450 | 78.8 | 78.8 | 450 | 겨울무 | 1,500 | 70.0 | 98.3 | 1,000 | 양파 | 800 | 41.6 | 73.1 | 190 |
| 가을배추 | 300 | 16.1 | 31.1 | 120 | 당근 | 100 | 66.1 | 66.1 | 100 | 참깨 | 250 | 39.1 | 39.1 | 250 |
| 겨울배추 | 500 | 68.4 | 89.0 | 450 | 대파 | 250 | 46.6 | 46.6 | 250 | 땅콩 | 100 | 31.5 | 31.5 | 100 |
| 봄무 | 70 | 23.1 | 23.1 | 70 | 생강 | 100 | 68.2 | 68.2 | 100 | 양배추 | - | - | 54.7 | 210 |
| 여름무 | 250 | 64.0 | 64.0 | 250 | 고추 | 700 | 20.8 | 30.7 | 500 | *버섯류 특작류는 별도 기준 적용(기준 기준과 동일) | | | | |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2호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산지 지정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품목 | 주산지 지정 기준 | | |
|------|-----------|---------------|------------|
| | 지역 | 면적 | 출하량(생산량) |
| 봄배추 | 시·군·구 | 150ha 이상 | 7,300t 이상 |
| 여름배추 | 시·군·구 | 450ha 이상 | 20,741t 이상 |
| 가을배추 | 시·군·구 | 120ha 이상 | 11,802t 이상 |
| 겨울배추 | 시·군·구 | 450ha 이상 | 32,899t 이상 |
| 양배추 | 시·군·구 | 210ha 이상 | 9,962t 이상 |
| 봄무 | 시·군·구 | 70ha 이상 | 2,732t 이상 |
| 여름무 | 시·군·구 | 250ha 이상 | 8,537t 이상 |
| 가을무 | 시·군·구 | 150ha 이상 | 11,431t 이상 |
| 겨울무 | 시·군·구 | 1,000ha 이상 | 56,180t 이상 |
| 고추 | 시·군·구 | 500ha 이상 | 1,155t 이상 |
| 마늘 | 시·군·구 | 300ha 이상 | 3,948t 이상 |
| 양파 | 시·군·구 | 190ha 이상 | 12,481t 이상 |
| 대파 | 시·군·구 | 250ha 이상 | 7,197t 이상 |
| 생강 | 시·군·구 | 100ha 이상 | 1,200t 이상 |
| 당근 | 시·군·구 | 100ha 이상 | 3,342t 이상 |
| 참깨 | 시·군·구 | 250ha 이상 | 125t 이상 |
| 땅콩 | 시·군·구 | 100ha 이상 | 266t 이상 |
| 버섯류 | 시·군·구 | (연면적) 30ha 이상 | - |
| 특작류 | 시·군·구 | 50ha 이상 | - |

주산지협의회 (1/2)

■ 법적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주산지 관련 사항 규정(제4조), 주산지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주산지협의회 관련 법적근거(농안법)]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주산지협회의 구성 등)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목적

주산지 품목 중심으로 주산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정의

주산지 품목별로 지자체,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정보교환, 생산계획수립,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

■ 역할

수급조절에 관한 의사결정 및 생산정보 수집·공유, 경작신고면적 및 KREI 재배의향면적 수시 공유 및 전파, 신규 정책수요 발굴 등 수행

| 구분 | 내용 |
|---------|---|
| 생산정보 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별 재배면적, 작황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 관련 기관과 정보 및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공유 |
| 정책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 및 수급 관련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주요 실행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정책별 연차평가 및 성과평가 대응) |
| 의사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가격안정제 수급 정책 결정(기금 조성 및 운영, 산지폐기, 조기출하 등) • 수급조절(유통명령제, 산지폐기, 적정면적 등) 등에 관한 의사결정 • 주산지별 적정 재배면적안(KREI +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면적 + 행정통계)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별 경작신고 교육 및 경작신고 이행 점검 • 신규 정책수요 발굴 • 지역 내 주요 현안 수집 및 대응 과제 도출 |

주산지협의체 (2/2)

■ 운영방식

주산지협의체의 협의회 정례화

- 생산·유통 주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급관련 정부·지자체·자조금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합의(상향식)로 상설화
- 주산지협의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활성화

(당초) 가격하락 시 산지폐기 물량 심의 →

(개선) 정부·지자체 각종 수급 사업(채소가격안정제·시장격리·재배면적관리 등) 정책 참여 시, 지역단위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 및 실행 기구로 기능 개편

- ① 산지·유통 정부 정책사업(수급·판매사업) 참여, 산지유통 및 수급 정책 수행을 위한 사전 협의, 수급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조절시설,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자조금 등 정부 수급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청취 및 대응 전략 협의,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기구(상향식)
- ② 산지별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기관별 수급 정보 공유 및 수집
 - 기관별 주산지에 대한 관측·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분석으로 주산지별 정확한 정보에 의한 재배면적 등 수급 판단 기반 구축
 - *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조절시설,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자조금 등 정부 수급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청취 및 대응 전략 협의,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기구(상향식)
- ③ 경작신고를 통한 재배면적 관리 체계 등 이행점검
 - 자조금단체 협업, '생산유통 자율조절'(경작신고 등) 교육 및 캠페인 체계화
 - *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교육사업 의무화, 지자체 농업인 교육훈련 과정 중 자조금 정책 및 경작출하 신고 이행교육 신설('24년 정규 과정화)
 - 생산자의 재배면적 조절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 * '경작출하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참여자 및 경작출하신고 이행자에 대해 지자체·농협 보조사업 (포장, 종자, 금리우대, 기자재 등) 우선지원, 미이행자는 지원사업 배제
 - 재배의향조사(KREI, 농업관측)와 연계 파종·정식 전부터 재배면적을 사전 예측하고, 경작신고를 통해 식재 면적 확인 및 실측 추진

중앙주산지협의회

■ 중앙주산지협의회

지역단위 주산지협의체를 전국 중앙단위 주산지협의회(간사 : 자조금단체*)로 구성,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수급사업과 주산지협의체 연계 및 자조금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구성) 농식품부, 주산지협의체(광역지자체), 자조금단체, KREI, 농협경제지주, 주산지농협, 생산자 협회 등 20인 이하로 구성('24년 마늘, 양파 구성)
- (역할) KREI의 재배의향면적에 따른 재배면적(안),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안) 등을 종합하여 적정 생산량·재배면적 결정 및 조정, 주산지간 정보교환(파종·생육·출하시기 등 작형별 정보), 사업 관리 점검 등에 대한 의사 결정

* 농식품부(원예산업과) : 협의회 개최(총괄)

* 지자체(광역주산지협의체) : 지역별(주산지별) 수급 상황 동향 보고(공유)

* KREI : 주산지별 수급정보 제공 → 파종기(재배의향), 생육기, 출하기(수급전망) 동향 등

* 자조금단체(간사) : 장작신고면적 조사 및 실측, KREI와 연구용역 추진

* 농협경제지주(행정사무국) : 농협 산지동향 공유, 협의회 회의자료 작성, 회의비용 집행

- (개최시기) ① 파종전(KREI 의향면적 발표 후), ② 생육기(KREI 실측조사 후, 통계청 재배면적 발표 후), ③ 수급 이상 상황 발생(예상) (사전적·사후적 수급대책 필요), ④ 지역별 중앙단위 회의 요청 시

[중앙주산지협의회 협의 내용(안)]

- ▶ (생산전 단계) KREI는 안정단계 재배면적*을 산출하여 정식 전 정보를 제공(8~9월)하고, 재배 의향조사와 비교하여 면적 조절 유도
 - * 안정단계 재배면적 : 재배의향 조사면적과 과거치(일정기간) 재배면적, 직전 작기 수급상황, 최근 소비트렌드, 자조금단체 경작신고 등을 반영한 수급 안정을 위한 추정 면적
- (주산지) 중앙주산지협의회는 지역단위 주산지협의체 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생산 계획 수립, 주산지협의체는 주산지별 적정 재배면적 관리 노력
- (비주산지) 재배의향조사 결과에 따라 재배면적 조절 캠페인(자조금단체)
 - * 재배의향면적 변동률이 1% 증가 경우, 재배면적은 1.02% 감소
- ▶ (정식·생육 단계)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생육단계 면적조절을 실시하여 사전적으로 적정 생산 유지하고, 선제적 수급정책 추진
 - 가뭄, 고온 등 기상변동에 따라 생육단계 면적조절(과잉시), 생육 기술지원, 영양제 보급, 예비묘 공급(과소시) 등 추진

Chapter 02

농림업관측

관련 조항 | 제5조(농림업관측)

제5조(농림업관측)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12. 30., 2015. 3. 27.>
-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 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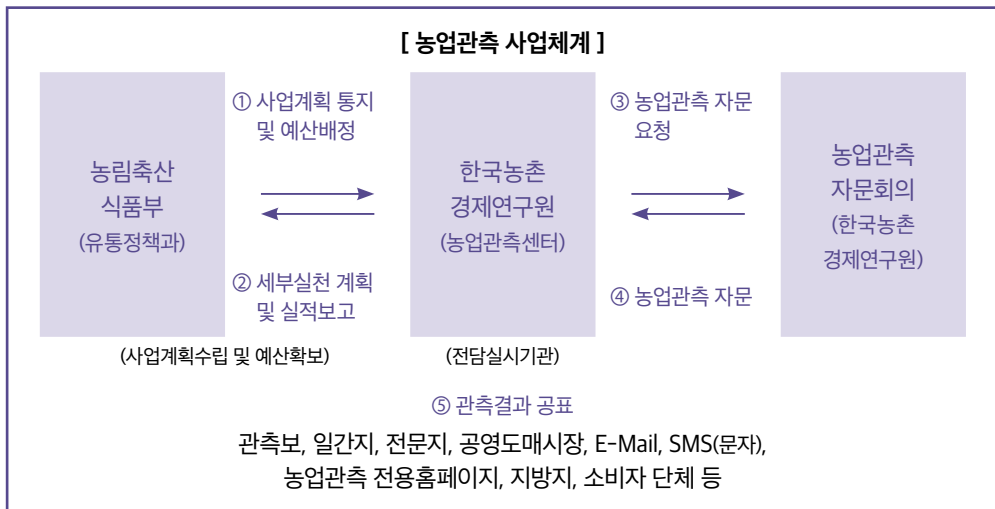
[제목개정 2015. 3. 27.]

1) 농업관측사업의 연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목적 : 농촌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주무기관 : 국무조정실
- 법률적 연혁
 - 「농업기본법」(1967) 및 「농업농촌기본법」(1999): 정부의 농업관측 의무화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로 발족」(1967)

- 「농림부 국립농업경영연구소로 개편」(1970), 농수산부 국립농업경제연구소 개편(1973)
-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19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 제정」(1978)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농업관측협의회 구성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수산연구업무 이관(1996)
-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99)
- 농업관측센터 설치(1999)
- 「농안법」(2000): 농업관측위원회로 격상, 농업관측전담기구 설치
- 「농안법시행규칙」(2000): 농경연을 관측전담기구로 지정
- 「관측사업실시요령」(2000): 농업관측센터 설치, 출연금으로 지원
- 관측전담기구 명칭 변경(2002. 9. 10): 농업관측센터 → 농업관측정보센터
- 관측전담기구 명칭 변경(2021. 7. 1.): 농업관측본부 →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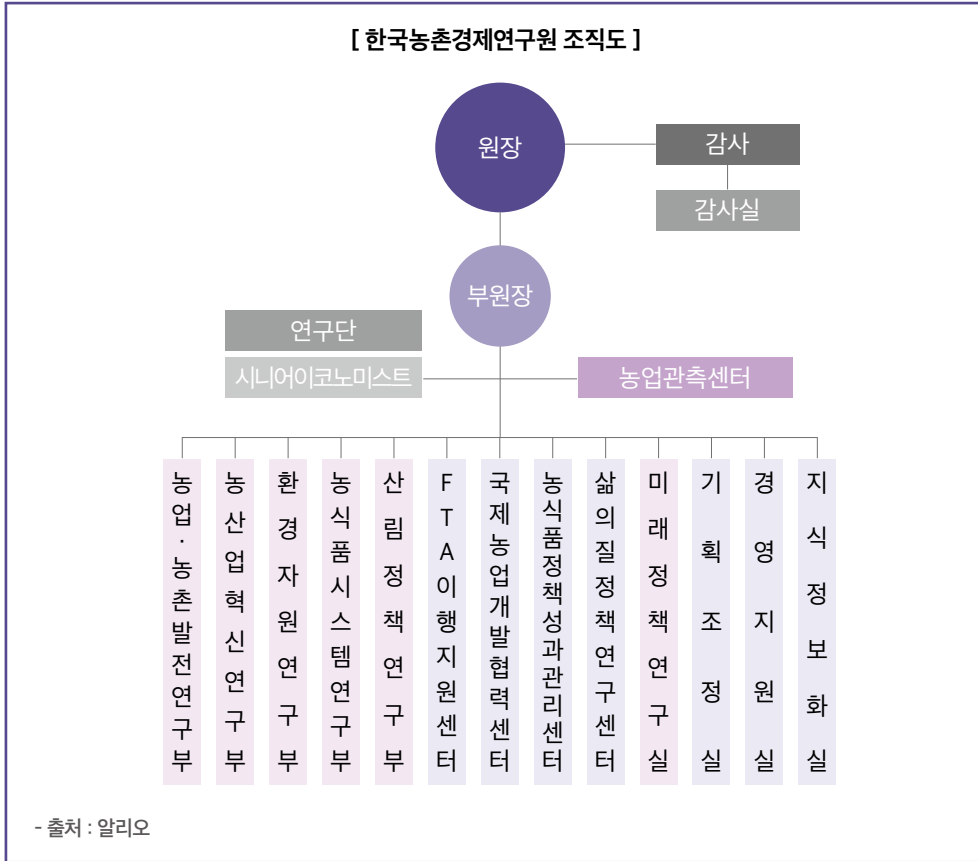
2) 농업관측 사업체계



3) 농업관측센터

- 주요목적
 - 농촌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농업관측센터 업무
 -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사육)동향, 작황, 출하동향, 재고 및 소비동향, 해외정보, 기상정보 등 미래예측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이를 위한 농업인의 영농계획, 농업 관련업체의 사업계획, 정부 및 지자체의 수급대책 수립 등에 유용한 품목별 수급동향 및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안정에 기여
 -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기상이변 등에 대응하여 농업경제를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시의 적절한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의 수집, 분석, 분산방법을 개발하여 관측사업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

• 조직(2023년 현재)



계약생산

관련 조항 | 제6조(계약생산)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1. 7. 21.]

1) 현황

- 1995년 정부·농협 공동으로 수급안정사업자금을 조성(정부 80%, 농협 20%), 이를 재원으로 계약재배 실시(농안법 제57조)

농안법 기금(제55조, 57조)

농안법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개요(2023년 기준)

- 사업목적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 계약재배 :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
-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 용도 : 계약대상자와 파종·정식기에 체결된 계약재배 약정에 대한 수매자금(품대)

2) 제도운용

■ 계약재배 및 출하

- 계약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계약대상자: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농협경제지주 관리조직 제외), 산지유통(법)인 및 농업법인(신청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사업의무
 -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약정 및 수매
 - 마늘·양파·고추 : 대출액의 125% 이상 계약재배 약정 및 수매
- 사업의무 확인
 - (표준)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실적으로, 계약보증금 입금일이 상기 품목별 약정 사업실적 인정기간 내에 포함
 - 계약재배 약정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수매한 실적으로, 중도금 입금일은 계약보증금 입금일로부터 잔금 입금일 사이, 잔금은 입금일이 상기 품목별 수매 사업실적 인정기간 내에 포함

■ 출하조절 의무

- 정부 및 aT의 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의무에 따른 계약재배 수매물량 중 출하 잔량의 30% (배추, 무는 15%)에 대해 출하조절 등 의무이행 준수

■ 가격 급등·급락 시 수급안정 대책

- 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사업대상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출하·수매지시가 있을 때, 약정된 출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미이행 상당 대출금 회수조치, 자금 지원 제한 및 각종 수급정책 대상에서 제외
- 무·배추 출하조절용 물량 저온저장
 - 소비자 가격 급등락 예상시,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 추진
- aT는 공급 과부족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출하의무 부과, 수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공급 부족 시 산지유통법인, 저장업체에게 출하의무 부과
 - 공급 과잉 시 김치제조업체에 해당작기 수매계획물량 이상 추가 수매

■ 가격 폭락시 시장격리

- (시기)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보장 가격 이하로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한 때
- (물량) 생산과잉으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물량

3) 계약재배 확대 필요성

■ 노지채소는 저장성이 낮고 가격변동이 매우 큰 품목

- 전년 가격에 따라 매년 재배면적 변동이 크고, 장기간 비축이 어려워 기상 및 병해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대

■ '95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10년 고령지배추와 같이 생산부족 현상에 대응수단 미흡

- 계약재배 사업(용자)으로 일정수준의 계절 진폭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 곤란
- 10% 안팎의 계약재배 물량으로는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불안에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

4)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¹⁰⁾(참고)

■ 목적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사업내용

-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 저장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출하조절시설 지원·관리 또는 출하조절시설 운영계획을 지자체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하거나 연도 내 포함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10)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Chapter 04 가격 예시

관련 조항 | 제8조(가격 예시)

제8조(가격 예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전문개정 2011. 7. 21.]

■ 가격 예시 목적(농안법 제8조 가격 예시. 2000.1.28. 전부개정)

-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

■ 양곡류(콩, 옥수수): 수매가격

- 수매가격 산정기준: 생산비, 물가 등 감안 파종기 이전 예시
- 콩은 자급을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수매('02년 도입) 등 실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관련 조항 |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1) 정의

■ 유통협약(농안법 제10조 제1항)

-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물량규제, 품질규제 등에 대한 유통협약을 맺고 이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98 도입)

* 유통협약 주체 : 유통조절추진위원회(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

■ 유통조절명령(농안법 제10조 제2항)

-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물량규제, 품질규제 등의 공동 활동을 하기로 합의 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발령('03 도입)

- 유통조절명령 요청자(농안법 시행규칙 제11조)
 -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 생산자등
 -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농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품목별 특성
 -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2) 사업추진 경과

- 유통협약·유통조절명령 도입
 - 생산자·소비자·유통인 중심의 자율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통협약(양파, 무, 배추) 실시('98년)
 - 「농안법」에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을 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00, 농안법 제10조)
 -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
- 유통조절명령
 - '00. 7~12 : 유통명령 도상연습실시(2회)
 - * 1차('00. 7. 24~26) : 강원도 고랭지 배추, * 2차('00. 12. 5~7) : 제주도 감귤
 - '03년도에 최초 실시하였으며 '03~'07 기간 중 감귤에 대해서만 실시
- 정부지원
 - 생산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제도 도입('00, 농안법 제12조)
- 유통조절명령 조항 구체화
 - 발동요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계기관·단체간 이견 발생에 따라근거 마련 추진
 -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등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 개정('07.1, 농안법 제10조 제5항)
-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마련
 -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림부 장관고시('07.9)
 - 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물량기준 및 가격기준 등 마련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3호('16. 6. 16., 일부개정)

유통조절명령 발급기준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시행 2016. 6. 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53호, 2016. 6.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관측 결과를 반영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한 기준이 다음 품목별 발령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품목 | 발령기준 |
|-------|--|
| 감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2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 고랭지배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 겨울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3) 유통협약, 명령 지원

- (유통협약·명령 지원) 농산물의 가격이 상당기간 낮게 형성되거나 예측될 경우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유통협약 또는 유통조절명령)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 사업명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23년 기준, 445백만 원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填)하게 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7.1. 비축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19.1.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4) 연도별 유통협약, 명령실시 추이

- ('01) 대파, 양파 → ('02) 양파 → ('03) 감귤, 김 → ('04) 감귤, 김 → ('05) 대파, 양파, 감귤 → ('07) 겨울배추, 대파, 사과, 감귤 → ('08) 가을배추, 배, 감귤 → ('09) 가을배추, 마늘, 감귤 → ('11) 봄배추, 가을무·배추 → ('13) 가을 배추 → ('14) 겨울 무 → ('15) 감귤 → ('16) 파프리카 → ('17) 파프리카 → ('19) 파프리카

5) 해외사례¹¹⁾

■ 미국

-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농산물의 소비 침체, 가격 폭락,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도 농산물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1975년에 도입함
- 미국의 유통명령제는 대공황 기간중 생산자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유통협약을 통해 유통조절을 시도한 후 발생한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만들어진 제도여서, 스스로 선택한 법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
- 연방교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ttee: FTC)나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USDJ)는 유통명령제가 불공정 거래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농무부장관은 유통명령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진입제한, 공급량 규제, 독점적 규제 등을 제한
- 일부 유통명령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다수 생산자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여 단기간 시험 후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유통명령제는 농가 가격·수익·소득을 증대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프랑스

- 프랑스는 1975년에 미국의 유통명령제를 수정 도입
- 프랑스의 유통명령제의 운영기관은 INTERFEL인데, 이 조직은 생산자조직과 수집상·도매상·소매상조직으로 구성된 대표기구로 이 기구에서 출하·품질규제에 대해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법으로 공포
- 프랑스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출하조절로 가격이 상승하면 자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시키게 되므로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둠
- 프랑스는 2~3년간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자 그 원인이 대형유통업체의 구매가격 인하압력 등 횡포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유통명령 일환으로 생산자·판매가격 동시표시제(Dual Pricing System)를 실시함
- 유통명령제의 사업 내용은 크게 가격 및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활동으로 구분된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가격이나 물량규제는 가능한 줄이고 품질규제, 소비촉진, 연구개발등 시장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유통명령제를 운영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병률, 김윤식, 박동규),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방안, 1999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계약재배·수매비축 등 정부주도의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만으로는 「농산물 제값 받기」에 한계
-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어려워 農·消·商·政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정책이 새롭게 대두

■ 근거법령: 「농안법」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사업추진내용

- 점차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유통협약·명령 제 도입
- '99. 11: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0. 7~12: 유통명령 도상연습 실시(2회)
 - 1차('00. 7. 24~26): 강원도 고랭지 배추
 - 2차('00. 12. 5~7): 제주도 감귤
- '01. 2. 15~28(14일간): 대파유통협약 실시
 - 협의회 주도로 전체면적의 △9%(449ha)감축하여 가격지지 / 정부는 산지폐기 비용 일부(12억 원) 지원

※ 유통협약·명령 실시상황

- '98: 양파, 무·배추 - 유통협약
- '99: 마늘·양파, 고추 - 유통협약
- '00: 방울토마토, 마늘 - 유통협약
- '01: 대파, 양파 - 유통협약
- '02: 양파 - 유통협약
- '03: 감귤 - 유통협약 및 명령, 김 - 유통협약
- '04: 감귤 - 유통협약 및 명령, 김 - 유통협약
- '05: 양파, 대파 - 유통협약, 감귤 - 유통명령
- '07: 겨울배추·대파·사과 - 유통협약, 감귤 - 유통명령
- '08: 감귤, 배, 가을배추 - 유통협약
- '09: 가을배추, 마늘 - 유통협약
- '11: 봄배추, 가을무·배추 - 유통협약
- '13: 가을 배추
- '14: 겨울 무
- '15: 감귤
- '16: 파프리카
- '17: 파프리카
- '19: 파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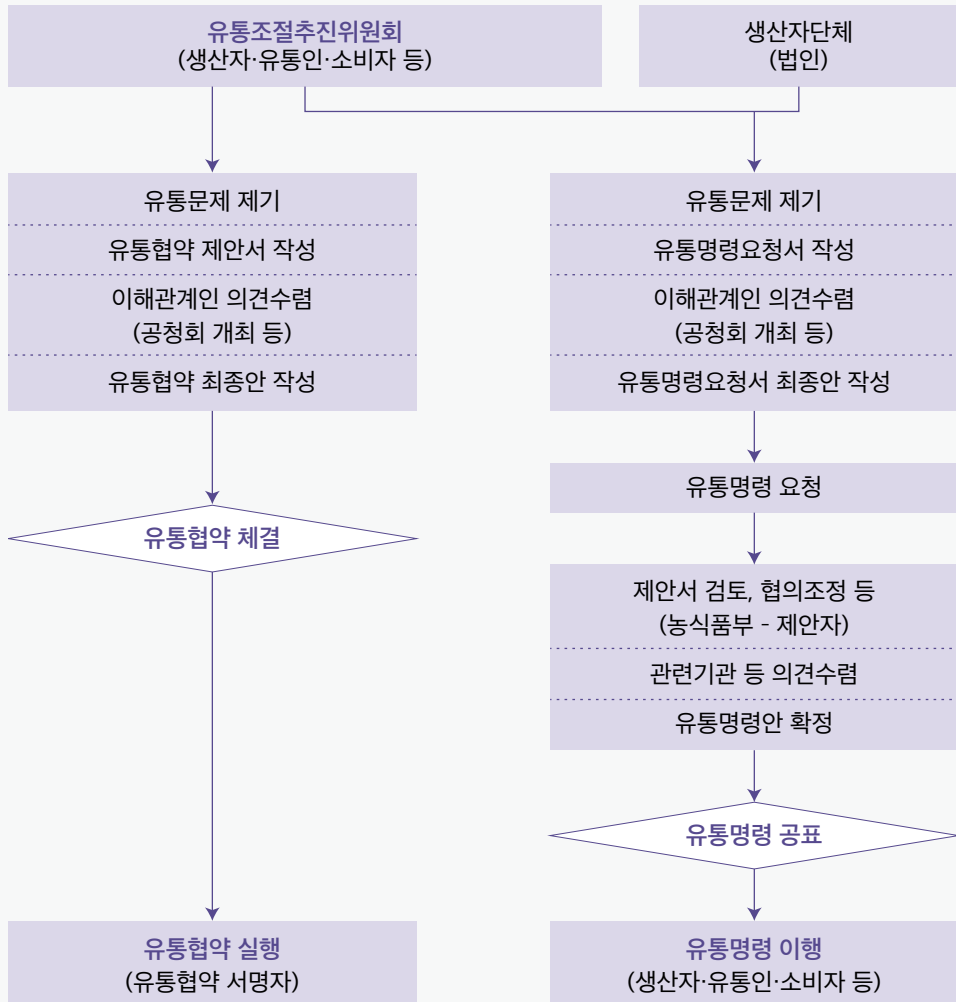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절차도

■ 유통협약

유통협약 필요성 문제제기 → 유통협약 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유통협약추진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협약계획서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협의 →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추진상황 통보 → 유통협약서 서명 및 체결 → 유통협약 실행 → 유통협약 자금지원

■ 유통명령

유통명령 필요성 문제제기 → 유통조정추진위원회 구성 → 유통명령요청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지자체 협의 → 유통명령서 확정 → 유통명령 요청 → 유통명령서 검토 및 협의·조정(공정거래위원회, 요청자) → 유통명령 발령 → 유통명령 홍보·공고 → 유통명령 홍보, 점검, 과태료 부과 → 유통명령이행 결과보고 → 유통명령 이행관련 자금지원



Chapter 06

정부비축사업

관련 조항 | 제8조, 제9조, 제13조

제8조(가격 예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27.>
- ②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3. 2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제13조(비축사업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27.>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2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3.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구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

1) 정부비축사업 연혁 및 정의**■ 연혁**

- '76.12.31. 농안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78. 8. 23.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설치하여 비축사업 본격 추진
- '95.1.1. WTO 출범과 함께 고추, 마늘, 양파 등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진계획에 따라 국영무역 방식으로 운영
- '13.1.1. 배추 품목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반영
- '14. 9. 29. 무 품목을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반영
- '16. 5. 12. '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구매계획 : 「2015 콩 자급률 제고 및 소비 활성화 전략(15. 4. 30.)」에 따라 팥·녹두의 생산지 강화를 위해 시범구매 추진
- '16~17년 ('16) 농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부사업이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내역사업으로 비축지원에 편입 → ('18)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세부사업으로 분리
- '17~18년 ('17) 유통협약·명령지원 내역사업 편입('16년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반영) → ('19) 농산물생산유통조절 지원사업으로 재이관

■ 사업목적 및 내용

-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
- 정부비축창고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개보수 등을 통해 농산물의 최적 보관조건 유지

■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

- 수매비축 : 11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두류,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
 - 수입비축 : 9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감자
 - 품목선정기준
 -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산유도가 필요한 품목
- * 비축 대상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품목 및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2)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1) 국영무역의 연혁

- 1948. 1. 1. 발족된 GATT 체제하에서부터 국영무역기업은 수 십년 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1993. 12. 15. UR 다자간 농산물협상이 타결되어 1994. 4. 15.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UR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
 -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MFN) 원칙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948. 1. 1. 발족하였음
- 국영무역 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GATT 1994, 농업 협정문 등을 부속서로 하는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농산물 관세쿼터 관리방안 등을 WTO에 제출 후 품목별 국영무역기관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검증을 거친후 현행 국영무역을 유지해오고 있음

(2) 국내법령 반영 및 제정

- UR협상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은 협정이행을 위해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95. 1)
- 상기 특별법은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 시행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국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비하였음

(3) 국영무역의 정의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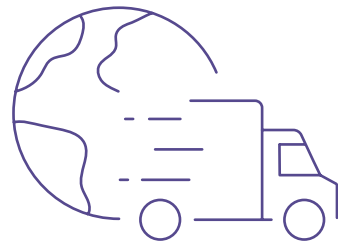
■ 국영무역의 정의

-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 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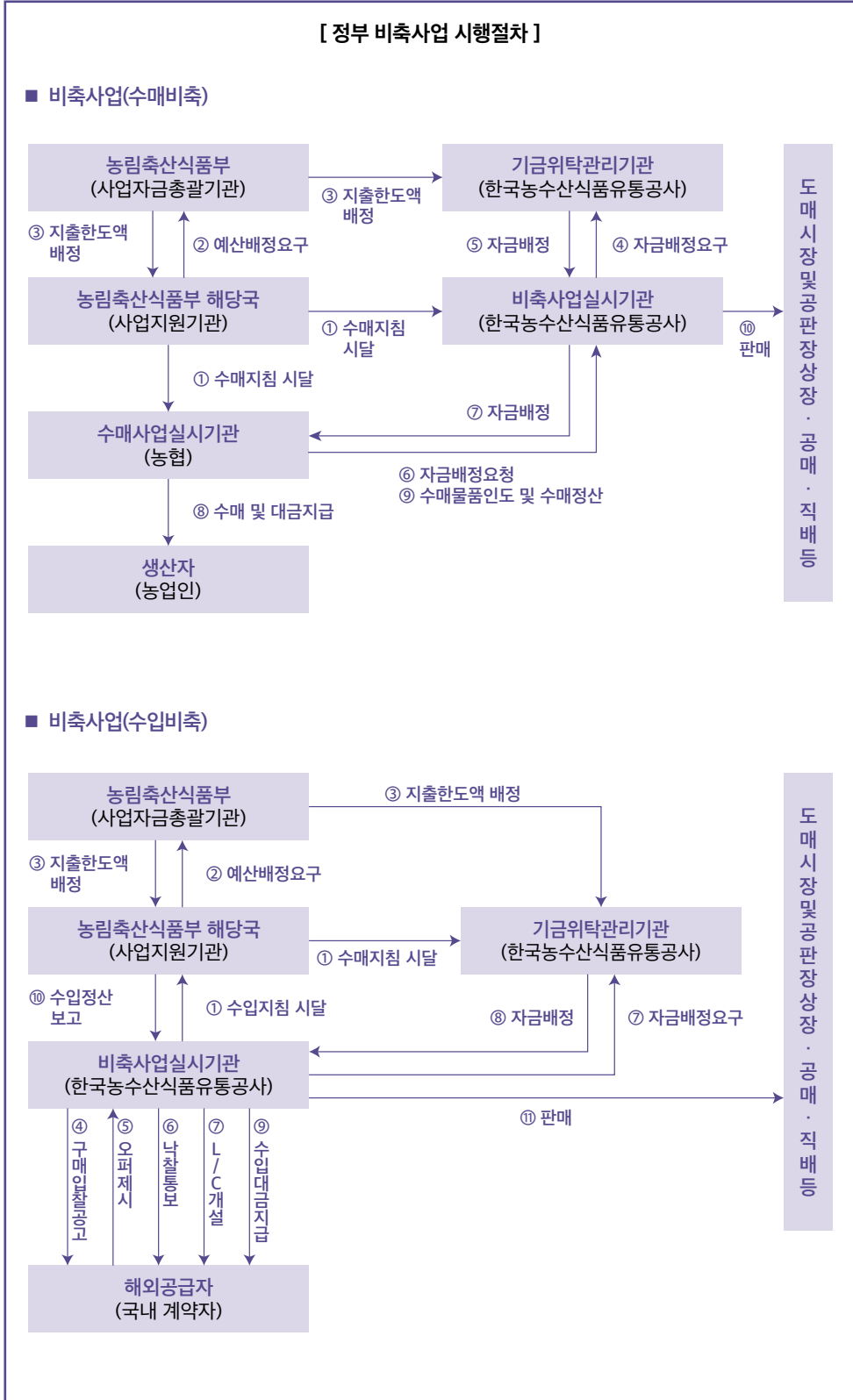
- 국영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 형태를 말함

■ 국영무역의 역할

- ① 국내 수매업무를 수행하고 수입계획을 담당하는 여러 국가들의 국영무역기관의 설립은 낮은 비용의 식량공급, 안정적 농산물 가격의 보장과 같은 정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 ② 국영무역은 공공기관이 수입창구가 되어 수입·판매하는 제도로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량의 수입시기, 수입물량, 판매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③ 가격동향에 따른 매점매석, 유통왜곡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안정 저해, 원산지표시 문제 등 민간 업체가 수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④ 수입개방시 민간업체에 귀속될 수입이익금을 농안기금 등 정부기금에 귀속시켜 농업투자자원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4) 정부 비축사업 시행절차



Chapter 07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관련 조항 |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11.7.21.]

시행규칙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3.24.>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3. 24.>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오렌지·감귤류

[전문개정 2012. 8. 23.]

1) 수입비축사업

농산물 시장접근물량(TRQ : Tariff Rate Quotas)을 활용하여 수급안정을 기하면서 국내 물량과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 자급도가 높고 수급에 민감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 과잉생산 시 방출 중단, 건조품으로 대체수입 등 시장격리
 - 적정·과소생산 시 신선형태로 도입 비축 후 국내 단경기 위주로 방출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 팥, 참깨 등
 - TRQ규모 증량을 통해 두부, 장류, 참기름 등 식품가공업체에 안정적 공급
 - 국민 식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식량으로서 상시비축제를 통해 국제 곡물가격 폭등및 비상 사태 시 식량안보 기능 수행

2) TRQ 설정배경

- 1995년 WTO 농산물협정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과 국내 수급상 절대부족 품목을 증량하여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설정하고 정부지정 공공기관이 수입·관리하게 하여국내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양허안을 이행토록 함
- 우리나라 농산물 관련 TRQ 관리를 24개 기관에서 63개 품목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음

3) TRQ 관리방식

국영무역(지정기관 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 국영무역
 -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고 수입·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
- 수입권공매
 -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실수요자배정
 -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 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로 추천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하는 방식

4) TRQ 관리방식별 사업추진 절차

(1) 국영무역(지정기관배정)

■ 국영무역 운영상 준수사항

- 국영무역 근거규범: WTO협정 부속서 GATT1994 제 17조(국영무역 기업)
- 무차별 대우의 원칙, 상업적 고려에 의한 구매 또는 판매행위, 무역관행에 따라 구매와 판매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부여 등

■ 품목: (단일 배정방식) 쌀, 참깨(2개 품목), (혼합 배정방식) 녹두, 팥, 메밀, 대두,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등(10개 품목)

■ 수입관리

- 국영무역 양허관세 수입추천계획 시달(농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 국내 수급상황 및 수출국 동향 등 분석후 시기별 수입물량 결정
- 수입시기는 품목별 시장동향을 감안, 최적시기에 전량 이행하여 통상마찰 방지
 - 시기: (고추) 12~5월, (마늘·양파) 9~12월, (콩·참깨) 연중수입
- 낙찰자 결정방식은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예정가격 이상) 낙찰제
- 주요절차
 -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 등록 →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L/C개설 → 선적지 물품확인 → 물품선적 및 출항 → 국내 도착 및 국정검사 → 대금결제 → 수입신고 및 통관 → 내륙운송 → 구상처리 및 계약 이행 완료(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기지 입고)

■ 판매관리

- 판매방법 및 대상

[국영무역 판매방법 및 대상]

| 방법 | 대상 |
|----|--|
| 공매 | 농수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자 |
| 상장 |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농·수협공판장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 직배 | 농수산물대량실수요업체, 실수요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 |

• 판매가격 결정

- 공매·상장: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 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수준에서 시중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결정
- 직배: 최근일 공매·상장 평균가격 또는 정부지정가격 적용
 - * 공매·상장 평균가격: 마늘, 참깨, 콩나물콩
 - * 정부지정가격(가공용): 콩, 팥

- 판매시기
 - 특작류 및 두류
 - * 국내자급도가 낮은 참깨, 대두, 팥 등은 상시비축물량을 유지하고 연중 방출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
 - * 상시비축규모(2개월 평균 재고): 콩 40~45천 톤, 팥 3천 톤, 참깨 7~8천 톤
 - 양념류
 - * 국내 자급도가 높은 고추, 마늘, 양파등 양념류는 판매예고제를 실시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유도
 - 국내 성출하기 판매 지양 및 단경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심하게 적어지는 시기), 가격상승기에 판매하여 농가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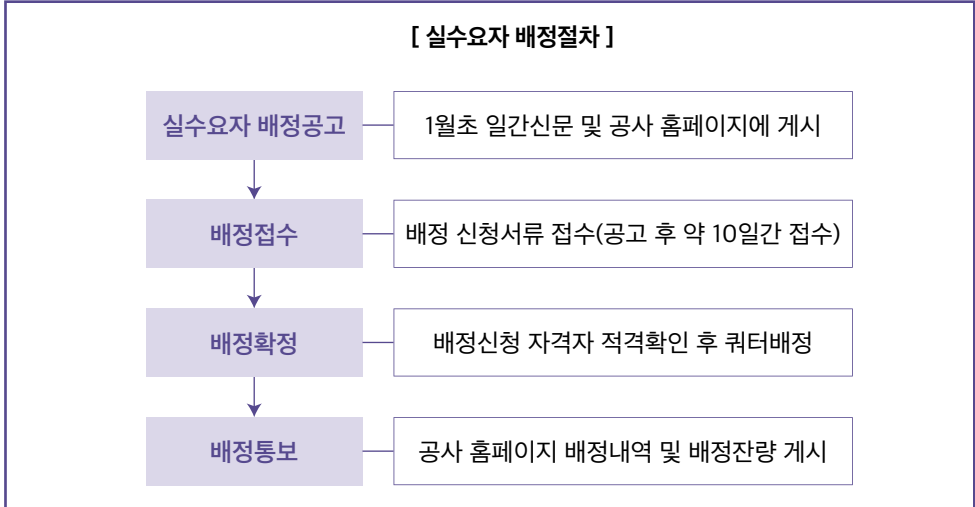
(2) 수입권공매

- 대상품목: (단일배정) 밤, 인삼(2품목), (혼합배정) 녹두, 팥, 메밀, 감자, 양파, 마늘, 참기름, 땅콩, 천연꿀 등 (9개 품목)
- 공매시기
 - 품목별 국내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 결정
 - 통상적으로 계획물량의 50%씩 연 2~3회(상·하반기) 실시
 - 국내 수급여건 및 입찰미이행 물량 발생 등에 따라 추가입찰 실시
- 공매참가자격
 -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24호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 낙찰자 결정: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고가(예정가격 이상) 제시자 순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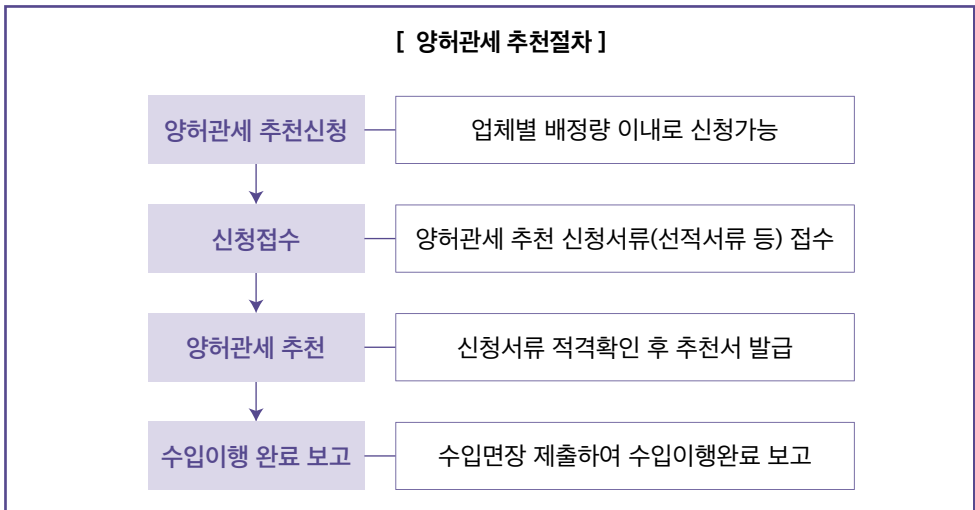
(3) 실수요자 배정

- 대상품목: 49품목
 - (수입실적, 생산능력 기준 배정: 19품목) 옥수수, 보리, 맥아, 맥주맥, 맥니옥, 기타서류, 기타가공 곡물 등, 밀전분 등, 고구마 전분, 감자·변성전분, 매니옥전분, 생강, 녹차, 에틸알콜, 종계, 종돈, 유장, 보조사료, 사료용 근채류 등
 - (선착순 배정: 30품목) 묘목류, 뽕나무, 감자, 조, 호밀, 귀리, 옥수수, 수수, 고구마, 감자분, 오렌지, 감귤류, 잣, 대추, 종유, 조란, 전지분유, 탈지분유, 연유, 유당, 버터, 인조꿀 등
- 배정시기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고시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따라 공사는 연초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배정계획을 공고하여 품목별 용도에 따라 해당 자격자에게 쿼터 배정

■ 배정절차



■ 양허관세 추천절차




[TRQ 품목별 운영계획('23년 기준)]

| 구분 | 품목 | 추천기관 및 추천대행기관 |
|------------------------------|---|--|
| 단일방식 운용 : 53개 품목 | | |
| 지정기관배정 (2품목) | 쌀, 참깨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수입권구매 (2) | 밤, 인삼 |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실적 기준 등 배정 (19) | 옥수수, 보리, 맥아, 맥주맥, 매니옥,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 밀전분 등, 고구마전분, 감자·변성전분, 매니옥전분, 생강, 녹차, 에틸알콜, 종돈, 종계,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유장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류산업협회, 대용유사료협회, 양계협회, 콘협회, 전분당협회, 곡물음료재가공협동조합, 의약품수출입협회, 제지연합회, 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종축개량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버섯생산자협회 |
| 실수요자 배정 (49) | 선착순 (30) | 국립종자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종묘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협회, 유가공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생사수출입조합 |
| | 묘목류, 뽕나무, 감자(종자), 조(종자), 호밀(종자), 귀리(종자), 옥수수(종자), 수수(종자), 고구마, 감자분, 오렌지, 감귤류, 잣, 대추, 종유, 조란, 전지분유, 탈지분유, 연유, 유당, 버터, 인조꿀, 참깨유박, 꿀분, 매니옥펠릿, 기타배합사료, 육분, 잠종, 누에고치, 생사 | |
| 혼합방식 운용 : 10개 품목 | | |
|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구매(2) | 녹두·팥, 메밀·기타곡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지정기관배정 실수요자배정(1) | 대두 |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 |
|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구매 실수요자배정(4) | 감자(종자용 이외), 양파, 마늘, 고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수입권구매 실수요자배정(3) | 참기름과 그분획물, 땅콩, 천연꿀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 |
| 계 | 63개 품목 | 24개 기관 |

Chapter 0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조항 | 제54조(기금의 설치)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설치배경

- 정부는 '61.6월에 곡물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가격이 생산비를 밀도는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취약해진 농업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하고 '66년에 270억 원 규모의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양곡의 정부매상정책과 미곡담보용자제도를 실시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유지제도를 확립 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이나 집행 면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 발생
- 이에 따라 '66.8월에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농가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설치 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산물의 수출지원과 농산물 저장 등의 농업 발전 사업에 활용토록 함
- 농안기금은 '68년에 정부출연 51억 원으로 기금운용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6차례에 걸친 추가 출연과 기금 운용수익을 통하여 2022년말 기준 3조 4,31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정부출연금 1,656억 원(4.8%), 기금운용수익금 3조 2,662억 원(95.2%))하고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식품산업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중

2) 법령 및 기금의 변천

- 66.8월 제정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70.8월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으로 법률 제명을 개정하고 기금 명칭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
- '76.12월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
- '00년 6월에는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제6190호)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호)으로 종자기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안기금으로 통합하고 농안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농수산물유통 공사장에 위임·위탁
-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과제중 하나로써 유사기금 통합방침에 따라 통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7개 기금이 4개 기금으로 정비

- '00년 인삼기금의 경우 연간 운용규모는 92억 원 수준이나 농안기금에서 49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자원부족에 시달리는 종자보급사업과 인삼수매가공수출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토록 3개 기금을 통합
- '04.12월에 「농안법」에 따라 수산분야에 지원되었던 기금을 '05년 1월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하고 농안기금의 설치 근거인 「농안법」 제54조를 개정하여 운용 중

3) 농안기금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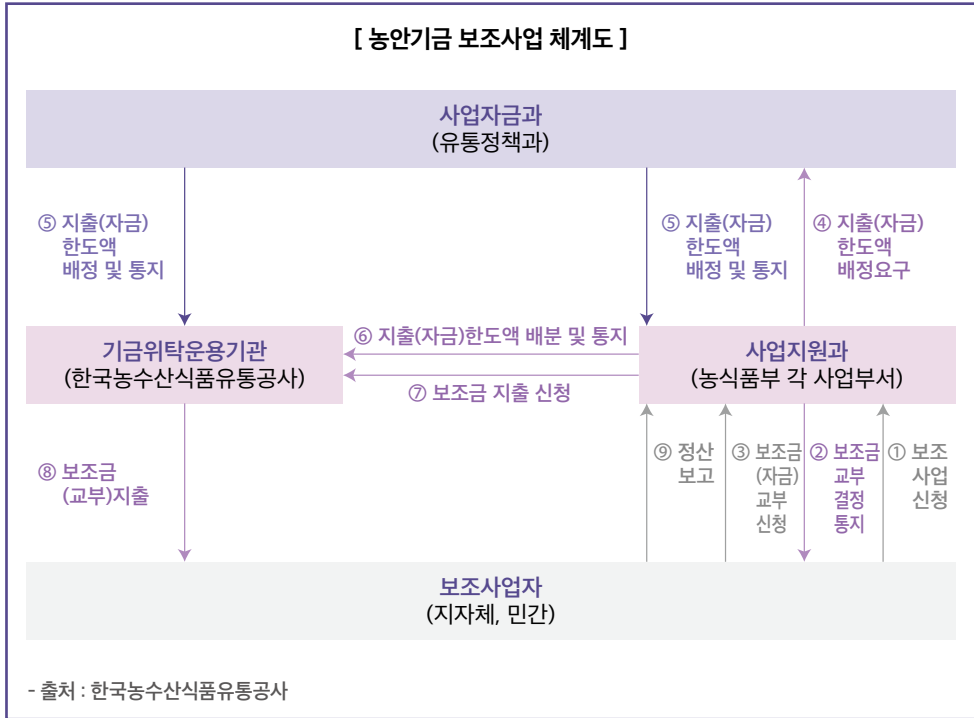
[농안기금 연혁]

| 연도 | 내용 |
|------------|--|
| 1966.8.3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 1968년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기금 운영 |
| 1970.8.4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2214호)으로 법률제명 개정 |
| 1976.12.3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법률 제2926호)을 제정,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신규 법률에 통합하여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기능 강화 |
| 1983.1.1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농림수산부 훈령 제539호) 제정 |
| 1994.10.1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을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사업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796호)으로 제명개정 |
| 2000.6.1 |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제6190호, 2000.1.21)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호)으로 「종자기금및인삼산업진흥기금」을 흡수 통합 |
| 2000.6.7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위탁 |
| 2000.6.7 |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029호) |
| 2004.12.3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산부문을 수산발전기금에 이관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명칭변경 |
| 2007.4.4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268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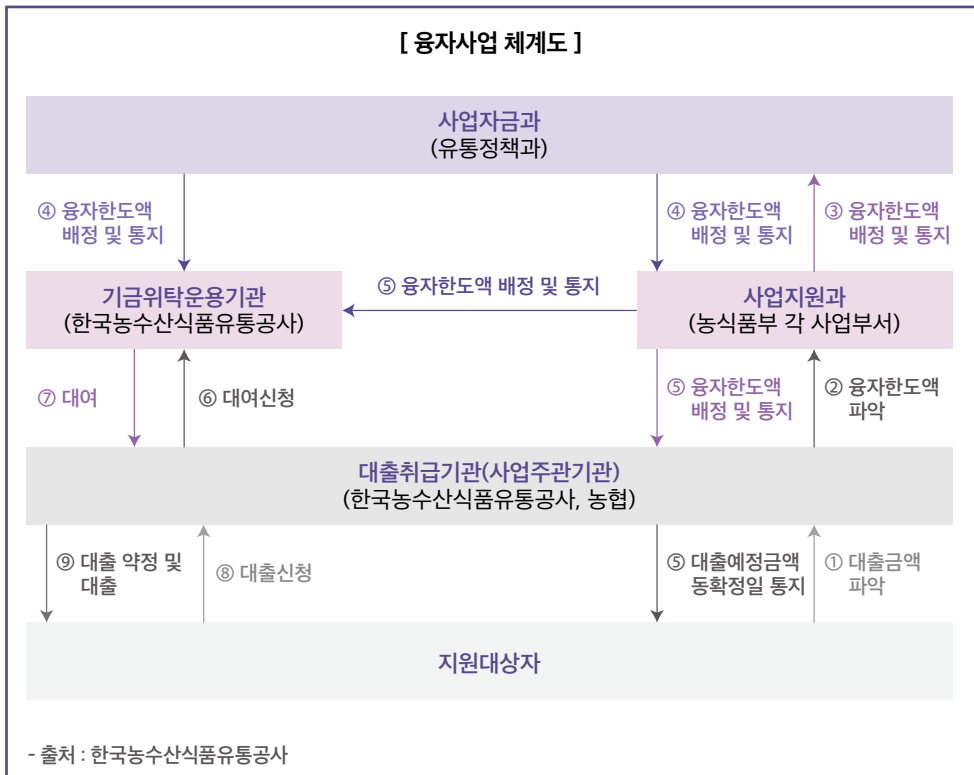
4) 기금계정의 설치(시행령 제2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함
 - ※ 기금설치관련 타 법령: 「국가재정법」 제5조 ①항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운용

■ 농안자금 보조사업 체계도



■ 용자사업 체계도



농안기금의 조성

관련 조항 |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5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1) 농안기금 조성현황

- '22년말 현재 총 조성액은 3조 4,318억 원(정부출연금 4.8%, 운용수익금 95.2%)

[농안기금 조성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 '21까지 | '22 | 누계 |
|-------|--------|--------|----------------|
| 정부출연금 | 1,656 | - | 1,656(4.8%) |
| 운용수익금 | 34,326 | △1,664 | 32,662(95.2%) |
| 합 계 | 35,982 | △1,664 | 34,318(100.0%) |

농안기금 조성현황 참조

- **정부의 출연금**: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 가능(국가재정법 제12조)
-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재정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금. 정부 비축 농산물 등의 판매수입,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등
- **법 제9조의2 제3항·제16조 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농수산물 등의 매각·공매대금 납입금 및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수입 이익금을 징수(부담금)하게 되는 납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및 「인삼산업법」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 납입금(국가재정법 제13조)

Chapter 10

기금의 운용·관리

 관련 조항 |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2011.7.21., 2013.3.23.>
- ② 삭제<2004.12.31.>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7.21., 2011.7.25., 2013.3.23.>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1) 위탁 가능한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범위(시행령 제22조)

-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Chapter 11

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7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 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개정 2012.2.22., 2012.6.1., 2018.12.31.>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7.25., 2013.3.23., 2014.12.31.>
-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6.22.>
- ⑤ 기금을 용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1.7.21.]

• 기금의 용도 및 기능

[기금의 용도 및 기능]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
| | 비축지원 |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
| | 자조금지원 |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
| 농산물유통개선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
| |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
|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보조, 용자) |
| |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
|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용자) |
| | 농산물마케팅지원 |
|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 농산물마케팅지원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
| | 종자수매·공급 |
| 종자수급조절 | 종자수매·공급 |
| 농식품수출촉진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
| 식품산업육성 |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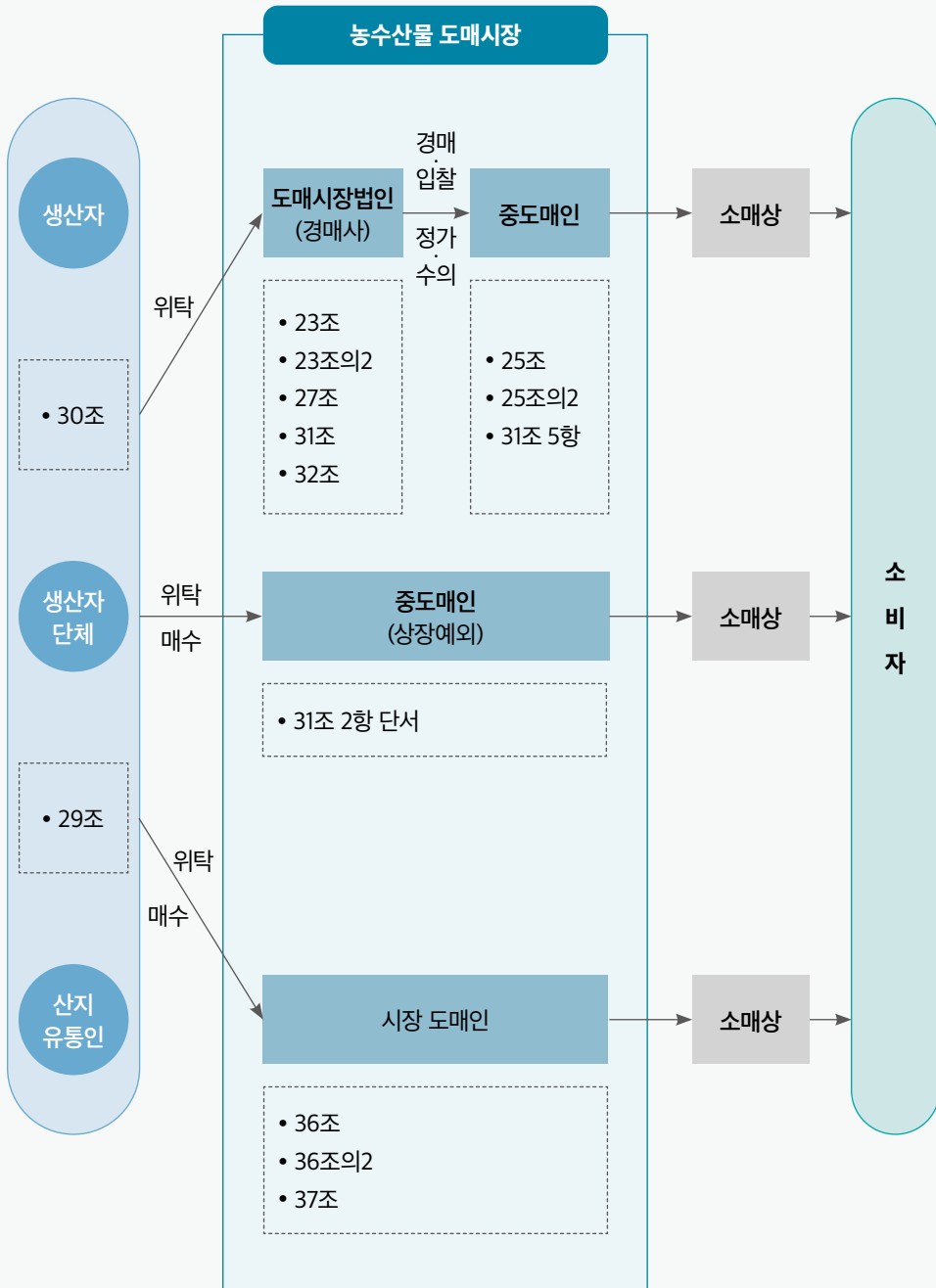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안법상의 도매시장 유통체계 (농안법 제17~42조)

※ [] : 농안법 관련조항



Chapter 01

도매시장의 분류

 관련 조항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③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 중앙도매시장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도매시장 중 도매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권역별 도매거래의 중심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부각
- 종전의 중앙도매시장은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도매시장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것과 2 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한 시장을 뜻하였으나 국고지원이라는 조건과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나 아니라 도매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능별 분류를 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중앙도매시장

- | | |
|----------------------|---------------------|
| ①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②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
| ③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 ④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
| ⑤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 ⑥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
| ⑦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 ⑧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
| ⑨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 ⑩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
| ⑪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 | |

최초의 공영도매시장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적시장으로 건설·육성코자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79년부터 서울특별시 가락동에 933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 166천 평, 건물 60천 평의 대규모 도매시장을 건설하였으며 1985년 6월에 개장하여 용산, 중부, 남대문, 청량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전 수용하였다.

정부는 '85년 6월 가락동도매시장을 개장한 이래 대전, 대구, 청주시 도매시장이 80년대말까지 완공 개장하였고, '92년부터 천안, 안양, 안산, 충주 등 인구 2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도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ISSUE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재분류 요구

- 중앙·지방도매시장 구분에 따른 실익미미
- 지방도매시장의 경영난 반영 필요
- 1개 도시 내 2개 도매시장이 개설된 경우 중앙·지방시장 분류 모호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의 지위 (1/2)

1) 농수산물 유통의 초기단계

-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농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고, 자가소비도 많아 유통량이 적음
- 자가 소비후 남은 농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규모 “장터”에서 직접 만나는 직거래가 주요한 유통 형태임
-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산지와 소비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유통량의 증가에 따라 전문상인에 의한 유통 발전

2) 도매시장의 대두

- 공산품은 생산자(기업)가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보유하거나 도매상이 수집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나 도매상의 집합공간으로써의 “도매시장”은 거의 없음
 - 아이스크림 : 공장 - (물류기지) - (대리점) - 소매점
 - 음반·서적 : 출판사 - 도매상 - (중간도매상) - 소매점
 - * 소규모기업이 주형태인 공산품은 일부 도매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예: 동대문 평화시장의 의류도매 시장 역할) 쇠퇴하는 추세임
- 농산물, 특히 청과물은 공산품과는 다른 유통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수 많은 품목을 거의 매일 대다수 소비자에게 공급
 - 저장성이 약해 유통과정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1회 유통량이 1~2일내 판매가능한 양으로 제한됨
 - 공산품에 비해 생산의 독과점 정도가 낮고 규모도 작아 생산자가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유지하기 곤란
- 따라서 농산물은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산지에서 대량 집하한 농산물을 많은 소매상에 소량씩 분산하기 위해 품목별 도매상이 군집한 도매시장이 불가피함
 - 일반적으로 소비자 반입을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규모가 큰 소매시장 인근에 도매시장이 발달
- 세계 어느 나라나 예외없이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도매시장유통이 농산물유통의 주류를 형성하게 됨

3) 도매시장제도 이전의 농수산물 유통

- 산업화·도시화로 농수산물 유통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재래 시장 형태인 유사시장(위탁도매상 집합)이 형성되어 번창
- 규모가 확대된 위탁도매상은 자체 물량을 확보하고 출하조절로 이익을 극대화
 - 시장정보에 취약한 농민이 직접 출하할 경우 적정금액 미지급 등 생산자의 자유로운 시장출하를 방해하고 거래 미공개로 세금포탈 등의 문제 발생
- 유사 도매시장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점유 영업, 교통난 유발, 쓰레기문제, 소음공해 문제 등 발생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의 지위 (2/2)

- 농수산물은 풍흉이 심하고 부패성이 강하여 유통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시장정보에 유리한 소수의 위탁상과 다수의 생산자가 거래하게 되므로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이 약해 거래에서 생산자가 불리

4) 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의 목적

-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세력과 분산하는 세력 등 두 세력이 도매시장에서 공개·경쟁적인 거래방식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위탁상의 자의적인 가격결정을 견제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한 공영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과 중도매인을 시설비 부담없이 입주시키는 대신 「농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종합유통센터나 직거래사업, 그리고 민간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등과 상호 경쟁 속에 유통효율을 제고

5) 유통여건 변화와 도매시장의 미래

- 생산규모가 대형화되고, 소매점의 체인화·규모화가 이루어질수록 소매체인 사업자에 의한 도·소매의 통합, 산지 직구입 및 소매점 직공급 체계가 발전
-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 대형 소매점의 유통비중이 확대
- 그러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다양한 구색을 갖춰 신속하게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산지 수집비용, 재래시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도매시장 유통이 주 형태로 역할

[도매시장의 변화]

| 구분 | 1987년 | 2000년 | 2011년 | 2021년 |
|------------|----------------------|----------------|------------------|------------------|
| 도매시장 수 | 55개소(2) | 48(23) | 48(33) | 49(33) |
| 도매법인 수 | 62개소(9) | 108(83) | 118(104) | 121(107) |
| 도매법인 임직원 수 | - 명 | 3,427(2,414) | 3,416(2,879) | 2,924(2,356) |
| 중도매인 수 | - 명 | 7,837(6,901) | 8,187(7,631) | 7,843(7,333) |
| 거래물량 | 2,125천 톤(1,316) | 6,130(5,645) | 7,096(6,797) | 7,042(6,815) |
| 거래금액 | 14,189백만원 (5,889) | 61,549(50,657) | 116,226(106,477) | 156,224(145,285) |

- * 주 1) '87년 임직원수, 중도매인 수 통계 미비
 2) ()는 전체 도매시장 중 공영도매시장의 현황 표시임
 3) 도매법인에는 도매시장내 입주한 도매시장공판장 실적 포함

일본 도매시장법에서 도매시장 정의와 요건

제2조(정의)

- ① 이 법률에 있어서「신선식품등」이란 야채, 과일, 어류, 육류 등의 신선식품 기타 일반소비자가 일상 생활에 이용하는 식품 및 화훼 기타 일반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축수산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률에 있어서「도매시장」이란 신선식품 등의 도매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으로, 도매장소, 자동차 주차장 그 밖의 신선식품 등의 거래 및 물품 정리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개장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법률에 있어서「개설자」란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법률에 있어서「도매업자」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신선식품 등에 대하여 그 출하자로부터 도매를 위한 판매 위탁을 받거나 또는 매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도매를 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이 법률에 있어서「중간도매업자」란 도매시장에서 도매를 받은 신선식품 등을 해당 도매시장 내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중앙도매시장의 인정)

- ① 도매시장(그 시설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제5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은 농림수산성 장관의 인정을 받아 중앙도매시장이라고 칭할 수 있다.
- ② 그 개설하는 도매시장에 대하여 전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개설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신청서」라고 함)를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제출하여 동항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 1) 개설자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그 대표자 이름
 - 2) 도매시장의 명칭
 - 3) 도매시장의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시설에 관한 사항
 - 4) 도매시장의 취급품목 그리고 취급품목별 취급 수량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5) 도매시장의 업무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 6) 도매시장의 업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 도매시장의 도매업자에 관한 사항
 - 8)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서에는 그 신청과 관계되는 도매시장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업무규정」이라고 함)을 첨부해야 한다.
- ④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

~ 이하 생략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자료실에 전문 공개) ~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관련 조항 |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시행령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木果類)·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鹽)건어류·염장어류(鹽藏魚類)·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折花)·절지(折枝)·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12.8.22.]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목과류 : 밤·잣·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전문개정 2012.8.23.]

ISSUE | 도매시장 취급가능 농수산물의 범위를 식품까지 확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 영세가공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가공식품 판매 허용 요구
- 스테비아 토마토 거래허용 요구

Chapter 03 도매시장의 개설

관련 조항 |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2.>
- ② 삭제<2012.2.22.>
-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2013.3.23.>
-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2., 2013.3.23.>
-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2., 2013.3.23.>
-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1)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

- 지방도매시장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는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직접, 시가 개설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
-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16조)

-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물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시행령 제15조)
-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개월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제17조 제6항)
 -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시가 도매시장을 폐쇄할 때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
 - ※ 도매시장을 폐쇄할 경우 허가 또는 공고기간은 도매시장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임

2) 도매시장 개설구역 (법 제18조)

-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3) 도매시장의 개설 허가 절차

-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개정 2012. 2. 22., 2013. 3. 23.> (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할 때에도 같음(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 제17조제4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함
 -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함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7조 제5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허가 기준(법 제19조 제1항)
 -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도지사는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할 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4)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법 제20조)

-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 16조) (1/2)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 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 16조) (2/2)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 17조)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관련 조항 | 제21조 및 제22조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5>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2.2.22.]

1)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시행규칙 제18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
 -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 관리
 -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공영도매시장 관리유형별 현황

- 관리사무소 형태: 부산업공 등 29개 도매시장
- 관리공사(지방공기업) 관리: 3개 도매시장(가락·강서·구리시장)
- 공공출자법인 관리: 1개 도매시장(강릉 도매시장)

외국의 도매시장 운영현황

- 미국(뉴욕 헨츠포인트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상으로 구성된 도매상조합(COOP)에 관리권 위탁
 - COOP는 시설물관리회사에 용역을 주어 시장관리업무 수행
- 일본(쓰끼지 농수산물도매시장)
 - 개설자인 동경도 소속 공무원이 직접 관리
- 네덜란드(알스미어 화훼경매장)
 - 화훼생산자조합 소속 관리회사(DFWB)에 의해 관리·운영
- 프랑스(헝지스 도매시장)
 - 관리주체는 SEMMARIS(관리공사)로 개설자 감독 하에 운영

2) 도매시장의 운영

- 도매시장의 운영 유형
 - ①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②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3가지 유형이 모두 가능
 - 중앙도매시장(청과부류, 수산부류)의 경우 ①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2가지 유형이 가능함(법 제22조 단서, 시행규칙 제18조의2)
- 도매시장법인 등의 적정 수
 - 적정 수 지정의 취지는 주어진 시설여건하에서 거래효율을 높이고 과다지정에 따른 기능수행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함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관련 조항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4. 3. 24., 2015. 2. 3.>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1) 도매시장법인의 정의(법 제2조 제7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법 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
- 도매시장법인은 물량의 집하기능이 그 주요 기능이며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는 것'이 생산농가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임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이 생명인 도매시장제도에서는 수탁주체와 분산주체의 역할분담 필요
 - *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 중도매인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

2)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함
 - 이 경우 5년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 개설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시장 운영의 공공성 제고

3)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시행령 제1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개설자에게 제출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여야 함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를 거쳐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 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자격요건중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해당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할 것을 말하며 회사 외에 있으면서 회사의 이사회에만 참여하는 비상임 이사는 해당되지 않음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음

허가·등록·지정의 의미

허가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허가로 인한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등록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지정

지정은 사람·사업활동·상품 등을 특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활동 허가에 준하는 의미로 사용

Chapter 06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관련 조항 |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2. 6. 1., 2013. 3. 23., 2019. 8. 27.>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보관·저장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產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1)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함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
 -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 *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 *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의 제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 1. 제1차 위반:보완명령 2. 제2차 위반:1개월 금지
- 3. 제3차 위반: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1년 금지

- 경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2) 전자거래

(1) 전자거래 개요 및 도입취지

- 정가·수익매매에 한해 해당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07년 1월 농안법 개정시, 농안법 제35조 2항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공정)의 전자거래를 허용
- 모든 거래물량의 도매시장 반입으로 시장 내 혼잡 가중 및 상하차비 발생으로 물류비용 증가
 - ※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20-25호)개정에 따라 전자거래 운영방식이 기존 정가매매 또는 수익매매로 거래하는 것에서 확대되어 농안법 제32조의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익매매를 적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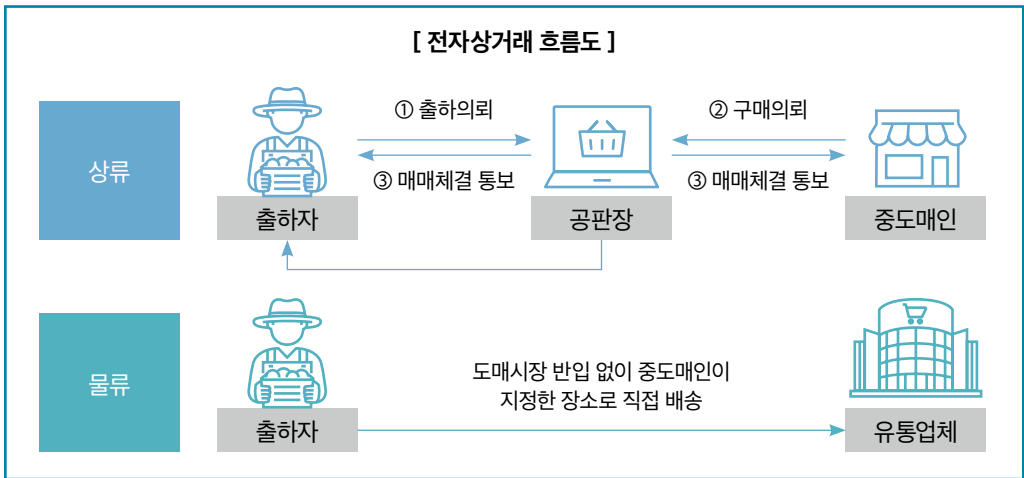
관련 조항 |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20-25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5조(전자거래 운영방식)

①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의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익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



(2) 거래주체별 역할

< 출하자 >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출하자 등록) 및 전자거래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설치
- ② 출하예약 등록
 - 출하품목, 품종, 규격, 등급, 중량, 수량, 단가, 출하예정일 등 선택
- ③ 거래성사 여부 파악
- ④ 중도매인이 의뢰한 배송지로 물품 배송
- ⑤ 표준정산서 내역 및 입금확인

< 도매시장법인·공판장(경매사) >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접수된 출하예약 사항 및 구매의뢰 사항 확인
- ② 거래단가 등 조율을 통해 거래성사 유도 및 최종 단가 입력
- ③ 중도매인으로부터 물품검수상 이상 여부 확인
- ④ 출하자에게 표준정산서, 중도매인에게 낙찰명세서 발송
- ⑤ 중도매인 대금 입금 확인 및 출하자 대금 송금
- ⑥ 전자거래결과 개설자에게 보고

< 중도매인 >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중도매인 등록) 및 전자거래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설치
- ② 구매의뢰 등록
 - 품목, 원산지, 품종, 등급, 규격 등 선택
 - 중량, 수량, 단가 등 선택
 - 배송지, 수령인, 연락처, 구매희망일자 등 선택

- ③ 거래성사 여부 파악
- ④ 구매의뢰내역과 실제 배송내역의 일치여부 검수 후 도매법인에 통보
- ⑤ 낙찰명세서 확인

(3) 전자거래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2021년 전자거래 실적: 132,369톤 / 305,207백만 원(총 50개소 ; 법인 29, 공판장 21)
- 상·물류 분리로 인한 물류비(수수료, 시장 내 배송비, 하역비 등) 감소
- 유통시간 단축으로 상품 신선도가 향상되어 품질경쟁력 강화
- 거래물품의 시장 미반입으로 시장혼잡 예방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



Chapter 07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관련 조항 |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 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1) 도입배경

- 도매시장 운영·관리의 투명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지도기능 강화 필요
- 출하자, 산지유통인, 대형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 요구 증대
- 도매시장 정보제공의 의무, 제공방법·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서비스 개선 필요
 - 도매시장은 공정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정부가 건설한 공영시장이므로 출하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매 시장 운영주체에게 정보의 공개를 유도

2) 공시정보의 종류, 방법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
 -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함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관련 조항 |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24조(공공출자법인)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1) 공공출자법인제도 도입배경


-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운영업무는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함으로써 관리·운영조직이 이원화되어 업무가 중복되고 유통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2)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운영 현황

- 법인명 : (주)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주주 : 강릉시 40.56%, 강릉원에농업조합 34.00%, 강릉농협협동조합 16.44% 등)
- 설립 : 1999.8. 농수산물 중개업을 목적으로 강원 강릉시 유산로 60,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유산동)에서 대표이사 최철규에 의해 설립(자본금 2,000백만 원)
 - * 현 대표이사 임규수

Chapter 09

중도매인의 허가

 관련 조항 |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2017.3.21.>
1.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2.2.22., 2014.3.24., 2015.2.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3.24.>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
-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2.22.>
-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3.21.>

[전문개정 2011.7.21.]

1) 중도매인의 정의(법 제2조 제9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아래의 영업을 하는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2) 중도매인의 역할

- 가격형성기능: 소비자(소매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매에 참가)
- 물량분산기능: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판매 및 중개

중도매인 제도의 연혁

- '51.6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중매인에 관한 규정 없음
 -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누구든지 구입 가능
 - '73.2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서 처음으로 중매업 허가제도 도입
 - 중매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 없음
 - '76.12 「농안법」 제정시 중매업제도 유지 * 제23조(현재 제25조)
 - 중매업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25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 '86.12 「농안법」 개정시 중매업의 정의 명확화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
 - '93.6 「농안법」 개정시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 '94.11 「농안법」 개정시 중도매인을 도매거래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함
- 「농안법」 개정시 중도매인의 비상장 농수산물(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조항 신설
-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

농안법 파동!

1993년 6월 의원입법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개정 내용 가운데에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고 수탁 판매, 수집판매, 도매행위 등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일체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행위만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매인의 위탁판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중매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소위 “농안법 파동”이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진 : 한겨레신문

중도매인은 단순 중개만 할 뿐 현지 수집·도매 행위를 못한다고 정한 1994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은 ‘농안법 파동’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누누이 설명하였으나 당시 사회전체의 개혁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1993년 5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6월 11일 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예상한 대로 관련 단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21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중매인조합연합회는 정부에 개정 「농안법」 시행 전에 문제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매시장지정도매인협회도 중매인 거래를 중개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개를 하고 남은 매잔품에 대해서 만이라도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 개정 심의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농림축산식품부도 1993년 6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지정도매인 및 중매인 대표 등 12명으로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의 영업 범위를 중개업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잔판매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어, 중매인의 잔품 처리를 위한 도매행위에 대해서 중개행위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내용을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담은 조항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상 상위법인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채 1994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최종 통과되었다.

“잔품처리의 중개행위 인정”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자 도매시장 중매인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법 시행 첫 날인 5월 1일은 일요일이어서 별일 없이 지나갔으나, 5월 2일 청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매수하지 않아 상장된 야채, 과일 220톤 가운데 67톤만 낙찰되고 153톤이 유찰되어 잔품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거래가격은 전날보다 60~90% 수준까지 폭락하였으며, 20여 명의 출하 농민들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행정당국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전국 중매인이 집단시위에 들어갔고 도매시장은 큰 혼란은 맞았다. 5월 4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아예 경매에 참가하지 않아 도매시장 건설 이래 처음으로 경매 없는 날이 발생하였고, 일부 농수산물만 출하자의 직판으로 거래되었다. 이처럼 도매시장이 마비되자 산지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의 서울 반입이 어려워져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지에서는 물량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매인 도매행위금지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한 해결 실마리도 찾지 못하다 결국 5월 4일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즉 개정 「농안법」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홍보 및 계도 준비기간을 당초 1개월로 설정했던 것을 6개월로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에 도매시장제도 및 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유통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새로운 유통개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장관의 발표가 있는 후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기관의 유통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유통개혁기획단(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1994년 9월 1일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는 재차 개정된 「농안법」이 공포되었다.

3) 중도매인의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중도매업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5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개설자가 허가유효기간 설정(다만, 개인인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의 범위)
 - 부류별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 부류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함
 - 농수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함(법 제44조 제2항)
 - *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공판장에서 업무할 수 있음(법 제26조)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중도매인이 제25조 제3항의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는 중도매업 영업을 위한 필요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다만 법 제25조 제3항 제2호의 “실형의 선고”에는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는 해당 되지 않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업을 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86조 제3호)
- 중도매업 허가의 법적 성질
 - 중도매업 허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제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허가에 해당함
 - 중도매업 허가는 대상자의 능력 등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대인허가이므로 임의적인 양도·양수가 제한되는 성질을 가짐

4) 중도매업 허가절차(시행규칙 제19조)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인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이력서, 은행의 잔고증명서
 - 법인의 경우 : 주주명부,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개설자는 중도매업 허가시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음

5) 중도매인의 거래(법 제31조 제2항)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요건
 - 제2조 각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비상장허가 농수산물 거래 중도매인의 준수사항(도매시장법인 준용규정)
 - 제35조 제1항 :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 제38조 : 수탁, 위탁 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제39조 :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농수산물을 인수
 - 제40조 제2항·제4항 : 표준하역비 부담, 하역전문업체 등과 하역 용역계약 체결
 -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 : 정산창구를 통한 대금결제
 - 제42조 제1항 제1호·제3호 : 시장사용료, 위탁수수료
 - 제81조 :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

6) 중도매인의 의무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39조제1항)
-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5조제5항제1호)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88조제3호)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업무집행상황 보고의무(법 제79조제2항)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보고 제외, 법 제90조제3항제5호)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5조제5항제2호)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88조제3의2호)

7)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82조제5항)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 6.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 7.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84조)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관련 조항 | 제36조, 제37조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4. 3. 24., 2015. 2. 3.>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1) 시장도매인의 정의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법 제2조제8호)
 - 통상 “도매상” 이라고 하나 기존 도매상과 자격, 정산방법, 영업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용어로 “시장도매인”이라고 함

[시장도매인과 일반위탁상의 비교]

| 구분 | 시장도매인 | 일반위탁상(도매상) |
|-----------|--|-------------|
| 운영주체의 법인격 | 법인 | 대부분 개인 위탁상 |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규모 등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 정산의무 | 정산제도 이용 의무화 | 없음 |
| 지정기간 | 5~10년 사이에서 개설자가 지정 | 없음 |
| 영업활동규제 |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거부 금지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수탁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 없음 |

2) 도입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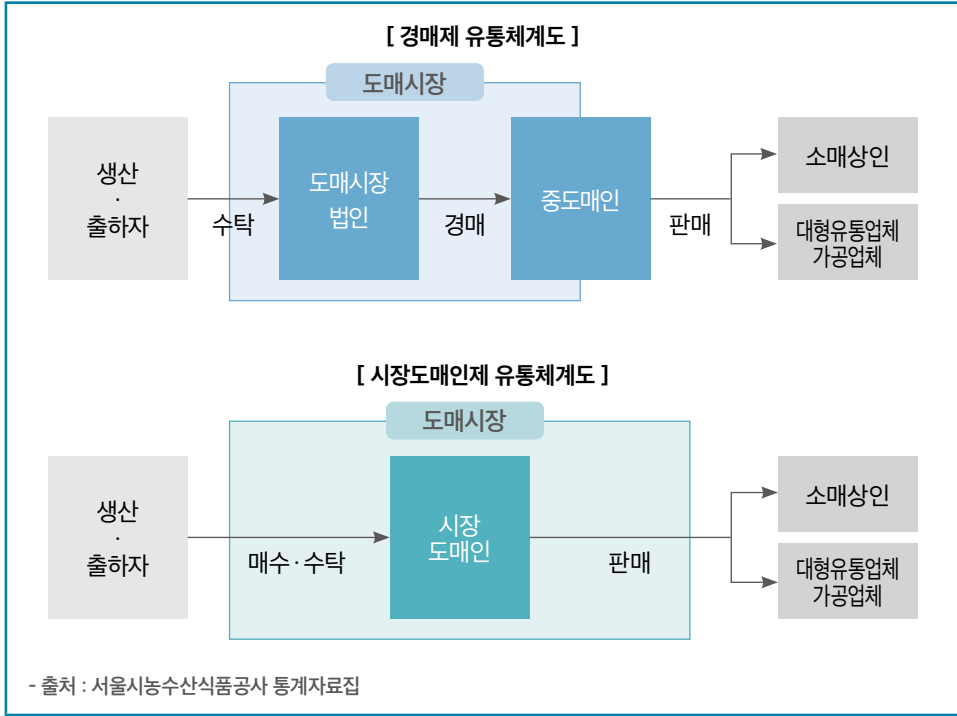
(1) 지방도매시장

- 「농안법」 시행일인 2000.6.1 부터 도입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2) 중앙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 → 시행령 부칙 개정('05.6.23)으로 2005년 7월 1일로 명시
- 청과부류, 수산부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3)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2004)



3) 시장도매인의 지정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 부류 등)로 5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시행령 제18조)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정관,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함(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6호)
 - 적정 수는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류별로 상한수를 정함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최저거래금액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4) 시장도매인의 영업

-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거래한 내역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기재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시장도매인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매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생한 차손금은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를 정함
-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함.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출하자에게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

시장도매인 관련 운영 규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 지정유효기간 설정,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 시장도매인의 영업(제37조)
 - 매수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
 - 해당 도매시장 내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판매 금지
- 수탁의 거부금지 등(제38조)
 -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자는 즉시 인수(제39조)
- 하역업무(제40조)
 - 표준하역비 부담, 하역업무는 용역체결 운영 가능
- 대금결제(제41조)
 - 매매된 경우 즉시 결제, 정산제도 이용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 시장도매인이 매매하는 경우 산지유통인등록 면제(제29조)
- 민영도매시장에서도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 가능(제48조)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그 구역내의 농수산물 도매업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가능(제64조)
-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제77조)
- 시장도매인에 대한 기장사항, 거래내역보고 지시(제79조)
- 업무처리의 개선 등 명령(제81조)
-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제82조)

시장도매인제 도입 경위

1) 추진경과

- 국민의 정부출범후 농산물유통개혁을 위하여「농산물유통개혁대책위」를 구성, 유통개혁과제를 논의('98.3 ~ '98.6)
 - ※ 직거래의 제도화, 공영도매시장개혁, 산지유통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물류 및 정보체계개선, 수급 안정 등 과제 논의
 - 건의된 개혁대책을 바탕으로 '98.7.23 대통령께「농산물유통개혁대책」보고
- 입법과정에서도 도매시장 개혁과제로 선정된 도매상제(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안 마련
 - 도매상제의 도입범위(중앙·지방), 영업범위(매수·수탁 등) 등에 대하여 논의
- '98.12.2에 국회에 농안법 개정안 제출, '99.12.16에 개정안 의결
 - ※ 주요내용 : 시장도매인제도입, 표준하역비 등 도매시장개혁대책과 유통명령, 자조금 등 수급 안정제도 도입
- 농안법 공포('00.1.28)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00.6에 완료하고 시행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과정]

- '98.3. 각계 전문가 30인으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및 총괄반 등 5개 실무대책반 발족
- '98.5. “도매상제 도입” 전국중도매인 성명서 발표
- '98.6. 농수축산물유통개혁 정책기획단 회의개최(국민회의)
- '98.6. “농업인 동의없는 수탁매매 도입 반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발표
- '98.6. “도매상제 도입 반대” 농협공판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 '98.6.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3차 공청회(프레스센터 19층)
- '98.7. “도매상제 도입 요구” 시설채소 생산자연협회 호소문 발표
- '98.8. 국민회의 “농축산물유통개혁안” 발표, 서남권 도매시장에 도매상제 도입
- '98.9.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한농연 시위집회
- '98.10. 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 '98.10. 중도매인 과천청사앞 집단시위
- '98.11. 농안법 개정안 2차 입법예고
- '98.12. 농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99.1. 농안법 개정안 4차 공청회 실시(국회의원 회관)
- '99.3. 국회농림해양위 주관 농안법개정 공청회 개최
- '99.12. 농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0.1. 농안법 개정안 공포
- '00.6.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 |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36조의2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2.2.22.>
-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1) 도입배경

- 도매시장법인 등은 인적구성, 자산 규모면에서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시급
-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로 도매시장 구조 개선 촉진
 -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으로 경영 효율 증대 및 전국 단위의 경영규모 실현
 - 부실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 경로 마련으로 규모화 및 법인화 유도

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절차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신청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사본
 -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음
 -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 임원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 임원중 제82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3) 법인인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절차

-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절차로 실시

4) 인수·합병을 통한 기대효과

- 도매시장 거래관계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로 도매시장정비 촉진
 - 부실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 경로 마련으로 규모화 및 법인화 유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으로 경영 효율 증대 및 전국 단위의 경영규모 실현
- 거래관계자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하여 도매시장 출하자 및 구매자 편의 제고
 - 도매시장거래의 투명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규모화된 산지와의 거래능력 제고
 - 거래규모 확대로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시장 고객을 유치 가능

매매참가인의 신고



관련 조항 |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나. 증명사진(2.5cm×3.5cm)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전문개정 2012. 8. 23.]

1) 매매참가인의 정의 (법 제2조 제10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2) 매매참가인 제도의 의의

매매참가인 제도는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입찰에 참가시킴으로써 경매를 활성화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음

3) 매매참가인 제도의 연혁

- '73. 2 : 매매참가인 승인제도 도입
- '76. 12 : 매매참가인 등록제로 변경, 등록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
 - 도매시장 거래품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 대량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구입하는 자

- '94.5:매매참가인 정의 규정 신설
 - 가공업자, 농수산물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실수요자로 한정
- '94.11:매매참가인의 정의를 수요자로 확대
- '00.1:매매참가인의 등록제 폐지
 -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폭넓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매활성화 도모
- '07.1:매매참가인의 신고제 도입

4) 매매참가인의 신고 (시행규칙 제19조의3)

-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명사진(2.5cm×3.5cm) 2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경매사의 임면

 관련 조항 |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경매사의 임면)

-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3.24.,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 경매사의 정의(법 제2조 제13호)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1) 경매사의 업무

- 경매사의 임무
 -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주는 매매자의 역할
 -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
 - ※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등의 도입으로 경매사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도매시장내 경락가격 및 낙찰자 결정 기능외에 품질평가, 산지집하 및 경매후 관리기능 등의 중요성 증대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 : 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 : 수뢰후 부정퇴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2) 경매사의 임면제도

-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 자격요건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 제4호)
-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은 경매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경매사 면직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 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경매사 자격시험

- 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법 제27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시행령 제17조의2)
 -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
 - 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 청과부류·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처분을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참조)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cm×4cm) 1매

[제1회 경매사 자격시험실시(1990. 8. 16)]



Chapter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관련 조항 |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개정 2012. 2. 22.>
-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1) 산지유통인의 정의(법 제2조 제11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2) 연혁

- '94. 11: 수집상등록제 도입('95. 7. 1 제도 시행)
- '00. 1: 수집상에서 산지유통인으로 용어변경

3) 산지유통인 등록제의 취지

- 농산물유통에 있어서의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인정하여 유통효율성 제고와 농수산물 출하조절과 가격안정 도모
- 산지유통인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수탁, 수집행위 근절

4) 산지유통인의 등록 (시행규칙 제24조)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산지유통인의 등록예외 (시행규칙 제25조)

-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6) 산지유통인에 대한 벌칙

-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 제5호)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산지유통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 제6호)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 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5항)
 - 이러한 도매시장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90조 제3항 제2호)

7) 산지유통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8)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개설자는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

[전국 출하자 및 산지유통인 등록현황(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 합계 | | | 일반출하자 | | | 산지유통인 | | |
|--------------|---------|---------|---------|---------|---------|---------|--------|-------|--------|
| | 개별 | 단체 | 소계 | 개별 | 단체 | 소계 | 개별 | 단체 | 소계 |
| 계 | 550,421 | 189,139 | 739,560 | 539,117 | 186,948 | 726,065 | 11,304 | 2,191 | 13,495 |
|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 59,010 | 19,062 | 78,072 | 54,410 | 18,377 | 72,787 | 4,600 | 685 | 5,285 |
| 서울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 9,502 | 18,437 | 27,939 | 9,230 | 18,437 | 27,667 | 272 | - | 272 |
| 부산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 10,659 | 12,358 | 23,017 | 10,656 | 12,358 | 23,014 | 3 | - | 3 |
| 부산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 4,231 | 2,424 | 6,655 | 4,211 | 2,393 | 6,604 | 20 | 31 | 51 |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 688 | 143 | 831 | 414 | 42 | 456 | 274 | 101 | 375 |
|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 28,736 | 16,846 | 45,582 | 27,773 | 16,845 | 44,618 | 963 | 1 | 964 |
| 인천남촌농수산물도매시장 | 6,385 | 19,700 | 26,085 | 6,335 | 19,697 | 26,032 | 50 | 3 | 53 |
| 인천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 3,026 | 2,134 | 5,160 | 2,989 | 2,133 | 5,122 | 37 | 1 | 38 |
| 광주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 54,016 | 2,962 | 56,978 | 53,826 | 2,947 | 56,773 | 190 | 15 | 205 |
|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70,400 | 13,981 | 84,381 | 69,444 | 13,818 | 83,262 | 956 | 163 | 1,119 |
| 대전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 5,147 | 6,957 | 12,104 | 3,375 | 6,942 | 10,317 | 1,772 | 15 | 1,787 |
|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 20,714 | 1,856 | 22,570 | 20,554 | 1,724 | 22,278 | 160 | 132 | 292 |
|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 22,517 | 5,951 | 28,468 | 22,117 | 5,945 | 28,062 | 400 | 6 | 406 |
|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 1,733 | 7,529 | 9,262 | 1,711 | 7,475 | 9,186 | 22 | 54 | 76 |
|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 2,808 | 1,572 | 4,380 | 2,735 | 1,297 | 4,032 | 73 | 275 | 348 |
|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 1,362 | 672 | 2,034 | 1,184 | 667 | 1,851 | 178 | 5 | 183 |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19,520 | 38,669 | 58,189 | 18,984 | 38,210 | 57,194 | 536 | 459 | 995 |
|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 | 738 | 431 | 1,169 | 738 | 431 | 1,169 | - | - | - |
| 원주농수산물도매시장 | 6,127 | 1,158 | 7,285 | 6,115 | 1,158 | 7,273 | 12 | - | 12 |
|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 | 9,978 | 1,017 | 10,995 | 9,909 | 1,017 | 10,926 | 69 | - | 69 |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 40,859 | 1,858 | 42,717 | 40,728 | 1,858 | 42,586 | 131 | - | 131 |
|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 12,727 | 1,453 | 14,180 | 12,714 | 1,354 | 14,068 | 13 | 99 | 112 |
|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 3,522 | 685 | 4,207 | 3,517 | 685 | 4,202 | 5 | - | 5 |
|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 9,470 | 506 | 9,976 | 9,045 | 471 | 9,516 | 425 | 35 | 460 |
|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 | 2,196 | 302 | 2,498 | 2,147 | 253 | 2,400 | 49 | 49 | 98 |
| 정읍농수산물도매시장 | 5,731 | 1,277 | 7,008 | 5,721 | 1,277 | 6,998 | 10 | - | 10 |
| 순천농수산물도매시장 | 8,728 | 5,930 | 14,658 | 8,728 | 5,930 | 14,658 | - | - | - |
| 포항농수산물도매시장 | 6,186 | 1,041 | 7,227 | 6,169 | 1,041 | 7,210 | 17 | - | 17 |
|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 17,208 | 285 | 17,493 | 17,203 | 285 | 17,488 | 5 | - | 5 |
| 구미농수산물도매시장 | 88,987 | 415 | 89,402 | 88,965 | 415 | 89,380 | 22 | - | 22 |
| 창원팔용농수산물도매시장 | 4,168 | 660 | 4,828 | 4,132 | 598 | 4,730 | 36 | 62 | 98 |
| 창원내서농수산물도매시장 | 4,573 | 247 | 4,820 | 4,573 | 247 | 4,820 | - | - | - |
| 진주농수산물도매시장 | 8,769 | 621 | 9,390 | 8,765 | 621 | 9,386 | 4 | - | 4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정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부
록

Chapter 15

출하자 신고



관련 조항 | 제30조(출하자 신고)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제30조(출하자 신고)

-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 ① 법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3.]

- 산지유통인 등록제에 부가하여 출하자(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도 신고제를 실시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품질의 안정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
 -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자(산지유통인)는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함(법 제29조)
- 출하예약을 통하여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별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약출하를 유도
 - 출하자가 사전에(2,3일전) 도매시장법인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출하할 품목·수량·시기 등을 예약한 후 출하
- 출하자 신고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음
 - ※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하는 홈페이지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at.agromarket.kr>)”

Chapter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관련 조항 |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2.>

1) 수탁판매의 원칙(법 제31조 제1항)

-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함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 수탁판매의 예외(시행규칙 제26조)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9조 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절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알려야 함
 -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2) 매매방법 (시행규칙 제28조)

(1) 경매 또는 입찰

-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3) 경매 또는 입찰방법 (법 제33조)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으로 경매 또는 입찰할 수 있는 경우(시행규칙 제31조)
 - *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의 판매
 - * 그 밖에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입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음
 - 우선판매 대상품목(시행규칙 제30조)
 - * 대량입하품
 -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 예약 출하품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해외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일본

1) 중앙도매시장의 매매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

※ '99년 법 개정 시 경매원칙 폐지

2) 매매거래의 방법(2018년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기준)

- 중앙도매시장 인정기준에 업무규정상에 매매거래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매매거래 조건을 공포하게 되어 있음
 - 도매업자의 신선식료품 등의 품목별 경매 또는 입찰 방법, 상대에 의한 거래 방법 그 밖의 매매 거래 방법
- 2018 개정 전 있었던 1호, 2호, 3호의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과거 거래방식이 남아 있음

대만

- 거래방식은 경매거래, 협의가격거래(상대거래), 표시가격거래, 투표거래(입찰)가 있으며, 시장별로 거래 방식을 정하나 협의가격거래 제도 운영시장이 대부분 차지
 - ※ 표시가격거래: 출하자가 시장직원을 대동하여 물품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시장내 모든 유통주체(도매업자, 중매인, 가공업자등)가 표시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

프랑스

- 도매상제 정착으로 거래방법은 전통적으로 상대거래가 지배적이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장 내 직접 판매하는 제도 병행

미국

-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통상 출하자와 사전 계약에 의한 상대거래 실시

 **관련 조항 | 일본 도매시장법 매매거래(2013년, 2018년 비교)**

(2013년 기준 일본 도매시장법)

제3절 매매 거래

제34조(매매거래 원칙)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제35조(매매 거래 방법) ①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 행하는 도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신선 식료품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매매 거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1) 경매 또는 입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적당한 신선식료품 등으로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것 경매 또는 입찰 방법
- 2) 매일의 도매 예정 수량 중 적어도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경매 또는 입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적당한 신선식료품 등으로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것 매일의 도매 예정 수량 중 개설자가 신선 식료품 등의 품목별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입찰 방법,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혹은 입찰 방법 또는 상대에 의한 거래 방법(1)의 도매업자와 1)의 도매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매매 거래를 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하 '상대거래'라고 함)
- 3) 전2호 이 외의 신선식료품 등으로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것 경매 혹은 입찰 방법 또는 상대거래

(2018년 기준 일본 도매시장법)

제3장 중앙도매시장

제4조(중앙도매시장의 인정) ⑤ 농림수산성 장관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계되는 도매시장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 4) 업무규정에 전항 제1호의 사항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동시에 해당 방법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되어 있을 것
 - 가. 도매업자의 신선식료품 등의 품목별 경매 또는 입찰 방법, 상대에 의한 거래 방법 그 밖의 매매거래 방법
 - 나. 거래 참가자가 매매거래를 행할 경우의 지불 기일, 지불 방법 그 밖의 결제 방법
- 5) 업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준수사항이 다음 표의 좌측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표의 우측에 열거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것

| | |
|-----------------------|--|
| 1. 매매거래 원칙 | 거래 참가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매매거래를 행할 것 |
| 2. 차별적 취급금지 | 도매업자는 출하자 또는 중간도매업자 그 밖의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않을 것 |
| 3. 매매거래 방법 | 도매업자는 전항 가의 방법으로서 업무규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도매를 할 것 |
| 4. 매매거래 조건의 공표 | 도매업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품목기타 매매거래 조건(매매거래와 관계되는 금전 수수에 관한 조건을 포함)을 공표할 것 |
| 5. 수탁 거부 금지 | 도매업자는 그 취급품목에 속하는 신선식료품 등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도매를 위한 판매 위탁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지 않을 것 |

1) 예약형 상대거래의 경우의 취급방법

-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 또는 매매참가인간의 사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확보한 물량을 거래하는 경우(예약형 상대거래)는 상대거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약형 상대거래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
 - (1) 예약형 상대거래에 관한 계약이 직전에 체결되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승인신청은 해당거래의 전일까지 접수하거나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개설자는 사후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배려한다.
 - (2) 예약형 상대거래에 관한 개설자의 승인에 대해서는 법제39조 제2호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입찰,상대의 어떠한 매매거래 방법이라도 인정되는 물품을 예약형 상대거래에 의해 행하는 경우는 승인신청 등의 수속이 필요하지 않는다.
 - (3) 예약형 상대거래에 관한 수량 또는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활한 거래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운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 개설자는 미리 일정정도의 변경폭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예약형 상대거래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의 변경 신청을 생략한다.
- 상기의 경우 판매원표에 해당 상대거래에 관한 수량 또는 가격의 변경에 대해서 명기하도록 도매업자를 지도한다.
- 상기의 변경폭의 기준은 물품마다 그 시장에 있어서 해당물품에 관한 과거의 가격 또는 수량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범위를 설정한다.

2) 경매 개시 시각 이전의 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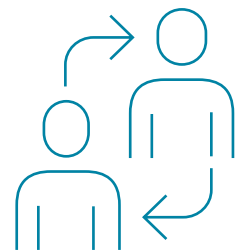
- 긴급하게 출항하는 선박에 신선식품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 그 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도매개시시각 이전에 도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 상대거래로 변경할 수 있음
- 그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 개설자는 경매 개시시각전의 도매를 엄중하게 취급하기 위해 운영요령정해 승인 등의 절차를 행한다. 이러한 운영요령은 각 시장의 경매개시 시각이전의 도매상황을 파악하여 특히 그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및 매매참가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해당 시장에 있어서 취급물품의 부류마다 이하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한다.
- 도매업자는 경매개시 시각이전의 도매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전일의 미리 정한 시간까지 제출한다.
- 도매업자는 경매 개시시각 이전의 도매를 행하는 물품과 경매판매물품을 구분하여 경매 개시시각 이전의 도매를 행하는 물품에, 해당물품의 도매 상대방인 중도매업자 또는 매매참가인의 명칭 또는 특정기호 및 이러한 자에 대한 판매수량을 기재한 종이판을 첨부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도매업자는 경매 개시시각 이전의 도매를 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된 중도매업자 또는 매매참가인에 대해서만 명시된 수량의 범위에서 경매개시시각 이전에 도매를 행한다.

일본 상대거래 운영 요령(2019년 기준) (2/2)

- 도매업자는 당일 경매거래 개시 전에 경매 개시 시각이전의 도매를 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각 매장에 해당 물품의 수량 및 경매 상한 수량을 명시한다.
- 도매업자는 경매개시 시각이전의 도매에 관한 물품의 판매원표에는 도매 개시 시각 이전의 도매라는 취지를 명기한다.
- 개설자는 도매업자가 상기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후 경매의 경매 개시 시각 이전의 동 승인 물량을 삭감하는 등 그 거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거래 가능

- 재해발생, 입하지연, 도매의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
- 경매 또는 입찰방법의 의한 도매에 의하여 발생한 잔품을 도매하는 경우
- 도매업자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간에 미리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확보한 신선농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 긴급하게 출항하는 선박에 신선농산물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쩔수 없는 이유로 통상의 도매개시시각 이전에 도매를 하는 경우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자에 대하여 도매를 하는 경우



거래의 특례

관련 조항 | 제34조(거래의 특례)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제도의 내용

- 도매시장법인은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음

2) 시행방안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은 농수산물에 있는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거래특례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개설자에게 제출
 -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 판매한 사유

3) 거래특례(제3자 판매) 허용 필요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탁거부금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반면, 출하량은 기복이 크고 사전예측이 어려워 수급상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도매시장법인에 따라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간 가격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출하자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우려
- 그리고 중도매인이 특정법인의 경매에 불참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에게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폭락을 방지

Chapter 18

수탁의 거부 가능 사유

 관련 조항 |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1.]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 거부 금지

- 수탁의 거부금지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 거래 교섭력이 부족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수탁거부 금지 규정에 따라 하품(下品), 비규격품, 유해농산물 유입으로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 발생

-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산지 규격화 선도 기능 미흡
- 도매시장의 환경규제 강화로 비규격 농산물 출하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증가

(3) 수탁거부 가능 사유

-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출하대금결제

관련 조항 |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개정 2012.2.22.>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1) 대금결제원칙: 정산창구 이용

- 예외: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직접결제 가능

(2)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시행규칙 제36조)

- ①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송품장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 ④ 정산창구는 출하자에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3) 출하·판매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4) 정산창구의 기본 개념

- 정산창구의 개념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 정산창구 방식별 개념
 - < 정산회사방식 >
 -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
 - 출자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로 하는 방식
 - < 정산조합방식 >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직접 지는 방식임
 - < 금융기관(농·수협 등)이용 방식 >
 -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 < 개설자 관리방식 >
 -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공사 체제에 적합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방식과 유사하나 두가지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5) 정산창구의 유형

- 정산창구의 유형은 크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산회사방식,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방식, 개인지불방식 등이 있으며,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방식은 관리주체에 따라 정산조합방식, 금융기관 이용방식, 개설자 관리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정산창구는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 상기의 유형중에서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공사) 관리방식 등을 검토

(6) 송품장, 판매원표 등 농산물 거래서식을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구축 및 표준규격 출하 유도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규격화 촉진의 핵심인 표준송품장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7) 표준송품장의 사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표준송품장을 제출받은 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8) 판매원표 관리(시행규칙 제37조의3)

-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 품명, 등급, 수량, 경락가격, 매수인, 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함
-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함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9) 표준정산서(시행규칙 제38조)에 포함될 사항

-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명
- 출하자명
- 출하자 주소
- 거래형태(매수·위탁·중개) 및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 판매 명세(품목·품종·등급별 수량·단가 및 거래 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 총액 및 매수인
- 공제 명세(위탁수수료·운임선급금·하역비·선별비·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 정산금액
- 송금 명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Chapter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관련 조항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③ 삭제<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1)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 할 수 없음

- 도매시장 사용료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
 - 시설사용료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점포 등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
 - 위탁수수료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
- ※ 위탁수수료란? : 위탁자(출하자)가 위탁의뢰한 농산물을 수탁자(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가 자기책임하에 판매, 대금정산을 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출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 중개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
 - ※ 중개수수료란?: 매수자 또는 판매자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자가 중개를 시키고 그 용역의 대가로 매수자와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 정산수수료: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 조직에 납부

(2)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개설자가 정하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만,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각각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 기준으로는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

(3)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징수는 개설자가 정하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음

- 징수대상시설: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의 부수시설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 시설사용료: 연간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함
 -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4)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5)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6)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 이내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7) 정산수수료 다음 최고한도내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정률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 원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수수료 현황]

| 시 도 | 시장명 | 법인명 | 수수료율 | | | | | | 수수료금액(백만 원) | | | | |
|--------------|--------------|--------------|-----------|-------|----------|-------|-----------|-----------|-------------|-----------|-----------|-----------|-----|
| | | | 위탁 수수료 | 출하장려금 | | | 판매 장려금 | 시장 사용료 | 위탁 수수료 | 출하 장려금 | 판매 장려금 | 시장 사용료 | |
| | | | | 일반출하 | 계통출하 | 우수출하 | | | | | | | |
| 계(89개소) | | | - | - | - | - | - | - | 661,037 | 44,279 | 108,406 | 58,300 | |
| 서울 | 서울가락 농수산물 | 서울청과(주) | 4.56% | 0.45% | 0.45% | 0.45% | 0.60% | 0.55% | 39,371 | 3,780 | 4,788 | 4,788 | |
| | | (주)중앙청과 | 4.61% | 0.45% | 0.45% | 0.50% | 0.5~0.6% | 0.55% | 39,187 | 3,705 | 4,813 | 4,606 | |
| | | 동화청과(주) | 4.68% | 0.45% | 0.45% | 0.45% | 0.60% | 0.55% | 39,120 | 3,578 | 5,007 | 4,412 | |
| | | 한국청과(주) | 4.78% | 0.45% | 0.45% | 0.50% | 0.60% | 0.55% | 34,770 | 3,124 | 3,990 | 4,001 | |
| | | 대야청과(주) | 5.87% | 0.45% | 0.45% | 3.00% | 0.70% | 0.55% | 19,933 | 1,553 | 3,121 | 1,881 | |
| | 서울강서 농수산물 | 농협가락(공) | 4.60% | 0.40% | 0.45% | - | 0.90% | 0.59% | 24,166 | 2,248 | 4,730 | 3,121 | |
| | | 서부청과(주) | 6.74% | 0.45% | 0.45% | 0.45% | 0.70% | 0.49% | 11,273 | 577 | 775 | 825 | |
| | | 강서청과(주) | 6.76% | 6.50% | 6.50% | 6.50% | 7.10% | 0.49% | 4,182 | 271 | 295 | 489 | |
| | 부산 | 부산암골 농수산물 | 강서농협(공) | 6.40% | 0.80% | 1.00% | - | 1.70% | 0.50% | 12,561 | 907 | 1,960 | 898 |
| | | | 부산청과(주) | 6.00% | 0.50% | 0.50% | 1~2.5% | 0.3~2.7% | 0.50% | 7,219 | 404 | 1,307 | 667 |
| 항도청과(주) | | | 6.00% | - | 0.50% | 1.50% | 1.50% | 0.50% | 7,562 | 358 | 1,766 | 637 | |
| 부산반여 농수산물 | | 농협부산(공) | 5.84% | 0.45% | 0.48% | - | 1.28% | 0.46% | 11,607 | 637 | 2,545 | 912 | |
| | | 동부청과(주) | 5.21% | 0.50% | 0.50% | 0.50% | 1.70% | 0.50% | 7,182 | 282 | 1,435 | 698 | |
| | | 부산중앙청과(주) | 5.80% | 0.40% | 0.40% | 0.50% | 1.00% | 0.52% | 8,051 | 306 | 1,503 | 735 | |
| 대구 | 대구북부 농수산물 | 농협반여(공) | 5.61% | - | 0.30% | 0.30% | 1.22% | 0.45% | 9,863 | 531 | 2,149 | 799 | |
| | | 대구중앙청과(주) | 5.86% | 0.70% | 0.70% | 0.70% | 1.20% | 0.50% | 12,774 | 999 | 2,480 | 1,021 | |
| | | 효성청과(주) | 5.96% | 0.50% | 0.50% | 1.00% | 1.50% | 0.50% | 12,780 | 758 | 3,230 | 1,054 | |
| | | 대양청과(주) | 5.99% | - | 0.50% | 2.00% | 1.50% | 0.50% | 13,180 | 845 | 3,301 | 931 | |
| | | 농협북대구(공) | 5.60% | 0.49% | 0.53% | 1.00% | 1.41% | 0.56% | 7,701 | 489 | 2,116 | 777 | |
| 인천 | 대구경북원협(공) | 대구경북원협(공) | 5.96% | 0.70% | 0.70% | 1.00% | 0.7~3.1% | 0.50% | 2,496 | 165 | 632 | 278 | |
| | | 인천농수산물(주) | 5.90% | 0.70% | 0.70% | 1.00% | 0.7~0.8% | 0.01% | 5,539 | 502 | 478 | 468 | |
| | | (주)대인농산 | 6.01% | 0.70% | 0.70% | 0.70% | 0.7~0.8% | 0.50% | 4,587 | 415 | 545 | 377 | |
| | 인천남촌 농수산물 | 덕풍청과(주) | 6.11% | 0.70% | 0.70% | 1.00% | 0.80% | 0.3~0.5% | 5,604 | 513 | 604 | 458 | |
| | | 인천원협남촌(공) | 6.01% | 0.70% | 0.70% | - | 0.5~1.5% | 0.50% | 5,343 | 404 | 674 | 446 | |
| | 인천삼산 농수산물 | (주)경인농산 | 6.13% | 0.70% | 0.70% | 0.70% | 0.80% | 0.50% | 5,445 | 446 | 580 | 400 | |
| | | (주)부평농산 | 6.29% | 0.70% | 0.70% | 0.70% | 0.80% | 0.50% | 5,962 | 428 | 729 | 471 | |
| 인천원협삼산(공) | 6.07% | - | 0.70% | - | 0.80% | 0.50% | 6,211 | 456 | 765 | 502 | | | |
| 광주 | 광주각화 농수산물 | 광주청과(주) | 5.99% | 0.40% | 0.40% | 0.40% | 0.75~1% | 0.50% | 7,045 | 337 | 1,132 | 682 | |
| | | 광주중앙청과(주) | 5.91% | - | 0.40% | 2.00% | 1.00% | 0.50% | 8,677 | 439 | 1,344 | 675 | |
| | | 광주원협(공) | 6.00% | 0.70% | 0.25% | 0.70% | 0.83% | 0.50% | 10,262 | 315 | 428 | 849 | |
| | 광주서부 농수산물 | (주)호남청과 | 6.91% | 0.45% | 0.45% | 0.45% | 1.00% | 0.50% | 12,054 | 421 | 2,160 | 858 | |
| | | 두레청과(주) | 6.92% | 0.10% | 0.45% | 0.50% | 1.40% | 0.50% | 11,781 | 346 | 2,378 | 850 | |
| | | 농협광주(공) | 6.49% | - | 0.1~0.3% | - | 0~2% | 0.50% | 10,939 | 427 | 2,370 | 834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정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부
록

| 시도 | 시장명 | 법인명 | 수수료율 | | | | | | 수수료금액(백만 원) | | | |
|----|--------------|-------------|-----------|--------|----------|----------|-----------|-----------|-------------|-----------|-----------|-----------|
| | | | 위탁 수수료 | 출하장려금 | | | 판매 장려금 | 시장 사용료 | 위탁 수수료 | 출하 장려금 | 판매 장려금 | 시장 사용료 |
| | | | | 일반출하 | 계통출하 | 우수출하 | | | | | | |
| 대전 | 대전오정 농수산물 | 대전청과(주) | 5.83% | - | 0.70% | 2.00% | 0.80% | 0.50% | 9,343 | 636 | 1,246 | 800 |
| | 대전노은 농수산물 | 농협대전(공) | 5.75% | - | 0.87% | 0.26% | 1.29% | 0.48% | 15,921 | 1,406 | 3,571 | 1,335 |
| | 대전원협노은(공) | 대전원협노은(공) | 6.17% | - | 0.70% | 1.20% | 0.3~1.6% | 0.01% | 9,320 | 649 | 1,769 | 802 |
| 울산 | 울산 농수산물 | 울산중앙청과시장(주) | 5.70% | 0.50% | 0.50% | 0.50% | 1.00% | 0.50% | 7,536 | 354 | 1,333 | 160 |
| | 울산원협(공) | 울산원협(공) | 6.98% | - | 0.5~0.7% | 0.5~0.7% | 0.4~0.7% | 0.63% | 4,056 | 99 | 273 | 363 |
| | 수원 농수산물 | 수원청과물(주) | 6.71% | - | 0.5~0.7% | - | 1.10% | 0.40% | 5,505 | 279 | 751 | 358 |
| 경기 | 안양 농수산물 | 안양농산물(주) | 6.48% | - | 0.80% | 1.00% | 1.0~1.5% | 0.01% | 3,891 | 390 | 783 | 269 |
| | 안양원협(공) | 안양원협(공) | 6.31% | 0.70% | 0.74% | 0.78% | 1.12% | 0.50% | 3,463 | 276 | 621 | 254 |
| | 안산 농수산물 | 안산농산물(주) | 6.38% | 0.80% | 0.70% | - | 1.32% | 0.50% | 2,615 | 200 | 499 | 199 |
| 강원 | 춘천 농수산물 | 춘천중앙청과(주) | 6.60% | - | 0.29% | - | 0.72% | 0.55% | 3,329 | 279 | 363 | 279 |
| | 춘천원협(공) | 춘천원협(공) | 6.72% | 0.52% | 0.52% | 0.52% | 0.93% | 0.48% | 4,376 | 342 | 604 | 313 |
| | 원주 농산물 | 원주원협(공) | 6.03% | 0.50% | 0.75% | 0.75% | 0.90% | 0.48% | 3,422 | 314 | 809 | 293 |
| 충북 | 충주 농수산물 | 충주중앙청과(주) | 6.45% | 0.45% | 0.45% | 0.45% | 1.00% | 0.48% | 4,995 | 205 | 726 | 370 |
| | 충주원협(공) | 충주원협(공) | 6.59% | 0.75% | 0.75% | 1.00% | 0.85% | 0.50% | 18,188 | 1,604 | 2,077 | 1,352 |
| | 충주원협충주(공) | 충주원협충주(공) | 6.47% | 0.75% | 0.75% | 1~1.5% | 0.5~1.2% | 0.05% | 13,614 | 1,111 | 1,558 | 1,028 |
| 충남 | 천안 농수산물 | 천안청과(주) | 6.71% | 0.50% | 0.60% | - | 1.10% | 0.50% | 14,757 | 1,029 | 2,371 | 1,009 |
| | 천안농협(공) | 천안농협(공) | 5.08% | 7.00% | 6.00% | 5.09% | 1.00% | 0.50% | 441 | - | 6 | 58 |
| | 전주 농수산물 | 전주청과물(주) | 4.78% | - | 1.00% | 1.00% | 1.00% | 0.50% | 636 | 13 | 18 | 66 |
| 전북 | 익산 농수산물 | 익산원협(공) | 5.65% | 0.5~1% | 0.5~1% | 1.00% | 1.00% | 0.40% | 1,710 | 70 | 219 | 121 |
| | 익산원협(공) | 익산원협(공) | 5.78% | - | 0.50% | - | 0.40% | 0.40% | 1,311 | 34 | 108 | 90 |
| | 익산원협(공) | 익산원협(공) | 4.42% | 0.60% | 0.60% | 0.60% | 0.3~1.4% | - | 1,821 | 79 | 99 | - |
| 전남 | 순천 농산물 | 순천남도청과(주) | 6.43% | - | 0.50% | 0.50% | 1.80% | 0.05% | 4,812 | 225 | 1,332 | 436 |
| | 정읍 농산물 | 정읍원협(공) | 6.25% | - | 0.50% | - | 1.80% | 0.50% | 5,148 | 210 | 1,440 | 382 |
| | 정읍원협(공) | 정읍원협(공) | 6.50% | 0.50% | 0.50% | 0.80% | 1.10% | 0.40% | 1,241 | 2 | 123 | 76 |
| 전남 | 순천 농산물 | 순천남도청과(주) | 6.38% | 0.50% | 0.50% | 0.50% | 1.50% | 0.40% | 2,486 | 96 | 585 | 156 |
| | 정읍 농산물 | 정읍원협(공) | 6.42% | 0.80% | 0.80% | 0.80% | 1.40% | 0.30% | 5,510 | 283 | 1,107 | 347 |
| | 정읍원협(공) | 정읍원협(공) | 6.50% | 0.50% | 0.70% | - | 1.24% | 0.40% | 2,711 | 159 | 517 | 163 |
| 전남 | 순천 농산물 | 순천남도청과(주) | 6.97% | - | 0.50% | - | 1.00% | 0.50% | 4,091 | 177 | 538 | 334 |
| | 정읍 농산물 | 정읍원협(공) | 6.54% | - | - | - | 1.00% | 0.50% | 4,022 | - | 668 | 328 |
| | 정읍원협(공) | 정읍원협(공) | 6.71% | 0.50% | 0.50% | 1.00% | 1.09% | 11.50% | 922 | 17 | 150 | 106 |
| 전남 | 순천 농산물 | 순천남도청과(주) | 6.39% | - | 0.50% | 1.50% | 1.14% | 0.50% | 4,919 | 235 | 790 | 292 |
| | 정읍 농산물 | 정읍원협(공) | 7.00% | - | - | 1.00% | 1.00% | 0.01% | 1,265 | 12 | 170 | 33 |
| | 정읍원협(공) | 정읍원협(공) | 6.56% | - | 0.50% | - | 1.00% | 0.01% | 480 | 7 | 63 | 29 |
| 전남 | 순천 농산물 | 순천남도청과(주) | 7.00% | 0.50% | 0.50% | 0.60% | 1.27% | 0.45% | 3,690 | 304 | 670 | 235 |
| | 순천원협(공) | 순천원협(공) | 6.65% | 0.50% | 0.50% | 0.50% | 1.40% | 0.50% | 1,455 | 75 | 277 | 107 |
| | 순천원협(공) | 순천원협(공) | 6.95% | 0.70% | 0.70% | 0.50% | 1.20% | 0.45% | 4,584 | 218 | 681 | 270 |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법인별 품목마다 실제 위탁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음)

Chapter 21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조항 |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7.21., 2014.3.24.>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개정 2018.12.31.>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1) 농안법상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전무

- 2000년 법 개정시 “개설자는 유해 농산물에 대한 조치가능” 규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중복 규정 사유로 삭제

(2) 일부 도매시장에서 개설자가 자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 미흡

- 출하자 등록 관리 부실 및 수탁거부 금지 규정에 위반
- 위반자의 차·가명 출하시 제재 불가

(3)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출하 제한을 받은 자도 같음



관련 조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검사)

제61조(안전성조사)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여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농산물
 - 가.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 나. 유통·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 가.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4)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농안법 시행규칙 별표1)

-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 곡류·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 1kg 이상 2kg 이하
 - 채소류 및 과일류 자연산물 : 2kg 이상 5kg 이하
 - 묽음단위 농산물의 한 묽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묽음씩 수거하고, 한 묽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묽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음. 다만, 묽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묽음단위 전체를 수거할 수 있음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 종류 | 수거량 |
|---------------------------|----------------|
| 초대형어류(2kg 이상/마리) | 1마리 또는 2kg 내외 |
| 대형어류(1kg 이상~2kg 미만/마리) | 2마리 또는 2kg 내외 |
| 중형어류(500g 이상~1kg 미만/마리) | 3마리 또는 2kg 내외 |
| 준중형어류(200g 이상~500g 미만/마리) | 5마리 또는 2kg 내외 |
| 소형어류(200g 미만/마리) | 10마리 또는 2kg 내외 |
| 패류 | 1kg 이상 2kg 이하 |
| 그 밖의 수산물 | 1kg 이상 2kg 이하 |

-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 시기
 -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 방법
 -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함
 -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당 무게,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거지점(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함
 - 시료수거 대상 농수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새,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음
 -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5) 안전성 검사 방법

-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함

(6) 안전성검사 결과 미달품 출하자 출하제한

-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함



하역업무

관련 조항 | 제40조(하역업무)

제40조(하역업무)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1) 하역의 개념

- 출하자가 농산물을 도매시장내에 반입하면 “상품하차 ⇒ 선별 ⇒ 진열 ⇒ 경매 ⇒ 이적(중도매인 점포까지) ⇒ 상차(반출차량)” 등의 과정이 이루어짐
 - 이때 경매를 제외한 부분은 넓은 의미의 하역이라 하며
 - 하차, 선별, 진열 등 경매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좁은 의미의 하역 또는 경매를 위한 작업이라 함

2) 하역과정에서의 하역비 부담 주체

- 하차, 선별, 진열비: 출하자
- 이적, 상차비: 중도매인

3) 표준하역비 도입

- 개념: 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 법적 근거에 의한 표준하역비 개념의 핵심은 '규격출하품'이며,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하역비는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 출하품에만 적용이 되는 하역비를 말함¹²⁾
- 비용부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 시행시기: 2002년 1월 1일
- 도입취지
 - 하역비 부담주체가 불특정다수(출하자)로서 하역비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없었는데 표준 하역비 도입으로 하역기계화 촉진
 - 하역비를 점진적으로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운영주체가 부담하게 하여 하역체계 개선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 하역자를 도매시장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하여 하역기계화 촉진 유도
- ※ 참고¹³⁾
- 규격출하품 중심의 운용방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표준하역비 적용대상의 규격 출하품의 형태와 기준을 결정한 후, 규격 출하품 기준에 일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하역비를 전부 부담하고, 비규격 출하품의 경우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방식임
- 표준하역비 중심 운용방안: 모든 출하농산물에 대해 규격출하품 형태와 각 형태별 표준하역비를 개설자가 정하고, 모든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고, 비규격으로 출하한 경우 해당 품목의 표준하역비를 초과하는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방식임

4) 하역업무 개선 등 조치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5) 하역용역계약 근거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2) KREI(2000. 12.),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운용방안 연구

13) KREI(2000. 12.), 도매시장 표준하역비제도 운용방안 연구

[공영도매시장별 하역인력 및 하역비 현황('21년, 청과)]

단위: 명, 백만 원

| 시장명 | 계 | | 노동조합 | | 용역 | | 법인직원 | | 자체 하역반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2,985 | 105,115 | 1,720 | 61,175 | 701 | 22,793 | 18 | 122 | 546 | 21,025 |
| 서울가락 | 1,060 | 32,421 | 1,046 | 31,546 | 14 | 875 | - | - | - | - |
| 서울강서 | 279 | 8,758 | - | - | 259 | 8,530 | 16 | 122 | 4 | 106 |
| 부산엄궁 | 81 | 4,688 | 80 | 4,688 | - | - | - | - | 1 | - |
| 부산반여 | 86 | 4,609 | - | - | 30 | 1,782 | - | - | 56 | 2,827 |
| 대구북부 | 152 | 6,572 | - | - | - | - | - | - | 152 | 6,572 |
| 인천남촌 | 67 | 2,984 | 51 | 2,260 | - | - | - | - | 16 | 724 |
| 인천삼산 | 57 | 2,501 | 36 | 1,602 | - | - | - | - | 21 | 899 |
| 광주각화 | 89 | 3,539 | 89 | 3,539 | - | - | - | - | - | - |
| 광주서부 | 81 | 4,830 | 30 | 1,574 | 51 | 3,256 | - | - | - | - |
| 대전오정 | 73 | 3,605 | 73 | 3,605 | - | - | - | - | - | - |
| 대전노은 | 48 | 2,239 | 33 | 1,297 | 15 | 942 | - | - | - | - |
| 울산 | 37 | 1,599 | - | - | - | - | - | - | 37 | 1,599 |
| 수원 | 40 | 1,690 | 40 | 1,690 | - | - | - | - | - | - |
| 안양 | 36 | 1,442 | - | - | 36 | 1,442 | - | - | - | - |
| 안산 | 45 | 1,473 | 34 | 966 | 11 | 507 | - | - | - | - |
| 구리 | 224 | 8,511 | 151 | 6,206 | - | - | 2 | - | 71 | 2,305 |
| 춘천 | 3 | 51 | - | - | - | - | - | - | 3 | 51 |
| 원주 | 14 | 339 | - | - | - | - | - | - | 14 | 339 |
| 강릉 | 11 | 172 | - | - | - | - | - | - | 11 | 172 |
| 청주 | 48 | 1,515 | - | - | - | - | - | - | 48 | 1,515 |
| 충주 | 20 | 509 | - | - | - | - | - | - | 20 | 509 |
| 천안 | 29 | 1,160 | - | - | - | - | - | - | 29 | 1,160 |
| 전주 | 31 | 1,195 | - | - | 15 | 581 | - | - | 16 | 614 |
| 익산 | 29 | 803 | - | - | 25 | 685 | - | - | 4 | 118 |
| 정읍 | 8 | 212 | - | - | 6 | 156 | - | - | 2 | 56 |
| 순천 | 27 | 1,235 | 3 | 126 | 12 | 492 | - | - | 12 | 617 |
| 포항 | 19 | 598 | - | - | - | - | - | - | 19 | 598 |
| 안동 | 192 | 2,525 | - | - | 192 | 2,525 | - | - | - | - |
| 구미 | 10 | 244 | - | - | - | - | - | - | 10 | 244 |
| 창원팔용 | 27 | 1,095 | 27 | 1,095 | - | - | - | - | - | - |
| 창원내서 | 27 | 982 | 27 | 982 | - | - | - | - | - | - |
| 진주 | 35 | 1,020 | - | - | 35 | 1,020 | - | - | - | - |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조항 |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삭제<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1) 도매시장규모 및 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지방도매시장의 운영난 심화

- 지방도매시장의 소량 구색 품목 부족으로 도매시장 거래 왜곡 현상 발생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영세화 심화로 지속적인 취급물량 감소

(2) 중앙·지방도매시장에 대한 이원적 접근의 필요성

- 지방도매시장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부여 필요
- 지방도매시장의 도매 업무의 선별·포장·직판 등 기능 복합화로 시장 활성화

(3) 운영특례 가능 조항

- 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사유를 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음
- 법 제31조 제2항 단서외의 사유를 정하는 경우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매시장 등의 평가

관련 조항 |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7조(평가의 실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3. 24.>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8. 12. 3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3. 24.>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1.]

1) 평가목적

- 도매시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정착과 도매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
-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도매시장 운영개선 정책에 반영

2) 평가대상

- (중앙평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 (개설자 평가) 중도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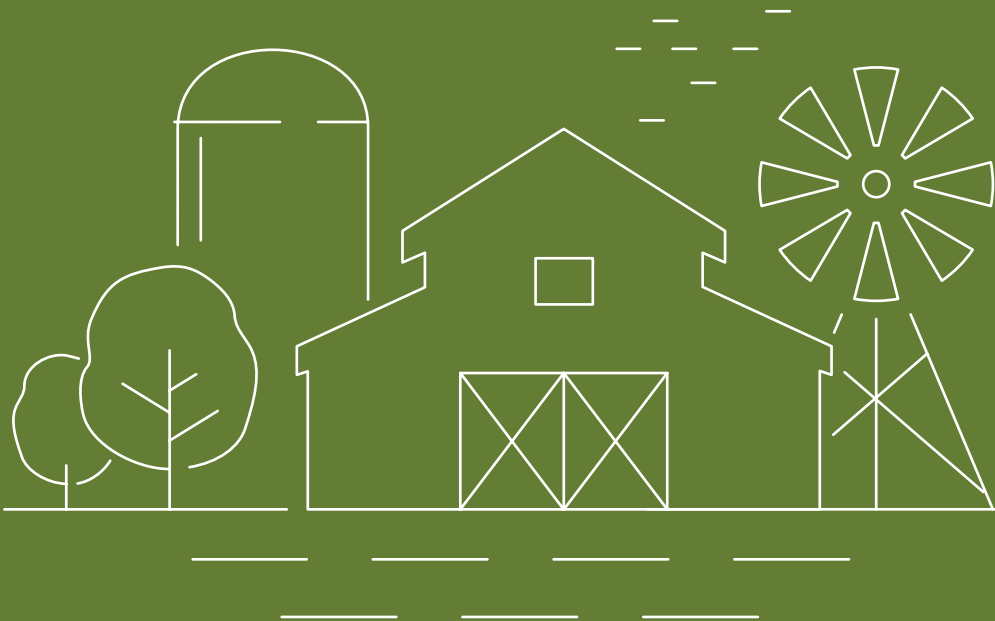
3)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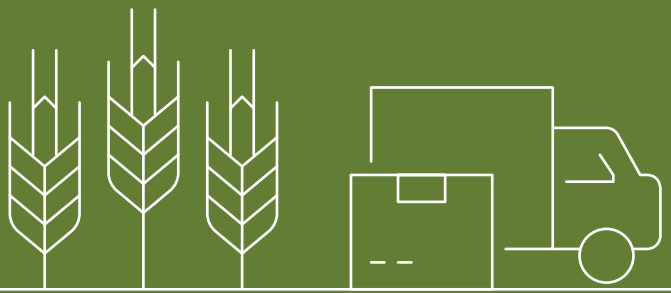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개설자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 *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자체평가 실시
- 도매시장법인등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Part 4.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판장의 개설·운영

관련 조항 |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43조(공판장의 개설)

-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12. 31.>
-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12. 31.>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1.]

1) 농수산물공판장 정의

(1)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시행령 제3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농협공판장 현황

- '21년 말 산지공판장은 46개소가 개장·운영 중에 있으며, '02년부터 정비·용도전환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경매식집하장의 공판장 전환으로 증가
 - 공판장 수:('02) 58개소 → ('04) 49 → ('06) 47 → ('07) 45 → ('08) 44 → ('12) 47→('21) 46

[농협공판장 현황]

단위:천톤, 억원

| 구분 | 2005(49개소) | | 2008(44개소) | | 2010 | | 2011 | | 2021(46개소)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산지공판장 | 448 | 4,635 | 410 | 5,062 | 302 | 5,728 | 319 | 6,517 | 327 | 9,652 |

※ 화훼공판장 4개소 제외

3)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

-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설기준
 - 공판장의 시설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 부령으로 정함(법 제67조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집하장중 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법 제50조 제3항)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삭제<2019.7.1.>
-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③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4) 농수산물공판장의 거래관계자

(1)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음(법 제44조)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래관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에 관한 규정 준용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되, 등록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 등록규정을 준용
- 공판장 경매사는 공판장개설자가 임면하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경매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다만, 도매시장 안에 입주한 공판장의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에서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46조)

5) 농수산물공판장의 운영

(1)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5조)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 매매방법
-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 제34조: 거래의 특례
-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40조: 하역업무
- 제41조 제1항: 출하자에 대한 즉시대금결제
-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2)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45조 단서)

6) 도매시장공판장의 관리운영

• 도매시장공판장은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을 말함(법 제26조)

-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도 도매시장공판장 운영가능(법 제46조 제5항)

•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1항)

- 제30조 제2항: 출하 예약자에 대한 우대조치
- 제31조 제1항: 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 매매방법
-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 제34조: 거래의 특례
-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 전자거래, 견본거래, 겸영사업
- 제35조의2: 물량, 가격 등의 공시
-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 제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40조: 하역업무
-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제41조의2: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2항)
 -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 중도매인의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중도매인 간 거래
 -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제75조: 교육훈련 등
-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3항)
 -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4항)
 -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7) 공판장의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제7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공판장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81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관련 조항 |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2.>
-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1.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3.21.>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3.21.>

[전문개정 2011.7.21.]

1) 민영도매시장의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함

2) 민영도매시장 제도 도입배경

- 도매시장개설을 민간에도 허용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부분 종합부류시장인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할 수 있음
 - 직접 운영할지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할지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선택 가능

3) 민영도매시장 현황

- 군산, 상주 청과물도매시장(2개소)

4)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설기준
 -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 부령으로 정함(법 제6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47조 제2항)
 - 개설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41조)
 - * 민영도매시장 업무규정
 - * 운영관리계획서
 - *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견서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
-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 위치의 적절성, 시설기준, 운영관리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5) 개설자의 직접 운영 형태

- 거래관계자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할 수 있음
 -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에 관한 규정 준용
 -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중도매인 자격요건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되, 등록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 등록규정을 준용
 -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부터 제6항: 산지유통인의 등록

-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면하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경매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법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 경매사 자격요건, 면직, 신고
 - 법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6) 운영 및 거래방법(법 제48조 제6항)

- 운영 및 거래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은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법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 법 제32조: 매매방법
 - 법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 법 제34조: 거래의 특례
 - 법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 법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법 제40조: 하역업무
 - 법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법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7)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운영체제(법 제48조 제5항)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되,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규정을 준용
 - 법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 자격요건, 부적격 임원의 해임, 지정절차
 - 법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 법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 법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법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법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8) 민영도매시장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제7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81조)

Chapter 03

산지유통제도

관련 조항 |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1)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집하장중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능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음

3)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4) 포전매매의 계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함
- 농산물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한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예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함
<참고>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서(별첨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음

포전매매시 생산자의 임의처분권

- '94.10 법 개정시 포전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포전거래시의 준수사항을 법제화 하였으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행이 일시에 바뀌지 않음
- 포전매매를 하고도 반출예정일 당시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상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인이 포전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생산자가 계약준수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다른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

Chapter 04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

 관련 조항 |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1.]

1)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 운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음

2) 유사도매시장 정비


- (1)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시설개선·이전 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유사도매시장 정비내용

- (1)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시·광역시
 - 국고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유사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와 지역 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과 대책을 시행하는 때의 대상자의 선발기준

Chapter 0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관련 조항 |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 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 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1) 시장의 정비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함
 -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입지조건, 시설현황
 -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이전 및 폐쇄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함

2)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대행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함

3) 도매시장법인 업무대행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이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기타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경우는 도매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방안이 필요하여 '94년부터 도입
- 도매시장법인에게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여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도매시장 질서확립 미흡 우려

4) 시행방법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경우, 그 법인에 대해 판매의 위탁신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
- 개설자는 도매업무를 대행시킬 도매시장법인이 없거나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게 대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스스로 또는 관리공사로 하여금 그 도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 개설자(관리공사 포함)의 직접적인 도매업무 대행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안법상의 지도를 강화하여 사태를 미연에 방지

5)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의 과징금 제도(법 제83조)

- 도매시장법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1) 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경로 다원화로 농어민이 출하선택 폭을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 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

- '94.5 농안법파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핵심과제로서 도매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 외곽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추진

[종합유통센터 지원기준]

| 유형 | '95~'98 신청지역 | '99~'02 | '03년 이후 |
|---|------------------------------|-------------------------------|-------------------------------|
| <공공유형> - 지자체 단독소유(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 부지구입비: 70% 용자 건설비: 70% 보조 |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 총사업비의 50% 국고보조, 50% 지방비 |
| <생산자단체유형> -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부지구입비: 70% 용자 건설비: 70% 보조 | 부지구입비 50% 용자 시설비 50% 보조 | 부지구입비: 50% 용자 시설비: 50% 보조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

관련 조항 |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25., 2013.3.23., 2014.3.24.>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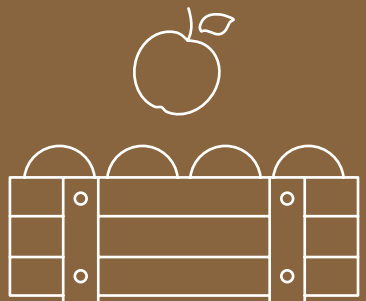
- 농수산물의 사이버상 직거래 구현으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의 사이버상 직거래 구현으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구조 개선]

| 구분 | B2B(기업간 거래) | 학교급식 | B2C(쇼핑몰) |
|------|------------------------------|-------------------------|------------------|
| 거래품목 | 양곡류, 청과류, 축산물, 수산물 등 | 학교급식 전품목 (약 400여 품목) | 친환경, 지역특산명품, 전통주 |
| 거래방식 | 정가매매, 특약·견적거래, 경매, 역경매, 전자입찰 | 전자입찰 | 오픈마켓 직거래 |

• 추진경과

- '09.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출범
- '09.7 B2C(친환경농산물 대상) 오픈 / '09.10.28 : B2B 오픈
- '09.12 농안법 개정(설립·운영 근거 및 주요사업 내용 명시)
- '10.8 학교급식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 시범거래 개시
- '11.6 단체급식전자조달시스템 지정정보처리장치 획득(행안부 / 7.1 시행)
- '12.12 소상공인 직거래시스템 오픈, 사이버거래 '1조 원' 달성
- '14.12 POS-Mall 시범거래 및 사이버거래 '2조 원' 달성
- '20.7 조직 확대 개편으로 농수산물거래소 신설
- '21.2 행안부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개정(플랫폼 이용범위 확대)
- '21.12 사이버거래 3조 1,467억 원 달성
- '22.5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국방부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제정



농안법 판례(대한민국 법원)

1

중도매인이 상장된 농수산물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 것인지 여부

가. 사건번호

대법원, 2006. 3. 10, 2004도6846, 수원지법, 2004. 9. 13, 2004노2003

나. 관련규정

법 제31조 제2항(수탁판매의 원칙)

-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의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한정시킨 조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제소

라. 쟁점 및 결론

- 농안법 제31조 제2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인지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마. 논거

-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정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의 유지가 저해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큼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형성을 위해서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을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역할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함

- 더구나 예외적으로 비상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중도매인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중도매인의 혜택과 제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안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된 것임

2

도매시장법인의 양벌 적용 관련

가. 사건번호

대법원, 2005. 6. 24, 2005도2651, 인천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3055

나. 관련규정

법 제2조(정의), 89조(양벌규정)

- **제2조(정의)**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매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도록 기소된 사건

라. 쟁점 및 결론

-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안법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마. 논거

-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별도의 사업자임
 -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 거래편의 및 외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법인으로 정하여 놓은 것일 뿐 다른 도매법인, 공판장과 거래할 수 있고 비상장거래도 가능함
 -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에게 담보제공 이외에 명의대여료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음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영업하며 세법상으로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매법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는 것에 반하여 중도매인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중도매인의 법인소속여부는 허가요건이 아님

가. 사건번호

2002헌바67, 2005.5.26

나. 관련규정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중도매업의 허가)

-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서울시가 이를 이유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자 중도매인이 서울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당해사건 계속 중 「농안법」 제25조 2항에 대하여 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당해사건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라. 쟁점 및 결론

- 「농안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농수산물에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도매인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직무는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공정을 위해서는 거래참가자들의 담합 등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고 거래의 실제 주체와 명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제한조항이 없을 경우 형의 집행기간 동안 명의대여가 있을 수 있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관련규정

법 제18조 제2항(현행법을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의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략)

나. 사건개요

- 도매시장법인이 타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겸합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농림부가 법제처에 질의

다. 쟁점 및 결론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겸합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

라. 논거

- 해당 법조항은 도매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에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려는 것
- 이러한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감안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동기 및 경영에의 개입여부와 주식의 분산상황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자산상태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가. 사건번호

청주지법 2006노353, 선고, 2007. 3. 21, 판결: 상고

나. 관련규정

법 제35조 1항(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 적법하게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판매원표와 낙찰명세서를 작성하고 도매법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매인에게 입금함

- 도매법인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라. 쟁점 및 결론

- 도매법인이 허위경매에 관련되었는지 및 중도매인의 법률부지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도매인이 산지수집한 것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도매인이 산지수집이 금지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형성에는 상관없다고 함
- 경매사의 행위가 처벌대상인 도매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 중도매인들과 도매법인 사이에 적법하게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판매가격을 정하는 판매원표와 낙찰명세서를 작성한 점, 도매법인의 대표가 위장경매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도매법인이 경매서류를 작성해주고 중도매인들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입금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중도매인들의 위장경매를 묵인하면서 위장경매에 대한 서류작성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라 함은, 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서 출하인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 즉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경매)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나
- 매매계약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지급이 계좌송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 판매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매수인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직접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도매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6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 여부

가. 사건번호

청주지법 85노180, 선고, 1985. 12. 20, 제1형사부판결: 상고

나. 관련규정

법 제37조 제1항(현행법률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건개요

- 피고인이 충주시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전남 여수 등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소매상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허가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 하여 형사기소됨

라. 쟁점 및 결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없음
- 「농안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되는 동 법률이나 동 시행령규칙에 정해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일응 참고한 후 피고인이 행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함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입찰 등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점포소유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에 들여와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볼 수 없음

7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에 대한 처분취소

가. 사건번호

대법원 98두8919, 선고, 1998. 8. 21, 판결, 서울고법 1998. 4. 17. 선고 97구38161 판결

나. 관련규정

법 제12조(현행법률 기준 제22조) (도매시장의 개설·운영), 제17조(현행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구리시가 구리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상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구리시의 요청에 따라 청량리시장의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도매법인이 구리시장에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고 기존 청량리 시장에서도 영업기반을 잃게 되자 서울시의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됨

라. 쟁점 및 결론

-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라 판결
- 새로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속 중에 도매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된다고 함

마. 논거

- 서울시가 청량리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 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였으나, 이러한 부제소특약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현재까지도 청량리시장에서 상당수의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상권에서 22년 간이나 영업하여 온 원고에게는 도매법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서울 동북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가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청량리시장에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8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에 있어서 주주 및 임원변경에 관한 질의(법제처 1988, 농림축산식품부)

가. 관련규정

법 제17조(현행 기준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63조(현행 기준 제82조) (허가취소 등)

-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2조 (허가취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나. 사건개요

- 지정도매인(도매법인)의 주주의 주식양도 및 임원(대표자)변경에 대하여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요하는 지의 여부를 농식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

다. 쟁점 및 결론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지정도매인(도매시장법인)의 주주의 주식양도 및 임원(대표자)변경에 대하여 동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요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

라. 논거

- 주식의 양도나 임원변경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의 규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될 수 없음
- 「농안법」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은 자기자금 및 임원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가 되도록 하고(제17조) 있는 외에 지정도매인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영업정지나 지정승인취소(법 제6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도매인의 주주나 임원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9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가. 사건번호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서울고법 2001.6.27. 선고 2000누16465 판결

나. 관련규정

법 제16조(현행 기준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제37조(현행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건개요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매인이 19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 서울시에서 허가취소를 하자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중도매인이 유지하여야 할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거래실적이 3개월 연속 이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유효라 판결
-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원고가 거래를 재개한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정

마. 논거

- 「농안법」이 중도매인에게 거래실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엄격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농안법의 취지와 더불어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중도매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중도매인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농안법」 제37조 등의 규정은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함으로써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농안법」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방해행위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거래실적 미달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농안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허가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은 「농안법」 제3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그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 한 것으로서 위임근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도 적법함
- 서울시가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면서 IMF로 인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의 처분을, 그 외의 3~6개월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정해 놓았던 것인데 위반중도매인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우려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 할 수는 없음

10

손해배상

가. 사건번호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3. 선고 90나43904 판결

나. 관련규정

법 제33조(현행 기준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 사건개요

- 원고 중도매인은 공판장에서 새우젓을 경락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이 중 일부에서 석유냄새가 나서 반품 받아 이를 다시 공판장에 반품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라. 쟁점 및 결론

- 경매물의 하자를 인수 당시 발견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부인함

마. 논거

- 「농안법」 제33조에서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인은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공판사업규정에서 위탁물의 경락 후 매수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수를 거부코자 할 때에는 경매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산물매매에 있어서는 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인 수산물을 수령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매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경매당일 또는 직후에 하자를 식별하여 현장에서 인수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아 경매 후 여러 날이 경과한 후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즉시이의신청규정을 위배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상법」 제69조 제1항의 숨은 하자규정이 6개월 내에 발견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농안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므로 상법은 적용되지 않음

11

업무정지 처분 취소

가. 사건번호

99두16893, 행정법원, 2000. 4. 28

나. 관련규정

법 제28조 제2항(현행 기준 제31조 제2항)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사건개요

- 원고가 중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상장경매 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거래하다가 적발되어 개설자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직접 위탁받아 거래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고 패류가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거

- 가락동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을 위탁거래하는 일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발제재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농수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농안법에 따라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로 지정된 후, 중도매인이 개설자로부터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패류의 다품종, 소량, 부패용이 등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패류를 위탁거래 한 것이 용인될 수는 없음

12

농수산물 중도매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가. 사건번호

98두20567, 행정법원, 1999.6.30

나. 관련규정

법 제37조 제1항(헌행법률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제63조 제3항(헌행 기준 제82조 제5항) (허가 취소 등)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2조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청구인이 30일 이상 무단휴업하고,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한 이유로 개설자가 중도매인 허가취소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무단임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
- 당해처분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농안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며 처분 또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조례가 유효하며 처분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거

- 청구인이 30일 이상 중도매업의 무단휴업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1997.10. - 1998.2. 기간 중 청구인의 중도매인 시설을 대여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이 명백함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참고판례(중도매업허가처분취소 98두20567)

원고가 30일 이상 무단휴업하고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한 행위는 「농안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농안법」 제37조 제1항,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례 제4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2)의 중도매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위규사항 제1호는 「농안법」 제37조 제1항에 법적위임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적법함

13 유사도매시장상인 벌칙적용에 관한 업무 질의

가. 사건번호

농림축산식품부, 1993, 민원인

나. 관련규정

법 제65조 제2호(현행법률 기준 제86조 제1호) (벌칙)

-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다. 사건개요

- 서울시, 영등포구, 농림축산식품부, 내무부 등에 영등포 소재 시장의 청과물 위탁상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되어 업무협의 형식으로 질의함

라. 질의요지

- 「농안법」 제65조 제2호에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구역 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농안법」 제65조 제2호에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시장을 형성, 개설한 자에 국한되며 개설자가 없이 상인 개개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통칭 시장에서 점포와 상호를 가지고 청과물 위탁거래 행위를 하는 상인 개개인은 적용처벌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한 자를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고 회신한 내용은 무허가시장 내의 청과물상인도 처벌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상기 해석이 맞는지 여부

마. 회답

- “농수산물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형성하여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여 상인 개개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개별점포와 상호를 가지고 청과물 위탁거래행위를 하는 상인 개개인은 적용 처벌되지 않음
- 다만 「농안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거래제한고시를 한 경우에는 고시한 품목을 고시된 구역 안에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매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농안법」 제65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함

14

도매시장 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

가. 사건번호

대법원 85누243, 선고, 1986. 2. 1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3구734 판결

나. 관련규정

법 제12조 제3항(현행 기준 제17조 제6항) (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56조(현행 기준 제65조)

-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⑥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사건개요

- 서울시가 종암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분장을 개설하고 도매법인을 지정하였는데 도매법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여 서울시가 시장불성립, 시설 부적합, 시설의 타목적 이용, 도매법인의 운영부실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정취소함. 이에 도매법인이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뤄졌고 법 제56조의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상고함

라. 쟁점 및 결론

- 적법한 취소권자에 의한 취소였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
- 「농안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폐쇄에도 위 법률 제56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러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거

- 「농안법」 제63조 제2항,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제2항제10호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도매법인의 지정 승인취소 권한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지정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처분임
- 「농안법」 제56조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15

보증채무금

가. 사건번호

대법원 2005다33121, 선고, 2007.10.26, 판결, 서울고법 2005.6.9. 선고 2004나42618 판결

나. 관련규정

법 제32조 (매매방법)

-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출하자 겸 노량진 수산시장 내 소매업자가 자신이 출하하는 냉동일식재료를 자신이 경영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냉동일식재료를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법인의 상장을 거쳐 정가 또는 수의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매수함

라. 쟁점 및 결론

- 거래가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정함
- 「농안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단속규정이라 해석
- 도매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대해 경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매업자가 거래시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게 각각 거래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농안법」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함

- 중도매인 계약의 내용,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거래로 인하여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얻은 점, 노량진수산시장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도매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이 경매로 인한 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도매인의 어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



농안법 유권해석 요약(농림축산식품부)

질의 1

- 1) 중도매인이 동일시장 내 타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농산물의 중개를 부탁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중도매인의 내부거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2)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1)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음.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중도매인 내부거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음
- 2) 농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 또는 산지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됨. 다만,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상장예외 품목을 타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

개설자의 지정공고일 기준시 A법인은 공고일 직전년도 공고일과 때를 맞추어 수산물과 전혀 무관한 업종으로 발기설립하고 당해연도 공고일과 같은 날에 1년의 기간의 행하던 업종을 포기하고 수산물업종의 사업(위탁 등)으로 하여 공고일에 상호변경등기로 R법인으로 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법성 관련

- 1) R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상호변경등기한 날을 기준한 대차대조표 제출 가능 여부
- 2) 업종은 별론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시 직전회계연도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출시 해당법인을 A 또는 R중 어느 법인인지와 업종에 상관없이 지정신청시 타업종 법인의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도 무관한지 여부
- 3) 지정 신청시 제출되는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지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서의 법적지위와 효력은 무엇인지
- 5) 지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서는 이후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있다면 근거는

» 회신 내용

- 1) 상호변경등기를 한 경우 A법인과 R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라면 동일법인으로 판단됨
- 2) 당해연도 공고일 기준 1년이 안 된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는 A법인 것을 지칭하며, 신설법인이라면 농안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대차대조표를 제출할 수 있음
- 3)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타업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원의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개설자가 정하는 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정관은 상호변경시 정관의 기재사항도 변경되므로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 4) 지정된 법인이 사업계획서 변경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개설자가 당해법인이 수행할 업무 등에 대해 지정조건을 부여하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지정 이후 정관변경시에는 개설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음

질의 3

농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1차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56조(별표 4) 1. 일반기준의 “다”를 적용하여 1차 주의처분을 내렸을 경우 2차 행정처분시 행정처분은?

※ 처분기준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개월)

» 회신 내용

- 1)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별표 4)에 따른 감경처분은 업무정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경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2)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별표 4)에 따른 감경처분은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할 뿐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경고처분을 감경하여 주의처분을 했을 경우 다음 처분은 2차 처분 업무정지 1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4

중도매인이 6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3개월의 최저거래실적 미달과, 무실적은 각각 행정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도 중도매인의 업무가 가능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3개월 무실적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가능, 다만, 3개월 무실적의 경우에도 1개월 무실적에 대한 1차 주의, 2개월 무실적에 대한 2차 경고의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5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영업행위를 위해 제조업신고를 하여 하는데 센터 내에 공장(제조업)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의 별표3에 따라 포장·가공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농안법 제2조에 따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을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같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물의 가공·포장 등은 신선편의 농산물 등의 경우와 같이 단순 세척, 가공포장 등을 농수산물의 원형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 6

- 1) 중도매인과 법인의 거래약정서상의 일부내용이 농안법 규정과 업무조례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의 유무
- 2) 거래약정서 상의 일부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농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3) 전체 중도매인과 동일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거래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일부 중도매인에게 차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 4) 경매절차를 위반하여 차상경매한 경우의 처분 규정 유무 여부
- 5) 농안법 제74조 제1항 거래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행정 처분과 병행하는지의 여부

» 회신 내용

- 1~3)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개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 사례가 없어 검토가 불가
- 4)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차상경매한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차상경매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5) 농안법 제74조제1항 위반의 경우, 종전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행정처분 외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었으나, 2012. 2. 22. 농안법 개정 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질의 7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결과 조치를 다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시한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결과 조치는 출하제한 조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성 검사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 가능

질의 8

- 1) 농안법상 단순가공물품의 정의 및 범위와 2차 가공식품의 도매시장의 취급 여부
- 2)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또는 제3자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회신 내용

- 1) 농안법시행령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차 가공식품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농수산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농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경매, 입찰 포함)로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질의 9

농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제30조 제1항의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경우 해당 도매시장법인을 제31조 제1항의 규정(수탁 판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위반하였다면 제82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도매법인을 행정처분 또는 벌칙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제1항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되,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는 도매시장 법인의 도매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농안법 제88조제4호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제2호에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수탁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농안법 제3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 10

도매시장법인이 신용협동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경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도매시장법인 신용 협동조합을 개설한 사례는?

» 회신 내용

농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에는 경영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 등의 경우에 농안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신용조합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별도의 신용조합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은 경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신용조합에 자본 투자여부는 파악된 자료는 없음

질의 11

채소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형태로 철조망으로 설치한 경우 중도매인 점포에 해당되어 시설사용료 부과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중도매인 점포 형태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시설이 경매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철조망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중도매인 점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사용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음

질의 12

휴업 중인 중도매인이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자가 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휴업 중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 종료 후 업무정지 처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가중사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13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안법에 의하여 국가, 지자체 외에 개인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안법 제69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및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14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의 농산물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한 경우 농안법 위반 여부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에는 농안법 제8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의 농산물 출하여부는 농산물의 실소유자(대금입금 받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도매인이 농산물 출하대금을 법인으로 부터 입금 받은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질의 15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이 수입과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거래물량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 하다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

»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비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이 상장 예외품목 취급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상장품목 중도매인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질의 16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지임대료를 현물로 받아 소유한 경우 도매시장에 출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안법상 출하자의 개념 질의

» 회신 내용

농안법 제30조에서는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하자는 생산자(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축협 및 농안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회사법인 등)를 의미하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귀하께서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하 할 수 없으며, 산지유통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면허 세가 있음

질의 17

도매시장운영조례의 벌점제도를 개정하여 별도지침을 마련할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허가취소, 재허가 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 회신 내용

벌점제도는 농안법에 근거없이 업무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폐지 정책(농림축산식품부 지침(2015) 1) 29))에 따라 폐지된 제도임. 벌점제도의 취지는 개설자의 무분별한 행정처분보다는 합리성과 객관적인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것으로 벌점 등이 가중처분 등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자체적인 벌점규정을 근거로 한 누적점수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또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될 수 있음

질의 18

도매시장내의 중도매인간 거래시 판매자 및 구매자의 행정처분 여부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농안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경우, 위반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법제81조제5항제6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

질의 19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4의 행정처분 기준의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에 대한 질의

- 시행규칙 제56조 별표의 개별기준 나.의 9)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농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 질의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농안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의 2. 개별기준 나.의 9)에 따라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고, 3차처분을 한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거나 별표 4의 1. 일반기준 나.의 1.에 규정된 가중처분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음

질의 20

농안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에 외의 자에는 도매시장내 직판상인도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령에서 도매시장내 직판상인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외의 자에 도매시장 직판상인도 해당됨

질의 21

위탁자의 수탁물량을 도매시장 기여도(구매, 가공) 등에 따라 경매사가 상장 순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정가수의 매매의 경우)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에는 경매사가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매순의 결정,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매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가능함

(경매입찰의 경우) 수탁순위에 따라 판매하는 것이 원칙. 다만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우선 판매하게 할 수 있음

질의 22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약정 파기와 중도매업 허가취소와는 별개인지와 또한 3개월 무거래실적으로 허가취소 2일전에 개설자에게 휴업신청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3개월간 무실적인 경우 농안법 제8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허가취소에 해당됨. 다만,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약정 파기와 중도매업 허가취소와는 별개사항이며, 또한 3개월 무거래실적으로 허가취소 2일 전에 개설자에게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여부는 휴업신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23

- 1) 우리 도매시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수산물은 출하자의 전품목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있는데, 타도매시장의 경우 출하자의 부적합 품목만을 제한(서울가락시장 등)하거나 출하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를 제한하는 도매시장도 있는데 적절한 조치 방법은?
- 2) 경매 전 시료를 수거하였으나 물품이 도매시장 외부로 유통된 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도매시장에서는 이미 유통된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는?
- 3) 농안법에는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폐기시 비용주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생산자와 출하자가 다를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38조의2 및 농안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규정은 안전성 검사 결과 미달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출하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출하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2) 도매시장 부적합농산물이 이미 유통된 경우 농안법상에 규정된 것은 없음
- 3) 농안법상 부적합농산물 폐기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질의 24

- 1)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것이 도매시장경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들로부터 소포장 작업을 위탁받아 소포장 할 경우 경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3)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물건을 법인이 사서 소포장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반 여부

»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 2)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들로부터 소포장 작업을 위탁받아 소포장하는 사업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에 해당
- 3)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는 행위는 농안법 위반사항임

질의 25

- 1) 공판장 장소 이전 시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소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를 준용하여 개설자(조합장)가 소재지 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개설허가권자(전남도지사)에 신청하여도 되는지
- 2)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장소 이전시 장소이전허가신청서,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장의견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없음, 그러므로 공판장의 신규개설이 아닌 장소 이전이므로 시장의견서 없이 직접 개설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도 법률적 위배가 안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1)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농안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재지 시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음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과 달리 공판장의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개설 승인의 규정에 따라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질의 26

- 1) 도매시장법인 임직원이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김치 제조업 영업을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김치공장에서는 절임배추를 생산하여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일반판매만 하고 있음)
- 2) 2008년도 도매시장의 절임배추 취급허가 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관계로 법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에 전담토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김치를 유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도매시장법인의 취급품목인 절임배추를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도매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에 해당 될 수 있음

질의 27

- 1) 도매시장법인은 월별로 개설자에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월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면적으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2)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서 납부하여야 되는지?
- 3)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유 없이 중도매인과 보증금 체결 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전자거래 물량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개설자가 정한 요율로 총액을 산출하고 세부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으로 기준으로 산출함, 1개 법인의 경우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총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징수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 매장면적을 병행 부과 가능
- 2) 매장면적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로 동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매장 전체 면적 중 해당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율만큼 총액을 안분하여 사용료 부과 가능
- 3)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도매시장법인과 거래시 거래약정(보증금, 담보제공 등) 체결 후 거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거래당사자 쌍방이 약정조건이 안 맞을 경우 조건 불충족으로 약정체결이 안 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시장법인이 약정체결을 거부하지 못함

질의 28

중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 월간 최저 거래금액 7번 이상 미달되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농안법 제82조제5항 단서 및 제11호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질의 29

중도매인이 위반행위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및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 회신 내용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에 따라야 하며,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사항 등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시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연도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사후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2~3년 동안 농안법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질의 30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 상장된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사가 경매를 주관하면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무자격자 즉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그 직원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을 때 위반 여부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본인 외의 자로 하허금 본인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중도매인이 개설자에게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을 경매에 참여시키고 그 직원이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면 중도매인 및 그 직원은 농안법 제74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경매를 주관한 경매사는 농안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74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음

질의 31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일시(이 경우는 무실적 연속 2개월 29일 진행중)에도 휴업
처리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중도매인의 휴업신청은 정당한 경우 휴업이 가능함. 다만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2호의 경우에 무실적 기간에 휴업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중도매인 3개월
무실적 거래에 2일이 부족한 경우에 휴업종료후 2일 이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3개월 무실적에 해당되어 중도
매업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

질의 32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을 '97.5.3 지자체인 목포시(출자비율 23.5%, 목포농협, 수협, 축협 각각 25.5%
의 비율로 공공출자하여 자본금 5억으로 (주)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후 운영중 '02.2.25 지자체
출자지분만을 농협에 매각하였는 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어려움에 있어 당초 지자체(목포시)가
공공출자하였기에 일정부분 농·수·축협 출자지분등을 인수 또는 추가출자등 시비지원(시설, 운영시스템,
간접시설, 도로 등 투자)시 법적인 문제 여부

» 회신 내용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지방도매시장이며, 개설자가 목포시임. 이에 따라 시설
개보수 등 투자부분은 목포시가 수행할 수 있음,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4조에 따라 공공출자법
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출자법인이 도매시장 관리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도매시장이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임. 공공출자법인은 지자체, 관리공사, **농림수협**
등이 출자할 수 있음에 따라 목포시가 (주)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분을 인수 또는 출자하는 것에는 농안
법상 제약이 없음

질의 33

중도매인이 8.11~9.10까지 무실적인 경우 30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지, 개월을 기준으로 9.1~9.30까지만을 기준으로 1개월 무실적으로 처분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 제25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무실적일 경우 1차 주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월의 기간 계산은 민법(제155조 및 제160조)에 따라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하며, 30일 기준으로 1개월을 계산하지 않음. 중도매인이 8.11부터 9.10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는 1개월 무실적에 해당됨

역에 의한 1개월 기간 계산은 9.1부터 9.30까지처럼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하여 8.11부터 9.10까지처럼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도 함께 적용하는 것임

질의 34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매일 13%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중도매인으로서 법인과 아무런 약정없이 부과하는 13%의 이자는 법정한도를 넘어 부당하다고 생각됨.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합당 여부, 합당하지 않다면 농안법 및 다른 법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 유무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상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동사항은 농안법이 아닌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할 사항임

미수금에 따른 연체이자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조정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1)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약정서에는 “약정기간은 그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년간씩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그 후도 그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법인에서는 '08.12.31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인에 대해 약정해지 통보('08.11.24)하였음.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이 약정기간 만료 전에 약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중도매인은 재약정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의 영업능력, 과거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약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해당중도매인은 거래실적이 저조하여 '06~'08년 사이에 1개월 무실적 5회, 2개월 무실적 6회, 분기 실적 미달 7회로 거래실적 행정처분 19회(경고 9회, 업무정지 10일 1회 등)를 받았고 거래금액도 크지 않아 이러한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이 재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여부
- 3) 또한 현재 농안법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약정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 대한 약정해지 행위가 정당한 지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근거, 법유무 여부
- 4) 만약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과의 약정을 연장하지 않았고 타도매시장법인도 해당 중도매인과 약정체결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도매인이 어느 법인과도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거래실적이 3개월 무실적이 되면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럴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사무소가 직권으로 특정 도매시장법인에게 약정체결하게 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법인(갑), 중도매인(을)간의 약정서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에 연장한다고 명시되었으나 “갑”과 “을”의 타당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임, “갑”과 “을”의 약정에 관한 해석은 상호 협의가 우선임
- 2) 재약정 불가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약정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불공정 계약여부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람
- 3) 약정해지시는 1번과 같이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임(통상, 상호 협의/관계법령/법원소송 순서) 결국, 농안법에 약정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소송으로 가서 약관심사(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타당성 검토가 있을 것임
- 4)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개설자가 허가를 해 준 이상 주거래 법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도매시장개설자의 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6

시장도매인에게 시장사용료 부과시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장도매인이 물품을 산지에서 매수 할 경우 매수금액과 판매금액 중 적용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은?

» 회신 내용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안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매시장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에 반입되기 이전 산지의 매수금액이 아니라 당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함

질의 37

위탁수수료를 최초 경매가격에서 징수하는 지 아니면 물품의 하자금액을 정산하고 출하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판매원표에 최종적으로 기입되는 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판매원표의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관계당사자의 합의하에 판매원표를 정정한 후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동사안의 경우 판매원표의 정정여부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판매대금의 정산 및 위탁수수료의 부과는 최종적인 판매원표상의 가격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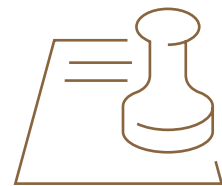
질의 38

도매시장에서 중도매법인의 임원(이사)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였다면 농안법 제88조(벌칙)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인 그 중도매법인 임원 당사자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안법 제89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임원이 속한 중도매법인의 대표인 중도매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농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82조 제5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농안법 제8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89조에 따라 그 행위자인 임원(이사)을 벌하는 외에 중도매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음.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고시 제2020-25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25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부고시 제2017-78호, 2017.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 ①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거래 운영방식)

- ①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의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 체결을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통으로 구축·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에게 매매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전자문서의 관리)

-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3년 이상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 ①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③ 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거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운영실적을 집계하여 반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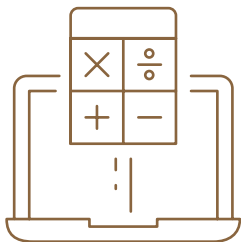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및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는 해당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1. 출하자가 송품장을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구매요청서를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거래예약 등 특약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어겼을 경우
- ② 거래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하여 해결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약정서 운영)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거래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래시간 준수 의무, 물품의 인수도 의무 등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Chapter 04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25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부고시 제2017-78호, 2017.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개요

가. 운용 배경 및 목적

- (1)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당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발생
* '10년 배추 파동 당시 배추 도매가격은 하루 만에 전일 대비 54.4% 급등하고 다음 날 35.5% 급락(가락도매 시장 경락가격, 배추 상품)
- (2) 경매제로 인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해왔음('12.8~)

< 도매시장 거래방식별 비중 추이(청과, 물량 기준) >

| '12년 | | '21년 |
|--------------|---|---------------|
| (경매·입찰) 79% | → | (경매·입찰) 68% |
| (정가·수의매매) 9% | | (정가·수의매매) 19% |
| (기타) 12% | | (기타) 13% |

- (3) 정가·수의매매 도입 취지에 맞게 예약형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여 거래 활성화 도모

나. 정가·수의매매(定價隨意賣買) 정의

- (1) 출하자, 중도매인 등이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을 도매시장법인의 협상과 조정하에 거래조건(품목, 물량, 가격 등) 및 거래당사자를 결정하여 거래하는 방식
※ 전자거래의 경우 상·물 분리거래를 말하며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구현하여 매매하는 방법도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 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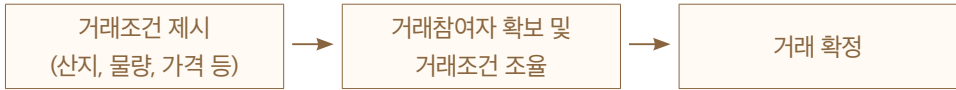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다.

2. 정가·수의매매 거래원칙 및 기준 등

가. 거래원칙

-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32조(매매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에 따른 정가·수의매매 방법을 거래원칙으로 함

< 정가·수의매매 절차 예시 >



나. 도매시장 반입 시 처리 요령

- (1)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되면 하역 후 반입 확인을 위해 해당 송품장에 하역 서명하되, 차량단위로 거래 되는 품목은 거래 후 송품장에 하역 서명 가능
- (2) 하역 서명과 더불어 판매 원표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판매 원표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작성·보관·정정 등 실시
- (3)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 대상 농산물의 거래가 확정될 경우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다. 정가·수의매매 거래기준

(1) 거래유형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 도매시장 반입 전일(실제 거래 24시간 전) 도매시장법인의 협상과 조정에 의해 거래조건(품목, 물량, 가격 등)이 확정된 경우

[비예약형 정가·수의매매]

- 예약형이 아닌 정가·수의매매

(2) 거래시간

-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함

(3) 거래장소

-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정 거래장소를 정할 수 있음
- 도매시장에 반입된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 중도매인 등 거래참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해야 함

[예시]

- A산지 5개 팻릿 물량 반입, 이 중 3개 팻릿 정가·수의매매로 거래 시
* 표시 방법 : “5개 팻릿 중 3개 팻릿 정가·수의 물량”
- B산지 2개 팻릿 물량 반입, 이 중 2개 팻릿 정가·수의매매로 거래 시
* 표시 방법 : “2개 팻릿 모두 정가·수의 거래물량”

- * 전자거래 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 해당 거래장소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농안법 제 35조 제2항)

(4) 정보 공개

- 정가·수의매매를 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한 물량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부류(품목) 경매 시작 1시간 전에 거래참가자에게 품목별 전체 반입물량, 정가·수의매매 물량 및 출하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단,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 시작 전 정보 공개 시점을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상세한 출하처 정보 공개가 어려울 경우 지역(시·군·구 단위 등) 정보 공개
- 공개 방법은 해당 도매시장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매인 등 거래참여자 및 협의하여 경매장 내 게시판, 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가격정보 공개 여부 및 범위는 추가 검토 후 결정

(5) 매매 체결

- 매매 체결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가 판단하여 결정함
- 경매사는 정가·수의매매 거래절차, 거래기준 등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라. 분쟁 및 부정 거래 방지

(1) 시세 차액 보전

-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시 거래당사자들은 거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체결 후 다른 매매 방법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시세 차액 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 단,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시세 차액을 보전할 수 있음

(2) 부정 거래 방지

-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의 실적관리를 위해 표준송품장과 판매 원표를 보관하여야 하고 개설자에게 '별지1'의 양식으로 월별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은 정가·수의매매 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내부 관리방안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관계기관별 역할

가. 농림축산식품부

- (1) 정가·수의매매 추진 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시행지침 등 마련
- (2) 정가·수의매매 추진실태 점검 및 관련 예산 확보 지원 등

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정가·수의매매 목표치 관리 및 도매시장별 추진 실적 평가
- (3)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다. 도매시장 개설자

- (1) 정가·수익매매 추진 실적 보고 및 관리
- (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지도·관리
- (3)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분쟁 조정 및 업무 규정 정비 등

라. 도매시장법인

- (1) 정가·수익매매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수립·추진
- (2) 정가·수익매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조직 운영 및 관계자(경매사, 중도매인, 출하자) 교육·홍보 추진

마. 중도매인

- (1) 정가·수익매매 물량 독점행위와 개별적으로 물량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등 도매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

[정가·수익매매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2.20>]

| 월별 정가·수익매매 실적 보고 | | | | | | | | | | | | |
|---------------------------|----|----------|-----------|---------|---|---|---|---|-----------|--------------------------|--------------------------|------|
| 수 신 (개설자) | | 귀하 | | | | | | | | | | |
| 아래와 같이 정가·수익매매 실적을 보고합니다. | | | | | | | | | | | | |
| 도 매 시 장 법 인 명 | | 년 월 일 | | | | | | | | | | |
| 거 래 일 시 | | | | | | | | | | | | |
| 거래 일시 | 품명 | 출하자 명 | 거래별 단량 | 등급 및 수량 | | | | | 가격 (원) | 도매 거래 상대자 | 예약거래여부 (해당란에 ✓) | |
| | | | | 특 | 상 | 중 | 하 | 계 | | | 예약형 | 비예약형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합계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예약형 : 도매시장 반입 전일(실제 거래 24시간 전)에 품목, 물량, 가격이 확정

* 비예약형 : 예약형이 아닌 정가·수익매매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고시 제2017-77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급, 인수예정 일자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할 경우

부칙 <제2017-77호, 2017.8.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Chapter 06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제2013-71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농림부고시 제2012-211호, 2012.9.21.)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고시 제2013-3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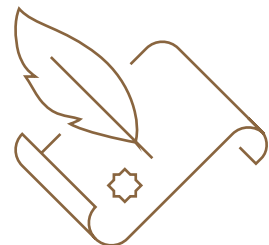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별첨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매도인(갑) 성명: | (서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매수인(을) 성명: | (서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소재지: | | | |
| 품목: | 품종: | 계약면적: | m ² (평) |
| 파종일(또는 정식일): | 20 . . | | |
| 총 매매대금: | | 원 | |
| 계약일: | | | |
| 계약금: | | 원 | 계약금지급일: |
| (중도금): | | 원 | (중도금지급일) : |
| 잔금: | | 원 | 잔금지급일: |
| 반출일: | | | |
|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 | |
| * 긴급연락처: | | | |
| 을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 | |
| * 긴급연락처: | | | |
| 특약사항 | | | |

<주의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표시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표식’을 사용하는 매수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조(매매대금)

- ① 총 매매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잔금지급기일은 위 기재일이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을 약정할 수 있다.
- ② 을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해당농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에서 정한 매매단위별 단가로서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2조(계약금)

- ① 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30% 이상 지급되어야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맞으며 이 건 계약금은 위 기재금액으로 한다.
- ② 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3조(목적물의 확인)

- ① 을이 포전매매목적물의 현황확인을 위하여 갑에게 위 목적물표시상 소재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제출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상의 명의인과 갑이 다를 경우에 그 사유를 을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직접 목적물에 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종자에 대한 정보, 위해조수출물, 농지가 맹지어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부,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작여부 등)를 계약 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계약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측량기를 이용해서 재배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거래표지판 설치)

- ① 갑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
- ② 갑의 인도로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며,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실부담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팻말을 부착하는 등의 거래내용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실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하기로 한다.
- ③ 거래표지판에는 계약당사자의 성명, 품목, 계약면적, 계약체결일 및 반출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제5조(목적물의 관리)

- ① 갑은 약정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② 갑이 목적물을 관리하는 내용은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으로 통상적으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시행하는 정도의 관리를 그 범위로 한다.
- ③ 갑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넘어서 실시하도록 을이 요청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을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6조(목적물의 반출)

- ① 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을의 목적물반출은 후작의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하에 반출일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목적물의 수확·반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목적물반출일 이전에 을이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연장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갑은 1회당 10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방법)의 통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반출일 연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관리비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 ⑤ 연장된 반출일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남아있는 목적물은 갑이 임의로 처리한다.

제7조(위험부담)

- ①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위 제2항의 경우에 위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사전 미고지로 조수피해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 ④ 목적물의 가격 폭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대금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8조(담보책임)

계약체결 후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제9조(계약해제)

- ①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할 수 있다. 단 매수인에게 유책사유 없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불이행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제할 수 있다.
- ② 갑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행거절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때(이중매매 등)
 2. 갑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이를 게을리하여 을에게 큰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
- ③ 을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④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관계해소 후 갑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은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 즉 반출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위약금,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반출연장기간은 최초에 정한 반출약정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반출 기간연장도 2회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같음하여 제11조(통지방법)의 통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반출지연에 따른 손해는 별도의 위약금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통지방법)

- ① 목적물의 관리 과정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이 연락처에 2일(48시간) 내에 3회(1일 2회 이내)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쌍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③ 전항의 연락에 대한 수단으로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휴대폰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 ④ 통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는 이 계약내용을 준수하는 한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제12조(위약금)

- ① 제9조(계약해제)에서 규정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으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으로 한다.
- ②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이 계약서 전면 개별약정 기재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의 표시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Chapter 08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고시 제2014-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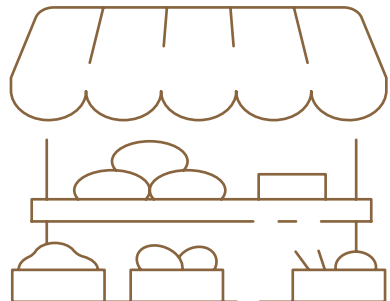
2012년 8월 7일

부칙 <제2014-5호, 2014.2.4.>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파·양배추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0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고시 제2016-5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각 품목별로 산정한 기준이 다음 품목별 발령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품목 | 발령기준 |
|-------|--|
| 감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2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 고랭지배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 겨울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작형 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또는 •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

부칙 <제2016-53호, 2016. 6.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도매인 운영지침(2000. 10.)

시장도매인 운영지침 요약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경위

- 국민의 정부출범후 농산물유통개혁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개혁대책위를 구성, 유통개혁과제를 논의('98. 3~'99. 6)
 - * 직거래의 제도화, 공영도매시장개혁, 산지유통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물류 및 정보 체계개선, 수급안정 등 과제 논의
 - 건의된 개혁대책을 바탕으로 '98. 7. 23 대통령계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
- 입법과정에서도 도매시장 개혁과제로 선정된 도매상제(법률용어: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안 마련
 - 도매상제의 도입범위(중앙·지방), 영업범위(매수·수탁 등) 등에 대하여 논의
- '98. 12. 2에 국회에 농안법 개정안 제출, '99. 12. 16에 개정안 의결
 - * 주요내용: 시장도매인제도입, 표준하역비 등 도매시장개혁대책과 유통명령, 자조금 등 수급안정제도 도입
- 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2000. 6에 완료되고,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적정 수 등 도입방침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실시
 - * 2000. 4. 1~6. 30, 한국유통학회 오세조 교수팀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을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에서 심의: 2000. 9. 29

1. 목적 및 기본방향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입 근거 마련
 -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을 작성, 시도에 통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보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검토
 - 경제제도와 시장도매인 제도의 선택은 시장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 할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에 대해 충분한 분석 필요(연구용역 등)

- 도매시장의 여건에 맞는 도입유형, 자본금 규모, 적정 수 등을 결정
- 아울러 출하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설자가 결정(법 제 41조, 시행규칙 제36조)
 -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적정자본금 및 적정 수 결정

- 시장규모별 적정자본금 규모와 적정 수의 범위
 - 도매시장을 거래액과 물량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시장으로 구분, 시장규모별 유형에 따른 자본금 규모와 적정 수 제시
 - 대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1,500억 원 이상(물량기준 20만 톤 이상)
 - 중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750~1,500억 원 미만(물량기준 10만 톤 ~20만 톤)
 - 소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750억 원 미만(물량기준 10만 톤 미만)
 - ※ 가락시장은 초 대규모시장으로서 거래규모에서 다른 시장과 차이가 커 별도 검토 필요
 - 시장도매인의 적정자본금 규모 및 적정 수의 범위
 - 각 도매시장개설자는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취급 금액 및 물량을 감안하여 결정

| 구분 | 연구용역결과 | | 기준안 | | 비고 |
|-------|----------|--------|----------|--------|----|
| | 적정자본금 | 적정 수 | 적정자본금 | 적정 수 | |
| 대규모시장 | 15억 원 이상 | 15-20개 | 10억 원 이상 | 40개 이하 | - |
| 중규모시장 | 10억 원 이상 | 10-15개 | 7억 원 이상 | 20개 이하 | - |
| 소규모시장 | 5억 원 이상 | 3-10개 | 5억 원 이상 | 15개 이하 | - |

※ 개설자가 출하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예: 일정수준 이상의 출하대금 지급보장보험가입, 재무관리를 통한 경영상태의 주기적 공시 등)를 갖춘 경우 부류별 특성,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자본금과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신중적으로 운영 가능. 다만 적정 수의 경우 시장별(부류별) 최소수는 3개 이상으로 운영

3. 대금정산창구 및 운영방안 결정

- 정산창구의 유형 및 운영방안은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감안 결정
- 정산 창구의 유형 결정
 -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나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다만 관리공사체제의 도매시장은 정산창구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안전장치
 - 정산회사: 적정자본금, 운전자금,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 정산조합 등: 대금결제 전용계좌 최소잔고, 보증금 및 연대보증인 확보,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4. 향후 추진계획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 시도 통보 및 자체설명회 개최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실시



시장도매인 운영지침

I

추진경과

- 그 동안 추진한 유통개선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외 유통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해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설치·운영: '98.3
 - 종합적 농산물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농안법개정을 추진
- 농안법개정안 입법예고: '98.10.7
- 농안법개정안 국회제출: '98.12.2
-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99.12.16
- 개정 농안법 공포: 2000.1.28(법률 제6223호, 2000.6.1 시행)
- 농안법 시행령 공포: 2000.6.7(대통령령 제16834호)
- 농안법 시행규칙 공포: 2000.6.23(농림부령 제1366호)
-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 시도 통보: 2000.6.27
- 시장도매인제 운영방안 연구: 2000.4.1~2000.6.30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안)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심의: 2000.9.29

II

목적 및 기본방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입 근거 마련
 -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을 작성, 시도에 통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보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
 - 운영중인 시장: 형식·이중경매, 거래부진 등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및 신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종합 검토(소비지 도매시장의 수산부류는 적극 검토)
 - 건설중인 시장: 신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주변 도매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 검토
 - ※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 제도의 선택은 시장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할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에 대해 충분한 분석 필요(연구용역 등)
-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검토 시에는 당해 도매시장의 여건에 맞는 도입유형, 적정자본금 규모, 적정 수 등을 결정
- 아울러 출하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설자가결정(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개설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을 활용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종합검토
 - 도입여부 및 유형 결정
 - 적정자본금 및 적정 수 결정
 - 정산창구의 형식과 운영 및 관리방법 결정
 - 제도도입 및 운영

Ⅲ 시장도매인제 개요

1. 시장도매인의 정의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 통상 “도매상” 이라고 하나 기존 도매상과 자격, 정산방법, 영업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용어로 “시장도매인”이라고 함

[시장도매인과 일반 위탁상]

| 구분 | 시장도매인 | 일반 위탁상(도매상) |
|-----------|--|-------------|
| 운영주체의 법인격 | 법인 | 대부분 개인 위탁상 |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규모 등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 정산의무 | 정산제도 이용 의무화 | 없음 |
| 지정기간 | 3~10년 사이에서 개설자가 지정 | 없음 |
| 영업활동 규제 |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거부 금지,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수탁을제한 또는 금지 가능 | 없음 |

2. 도입시기

- 지방도매시장
 - 농안법 시행일인 2000. 6. 1부터 도입 가능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 중앙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3.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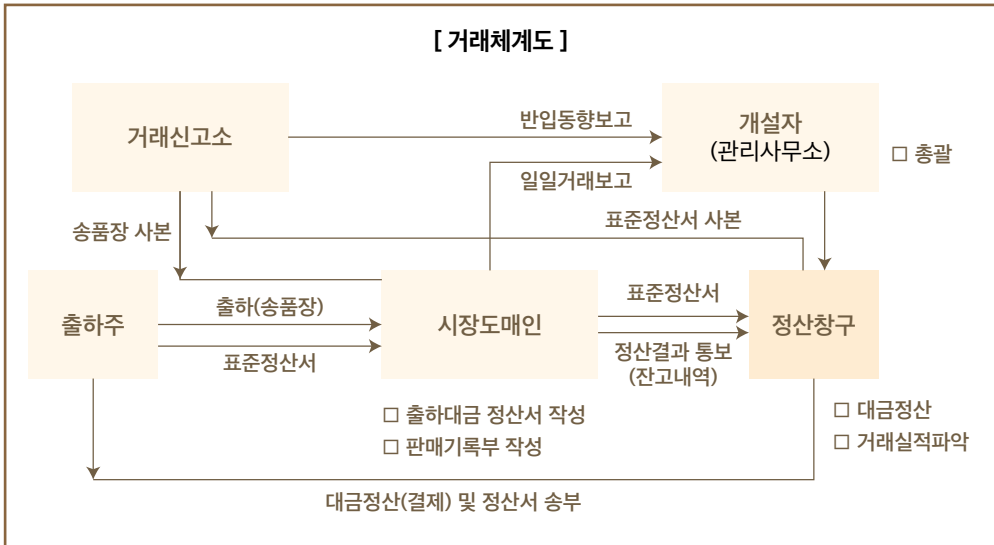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 부류 등)로 3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
 - 정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신청 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자금(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업무규정에서는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규정
-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운전자금,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함
 - 적정 수는 개설자가 부류별로 상한수를 정함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임원의 요건
 - * 임원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 임원중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최저거래금액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보증금의 규모 및 납부방법 등은 개설자가 정함
 - 보증금의 규모는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개설자가 정하되 최저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함
 - 운전자금의 규모는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개설자가 정함

4. 영업

-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
 -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출하자가 제시한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
 - ※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함
-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다음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함
 -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5.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
 - 대금결제의 기본절차
 -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 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결제기간: 1~3일

■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IV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운영

1.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 결정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도매시장에서 도입하는 경우와, 신설 도매시장에서 도입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

- 공통적으로 검토할 사항
 - 신유통업태와의 경쟁 등 장래 도매시장의 발전방향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Infra의 구비여부
- 기존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경제제 운영성과 분석, 기존시설의 전환 가능성,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도매 시장 개장년도 및 시장관계자들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요구정도와 공감대 등을 검토
- 신설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능력있는 신규도매시장법인 존재여부, 건설중인 도매시장 시설구조, 시장도매인제 선호도 등을 검토

■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 결정

- 기존 도매시장의 경우 경제제도의 성과 정도가 낮고,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약할수록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필요성 증대
- 시장관계자들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요구와 공감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용이

- 신규 시장일 경우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외부에서 능력있는 도매시장법인 모집이 어렵고, 시장도매인제 선호도가 높을 경우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필요성 증대

2. 시장도매인제 도입유형 결정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도입유형에는 시장도매인만을 두는 경우와,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을 함께 두는 경우의 2가지 형태가 있음
-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 상호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형 결정이 바람직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시장도매인만 두는 형태가 바람직
 - 양 형태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양 형태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만약, 기존 시설이 충분하고 쌍방간 갈등의 여지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경우, 같은 시장 내에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을 함께 둘 수도 있음
 - 이럴 경우에도, 시설등을 구분하여 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부류가 다른 경우에는 부류간 갈등요인이 없으므로 2가지 형태의 제도 도입 가능
 - 예: 청과부류는 도매시장법인, 수산부류는 시장도매인
 - 소규모 시장의 경우에는, 비용 발생 등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시장에 두 유형의 병행도입보다는 단일유형 도입이 바람직

3. 시장도매인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결정

- 시장도매인의 적정 자본금 규모 및 적정 수 결정시 기본방향
 - 적정자본금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는 영업범위가 도매시장법인 보다 넓어짐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보다 크고, 경쟁유통업체들과 유사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는 희망 중도매인의 흡수 등 현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조정
 - 적정 수
 - 중장기적으로 시장도매인의 수는 부류별로 소수정예화 하여 효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자본금 규모와 경상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규모에 따라 적정 수를 지정
- 적정자본금과 적정 수의 관계 및 운영방향
 - 시장도매인의 적정자본금과 적정 수는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출하자 보호 등을 위해 적정자본금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모 이상을 최소한 유지하고, 적정 수의 경우 시장별(부류별)로 최소수는 3개 이상 운영하되, 가급적 동지침에서 제시된 적정 수 범위 내에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농안법상 도매시장의 주고객인 출하자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운영
 - 자본금의 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전성 측면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유지

- 보증금의 규모는 시장도매인의 일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저금액은 5,000만 원으로 함
※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가입 권장 및 지정시 우대
- 시장도매인의 운전자금 규모와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정하여 경쟁력 제고
-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해서만 대금결제 가능
- 시장도매인의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한 시장도매인을 육성하고,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 지정과 통합을 통하여 적정 수를 관리

■ 시장규모별 적정자본금 규모와 적정 수의 범위

- 연평균 거래액과 물량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규모별 유형에 따른 자본금 규모와 적정 수 범위 제시
 - 연구용역시 검토 방법 참고
 - * 적정자본금: 적정 운전자금 및 부채 비율법, 경쟁업체 비교법, 도매시장 법인 비교법 등
 - * 적정 수 = 시장의 연간 거래액 / 1개 시장도매인의 연간 적정 거래금액
- 규모별 시장분류
 - 대규모시장: 연평균 거래액 1,500억 원 이상(물량기준 20만 톤 이상)
 - 중규모시장: 연평균 거래액 750~1,500억 원 미만(물량기준 10만 톤~20만 톤)
 - 소규모시장: 연평균 거래액 750억 원 미만(물량기준 10만 톤 미만)
- 시장도매인의 적정자본금 규모 및 적정 수의 범위
 - 각 도매시장개설자는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취급 금액 및 물량을 감안하여 결정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기준안]

| 구분 | 적정자본금 | 적정 수 | 비고 |
|-------|----------|--------|---------------------------------------|
| 대규모시장 | 10억 원 이상 | 40개 이하 | 가락시장은 거래규모에서 다른 시장과 차이가 너무 커 별도 검토 필요 |
| 중규모시장 | 7억 원 이상 | 20개 이하 | - |
| 소규모시장 | 5억 원 이상 | 15개 이하 | - |

※ 개설자가 출하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예: 일정 수준 이상의 출하대금 지급보장 보험가입, 재무 관리를 통한 경영상태의 주기적 공시 등)를 갖춘 경우 부류별 특성,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자본금과 수의 20%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다만 적정 수의 경우 시장별(부류별) 최소수는 3개 이상으로 운영

4. 대금정산창구 및 운영방안 결정

■ 정산창구의 유형

- 정산창구의 유형은 크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산회사방식, 대금결제전용계좌관리방식, 개인지불방식 등이 있으며,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방식은 관리주체에 따라 정산조합방식, 금융기관 이용방식, 개설자 관리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정산창구는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 상기의 유형중에서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공사) 관리방식 등을 검토

[정산 방식의 비교]

| 구분 | 정산회사 | 정산조합 | 금융기관 이용 | 개설자관리 |
|----------------------|--|---|--|--|
| 인격 | 법인(회사) | 조합 또는 법인 | 금융기관(법인) | - |
| 구성 |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 매매참가인 등 | 시장도매인 또는 별도법인 | 농·수협 등 금융기관 | 개설자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
| 목적 | 대금결제 | 대금결제 | 대금결제 | 대금결제 |
| 임무 | 정산 | 정산관리 (시장도매인 결제계좌 관리) | 정산관리 | 정산관리 |
| 대금 결제 안전 장치 | -정산회사 자본금, 운전자금, 보증금 -시장도매인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 강구 |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전용 계좌 최소잔고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강구 |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전용 계좌 최소잔고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 강구 |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전용 계좌 최소 잔고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강구 |

■ 정산창구의 기본 개념

• 정산창구의 개념

- 농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 정산창구 방식별 개념

<정산회사방식>

-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 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
- 출자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로 하는 방식

<정산조합방식>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직접 지는 방식임

<금융기관(농·수협 등)이용 방식>

-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개설자 관리방식>

-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공사 체제에 적합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방식과 유사하나 두 가지 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 정산창구 유형 결정

- 정산창구 유형결정 기본방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산의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가장 용이한 정산창구 유형 결정
 - 1개 도매시장에 하나의 정산창구를 운영하되 창구 자체의 안전성 확보 필요
 - * 시장도매인을 위한 정산창구가 운영되면,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업무도 정산창구를 이용하는 방안 검토
- 정산 창구의 유형 결정
 -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나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다만 관리공사체제의 도매시장은 정산창구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 병행 검토

■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

-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개설자가 정하되 다음 사항에 중점
 - 정산창구 유형별 설립 방법 및 절차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 안전장치
 - 정산창구의 업무 영역
 - * 시장도매인과 정산창구와의 관계 설정
 - * 정산창구와 개설자와의 관계 설정
 - * 정산창구의 운영 등 경영안정 방안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안전장치

- 정산회사
 - 적정자본금 = 운전자금 × 100 / (100 + 150)
 - * 여기서 100은 자본금 비율, 150은 적정부채 비율
 - * 운전자금 = 1일 평균거래액 × 판매대금 미결제 기간일(8일)로 산출할 수 있음
 - * 1일 평균거래액 = 연간거래액 ÷ (365 - 52일) 여기서 52일은 휴일 날짜임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 * 1일 평균 거래액이 약 9억 원일 경우 약 29억 원의 자본금 소요
- 정산조합, 금융기관이용, 개설자관리
 -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 최소잔고(최소 1천만 원 이상)
= 시장의 1일 평균 거래액 × 2일 ÷ 시장도매인수
 - 보증금: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0% 이상으로 하되 최저는 2천만 원 이상
 - 연대보증인 2명 확보 및 각서 징수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 시도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시도에서는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내외의 관련상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 실시
- 상장예외품목을 지정 운영하는 개설자는 정산창구를 2001년 말까지 설치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 용어¹⁴⁾

객주(客主)

전국 각지의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매매를 주선하며,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화물수송업·금융업 등 여러 기능을 겸하는 중간상인을 말한다.

그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 고려시대에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좁게는 행상, 넓게는 객지상인의 모든 거래를 주선하여 주는 사람의 뜻을 갖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약자이다. 주된 업무는 위탁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 간접 매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위탁 매매업을 담당하였다. 그 이외에도 부수 업무로서 위탁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숙박을 제공하는 여숙 업무, 화물을 가진 사람이나 살 사람에게 대해 대금입체(貸金立替)·자금 제공 등의 금융 편의를 위한 금융 업무, 각종 물화(物貨)를 무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 업무, 그리고 화물 운반을 위한 마차나 마방(馬房) 또는 선박을 알선하는 수송업무를 맡았다. 말하자면 객주는 상품의 위탁 판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던 상인이었다.

거간(居間)

거간은 과거 모든 상품 유통에 개입하여 갖가지 흥정을 도맡아서 하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개인이었다. 현행 상법상 중개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더 포괄적인 뜻을 갖는다. 거간은 중개인의 전신(前身)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활동 범위는 오늘날의 중개인보다 넓었고, 그 유형 또한 복잡하고 다채로워 “거간 없이는 거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계류(繫留)

농장에서 수송되어 온 가축을 도살 전 12~24시간 동안 머물러 있도록 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게 하는 조치이다. 계류를 통하여 육색을 좋게 하고 저장성이 높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계통 출하(系統出荷)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지 않고, 단위 농협 또는 작목반 등에 위탁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출하에서 최종 정산 시까지 생산자 개인의 명의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공동 선별이나 공동 계산 등을 하는 공동 출하와 구별된다.

14) 해당 내용은 「新 농산물 유통(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9)」의 내용을 인용
법령관련 내용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행주체 등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출하(共同出荷)

공동 출하란 공동 선별, 공동 수송, 공동 계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래 영세한 다수의 농민이 판매시기, 판매방법, 판매처를 통일하여 개개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소량 상품을 대량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 출하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업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단위당 비용을 감소시키며, 영세한 출하 농민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채소류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은 공동 계산을 통해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관련상품 상인
(關聯商品商人)**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무·배추·오이 등 산물 상태의 1차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 이외에 된장·고추장·간장 등 농수산물의 2차 가공 식품이나 절임 식품류 또는 제수용품이나 포장재 등을 취급하는 상인으로서 도매시장에서 각종 식자재를 일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색(具色)

취급상품의 계열수를 다양화하고, 규격·스타일·색깔·무늬·크기·상표등상품의 깊이를 더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말한다.

기록 상장(記錄上場)

농안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농수산물 중 경매 지정 품목은 도매시장 법인의 상장경매 절차를 거쳐 판매하여야 하나, 서류상으로만 상장경매 절차를 거친 것처럼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하자가 중도매인 명의로 물건을 올리면 중도매인이 서류상으로만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물건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한 후 상장수수료를 출하자 물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허위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냉장육(冷藏肉)

냉장육이란 소나 돼지를 도축한 뒤 저온(0℃~4℃)에서 보관한 “얼리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냉동육에 비하여 육질에 큰 손상을 주지 않아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냉장 온도에 따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농산물 표준 규격화
(農産物標準規格化)**

농산물 표준 규격화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 출하 규격에 맞도록 품질·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 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은 품종·재배 여건 등이 다양하여 생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부패·변질 등으로 선도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상품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통 농산물의 표준 규격화가 필수적이다. 농산물이 표준 규격화되면 ① 신용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②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의 정확성 제고로 공정 거래 촉진 ③ 수송, 적재 등 물류 비용 절감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④ 선별·포장 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다이

과일의 거래 단위로 한 다이는 10개를 말한다. 즉, 0다이는 1~10개, 1다이는 11~20개, 2다이는 21~30개 등이다.

| | |
|--|--|
| <p>대판, 중판</p> | <p>대판은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인으로 대부분 비허가 상인이다. 중판은 대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상인을 말한다. 가락시장의 경우 주로 수산부류 상인을 의미하는데 2004년도에 선어·활어 중판·대판 129명을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선어나 활어 취급대판·중판상인은 없으며 냉동물을 취급하는 대판·중판 상인이 다수 있을 뿐이다.</p> |
| <p>도리</p> | <p>경매 진행 시 복수의 동일 호가(같은 가격)가 나왔을 때 직전 낙찰자에게 낙찰시키는 것. 즉 첫 번째 경매에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두 번째 경매 진행 시 A와 B 두 사람이 같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A라는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것을 말한다.</p> |
| <p>도매상제(都賣商制 ; 농안법상 “시장도매인제”)</p> | <p>우리 나라에서는 상장 경매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명칭으로, 농안법에서 정의한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시장도매인은 집하와 분산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성·신속성을 도모하고 상대 매매에 따른 가격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p> |
| <p>도매업(都賣業)</p> | <p>재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 즉, 소매 이외의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 도매는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물 판매를 위해 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생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가 도매업이며 전자의 경우에도 판매를 위한 사업소(지점, 영업소)는 도매업으로 취급된다. 도매업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산물의 수집·중개·분산이고, 그를 위해서 상거래 활동(탐색, 접촉, 교섭, 계약, 결제 등)과 유통 활동(수송, 보관, 포장, 선별, 구색 갖추기 등)이 행해지며 나아가 정보 전달이나 금융 등의 기능이 부가된다.</p> |
| <p>도체(屠體)</p> | <p>소, 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과 정육을 말한다.</p> |
| <p>뺏다방</p> | <p>소형 차량(트럭)을 이용하여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아파트나 도시 주거지역 등으로 다니면서 순회 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도부꾼이라고도 한다.</p> |
| <p>매취 판매(買取販賣 ; 매수 판매)</p> | <p>자기 계산으로 출하자에게 물품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한 후 물품을 사들이고 마진을 붙여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p> |
| <p>반출상(搬出商)</p> | <p>수집상이 매집(買集)한 상품을 대량으로 집하·포장하여 소비자, 집산지 또는 가공 공장으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금융 및 위험 부담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p> |

배송(配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쓰이는 의미로는 상품의 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즉, 도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상품이 시장 밖의 소매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보부상(保負商)

신라 시대 이후 자유 경제의 기반 위에 물물 교환을 매개하던 행상인으로 그 발생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려 말에는 보부상을 이용해 소금을 운반한 기록이 있다. 정기 시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유통시켰던 보부상들은, 조선 중기 이후 규율이 엄격한 조직체로 발전했으며, 특히 개성 상인들은 보부상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보부상은 직물·금·은·화장품·가족 세공품 등 비교적 값비싼 잡화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던 봇짐 장수인 보상(保商), 그리고 도기·소금·담배·어류·해초류 등 일용품을 지게에 지고 다니던 등짐 장수인 부상(負商)을 함께 지칭한다. 이들은 정기 시장에서 유통의 왕자로 군림했으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 교통이 발달하고, 상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또한 시장 경제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정기 시장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부산물(副産物)

축산물 도축 후 도체에서 분리되는 생산물로서, 소 부산물은 “두·족·내장·간·염통·허파·지라·우랑·등골·살개·지방·우피”이며, 돼지 부산물은 “두·족·내장·지방·돈피” 등이 있다.

선물 거래(先物去來)

매매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대상물의 인도와 대금 결제는 미래의 약속된 일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농축산물의 경우는 실물 상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품 선물 거래라 하고 통화, 금리, 주식, 주가지수 등의 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금융 선물 거래라 한다. 주로 생산에서 운송에 시간이 걸리는 물건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어(鮮魚)

신선한 어류를 지칭한다. 품질 면으로 보아 원상태로부터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며, 시장 용어로는 저온으로 보존되어 있는 미동결어를 지칭하고 있다.

소매(小賣)

소매업자와 상품 소비자 간의 상품 매매 거래를 보통 소매 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소비자 중에는 산업용품 소비자로서의 상품 생산자가 포함되기도 하며 또 다량으로 일용품을 수용하는 상품 소비자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까지도 소매 거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거래 객체를 표준으로 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판매를 소매 거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상품 특히, 소비자용품을 최종의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상업을 소매업이라고 한다.

[소매업태의 유형]

| 구분 | 개념 | 특징 |
|-------|--|---|
| 대형마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서 한 건물 내에서 일괄 구매와 비교 구매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소매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종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각상품군을 전문화, 대면판매를 기초로 일괄 구매 정가 판매와 통신 판매 |
| 백화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범주별로 다양한 상표와 모델이 판매되며, 고급 실내 장식과 점포 내 재고가 유지되며, 다양한 대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윈스톱 쇼핑의 이점이 최대한 보장되는 소매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적 경영수행, 점포는 대도시를 중심, 부도심 및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 소통이 원활한 곳에 입지 정찰 판매, 현금 판매, 할부 판매 및 소비자 신용을 통해 신용도 제고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각 부문별로 상품의 매입·구색·가격·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 위험 분산 |
| 슈퍼마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일반 상표 및 판매 회전이 높은 제품 모델을 취급하고, 재고 상품과 신선 상품 등 일용품과 편의품을 주로 판매하며 비교적 편리·저렴한 가격대의 생필품을 취급하는 현대화된 소매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별 관리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식품계 종합점 셀프서비스와 초염가 판매 비교적 넓은 매장 보유와 대규모화 중앙 집중 구매 방식의 채택 |
| 할인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적이고 실용적으로 상품을 구성하며, 상품 가격의 상한·하한 간격을 좁혀 chain operation 경영을 주로 하는 박리다매형 셀프서비스 업태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적인 저가격 판매 셀프서비스로 제품 판매 낮은 마진율(20~30%)로 박리다매에 의한 대량 판매 |
| 편의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소매상이 제공할 수 없는 편리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미니 슈퍼와 같은 형태로 시작된 근린형 소형 소매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영업으로 시간적 편리성 근린형으로 거리상의 편리성 점포 레이아웃의 콤팩트화로 쇼핑시간 단축 상품 구색 테마가 명확하여 이용 편리 배송 시스템 정비로 신속한 상품 공급의 편리 상품 배치 단순화로 상품 선택의 편리 |
| 하이퍼마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개념을 조합하여 식품과 비식품매장을 통상 3배 이상 확대하는 대형 소매업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교외에 입지하며 넓은 주차장과 셀프서비스를 채용하고 비회원도 출입 허용 기존 회원제 창고점의 상품 진열에서 취약했던 식품 비율을 강화하고 저마진·고회전 경영 지향 매장 구성은 창고 형태로 운영 |
| 쇼핑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및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 입주점으로 하고 각종 전문점을 비롯하여 문화교실, 레저 스포츠 시설, 공공시설 및 금융시설 등이 복수 입주하는 종합 생활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동점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편의성, 일괄 구매, 다수 점포, 풍부한 상품 다양한 여가 업종, 오락의 24시간성 패션, 윈도우 쇼핑, 현대적 감각과 장식, 도시적 무드, 점포의 개성 휴식 공간 확대 |
| 아울렛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커와 백화점의 비인기 상품, 재고품, 하자 상품 및 이월상품 등을 자사 명의로 대폭적인 할인가격(30~70%)으로 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동종 점포가 출점하여 쇼핑센터를 이루는 업태 대부분 물류 창고나 관광 단지 등에 입지 |

속박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박스 상단에는 좋은 품질의 것을 담고 하단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담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 통합 (垂直的統合 : 종적 통합)

이는 특정 유통 기관이 유통 단계상 앞쪽이나 뒤의 단계에 있는 다른 유통 주체가 수행하던 유통 기능을 통합·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종적 통합”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도매상이 소매상을 통합하면 전방 통합이고, 반대로 생산 기능을 통합하면 후방 통합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른 유통 기관을 매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거나 혹은 계약에 의해 지배력을 가짐으로써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수집상(蒐集商)

소량의 생산품을 매집(買集)하여 이를 반출상에 인도하거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통 자본력이 약한 소상공인으로서 농안법에서는 “산지 유통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기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나 전보로 시장의 상품 동향 및 가격을 연락받고 농민들에게 구매 가격을 제시하며 대체로 운송에 적합한 양이 수집될 때까지 혹은 중앙시장의 시세가 호전될 때까지 보관하는 시설을 가진다. 수집상은 출하 업무 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수평적 통합 (水平的統合 : 횡적 통합)

다른 입지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것과 같이 특정 유통 기관이 수행하는 유통 기능의 횡적인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차원에서 인식되는 개념이며 “횡적 통합”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어떤 철물점이 다른 비슷한 철물점에서는 보통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여 폭넓은 상품 구색을 갖추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의 동일한 기능이 중복되어 수행되거나 또는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의 유통 기관에 의해 수행될 때 이를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아도

한 물건을 몽땅 사는 것을 말하며, 몽땅 사는 사람을 아도꾼이라 한다.

앞자리상

중도매인 점포 앞에 좌판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비허가 상인을 일컫는다. 보통 중도매인이 팔고 남은 물건을 싼값에 받아서 판매한다.

염건(鹽乾)

원료어를 염장(鹽藏)한 다음 건조한 것. 전갱이·정어리·꽂치·고등어처럼 알맞게 짠맛을 붙여 식미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간대구처럼 염장함으로써 수분을 일부 탈수시키는 동시에 식염의 방부력으로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염장(鹽藏)

식품 보관법의 하나로 어류, 육류, 채소 등의 식품에 다량의 식염을 뿌리든가(마른 간법), 식품을 진한 식염수에 침지(물간법)해서 저장하는 것이다.

오대

큰 손을 의미하는데 농수산물의 경우 한 품목에서 거래규모가 5걸 또는 10걸 안에 드는 거상을 일컬어 오대라 한다.

예냉(豫冷)

신선 농산물의 품질 및 저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작물마다 수확 후 최적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 즉시 저온 저장 또는 수송에 적합한 저온으로 예냉을 실시한다. 예냉을 실시하면 중량 감소를 억제하여 산물을 신선하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채소류에 풍부한 비타민이나 다른 기능성 물질의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 예냉 온도는 각 농산물마다 다르나, 딸기의 경우 예냉 온도는 5℃ 이하이다.

[예냉의 종류]

| | |
|-------------------------------|---|
| 냉각실 냉각 (Room cooling) | 산물을 저온 저장고 내에 보관함으로써, 대류에 의해 산물로부터 주변의 찬공기로 열이 방출되는 방식 |
| 차압 통풍식 (Force-air cooling) | 과일, 채소류, 절화의 예냉에 널리 사용되며, 포장 용기 내부의 산물 사이로 찬 공기를 강제로 통과하도록 장치가 가동되어 산물로부터 열을 뺏으므로 냉각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식 |
| 수냉식 (Hydro-cooling) | 산물을 냉각수에 직접 담군 채로 이동시키거나, 적재된 상자 위로 냉각수를 샤워기처럼 뿌리는 방식 |
| 얼음 냉각식 (Package icing) | 조각난 얼음이나 가루 얼음을 직접 또는 주머니에 담아서 원예산물 위에 치상하는 방식 |
| 진공식 예냉 (Vacuum cooling) | 신선 농산물을 밀폐된 용기 내에 두고, 외부에서 펌프로 용기 내부의 압력을 W 낮춤으로써 조직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방식 |

위탁 판매(委託販賣)

상품이나 증권의 매매를 자기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위탁 판매라 하고, 구매를 위탁하는 것을 위탁 구매라 한다. 예컨대 농수산물 공영 도매 시장의 경우 농수산물을 위탁 받는 수탁자는 도매시장법인, 상장에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이 된다. 이러한 위탁매매를 간접 매매라고도 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를 해야 하는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를 의뢰하는 불법거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탁상(委託商 ; 객주)

불특정 다수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 중간상으로 위탁 판매를 업으로 하며, 위탁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과거에 객주라고도 불리던 이들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흥정을 하는 대리상으로, 위탁자와 장기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는다. 대체로 농수산물의 경우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려 하지 않거나, 농·수협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다. 위탁상은 한 트럭 분 정도의 상품을 중앙시장에 반출하여 그것을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수료와 경비

를 차감한 잔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한다. 중개상과의 차이는 계약 이행 시의 구속성 유무 및 판매 상품의 직접 취급 유무이다. 즉 중개상은 위탁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으며, 판매 상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지 않음에 반해 위탁상은 위탁 조건에 따른 제약을 받으며 위탁 상품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유사 도매시장 (類似都賣市場)

특정 장소에 자연 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었거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개설된 시장 또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주변으로 상권이 확장, 형성되어 농수산물의 도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개인 위탁상에 의한 수탁 판매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유통 단지(流通團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유통 시설”과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유통 시설”은 상품의 수송, 보관, 포장, 하역, 가공, 통관, 판매, 정보 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규모 점포, 공동 집배송 단지 및 전문 상가 단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및 물류센터, 농·수협외의 구매·판매 관련 시설과 화물터미널 등을 의미한다. “지원 시설”은 유통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 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농수산물 종합처리장, 가공품 생산공장, 미곡 건조보관·가공 시설, 정보처리 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유통 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예외적으로 100만㎡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 감면,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송(移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쓰이는 의미로서 ‘이송’이란 경락된 상품을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이동하거나, 중도매인 점포와 점포 사이에 상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주로 시장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의 이동 과정을 말한다.

입도 선매(立稻先賣)

궁핍한 미작(米作) 농가가 현금 취득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수확 전에 미곡 상인이나 고리대금 업자에게 미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적인 농업 경영이나 금융의 길을 갖지 못한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농가 경제의 궁핍을 이용하여 엽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전송(轉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용되는 의미로서의 ‘전송’이란 도매시장 간 상품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A라는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상품이 B라는 도매시장으로 재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중개상(仲介商 ; 거간 ; 중개인)

특히 시황에 밝아 시장 정보 기능을 겸한 중간상으로서, 매매 당사자의 중간에 개재하여 거래를 매개하며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소개 상인이다.

따라서 소유권에 수반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매 쌍방을 장기적으로 대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중간에 개입하는 자로 중개 기능만 수행할 따름이다.

지육(枝肉)

식육 동물 도체 후 부산물(내장, 간, 염통 등)을 제외한 상태를 말한다.

주재 하주

도매시장에 출하자들이 농수산물을 출하하면 출하자들을 대신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거나 상장애외품목을 중도매인에게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민들이 지방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시장정보도 부족하고 가격 교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친척이나 동네별로 믿을만한 대표를 뽑아 도매시장에 상주시키면서 출하업무를 전담시키는데, 출하뿐만 아니라 가격홍정 및 가격 결정 관리 감독, 시장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송 도매상
(直送都賣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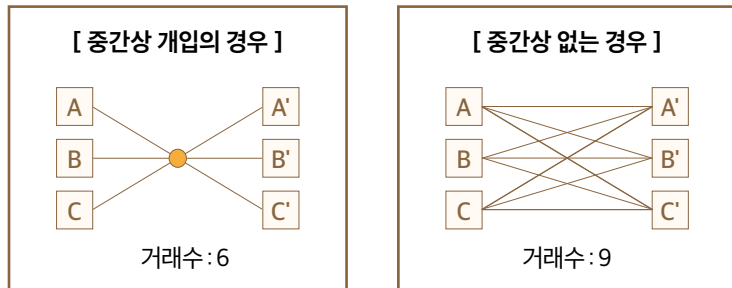
생산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대상 상품은 생산자의 창고에 보관하여 둔 채 소매상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는 도매상이다.

직판 상인(直販商人)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종의 소매상인을 말한다.

총 거래수 최소의 원리(principle of minimum total transaction)

유통 경로에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거래수가 결과적으로 크게 단순화·통합화 되어 실질적인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출하 선도금
(出荷先渡金)**

조합원이 사전에 농산물 출하를 약정했을 때 예상 판매 가격의 80%까지 미리 지급하여 줌으로써 수확기에 집중 출하하여 “궁박(窮迫)판매”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출하 장려금
(出荷獎勵金)**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상장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칼질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격을 높게 해주어 출하자를 유인한 다음 성출하기에는 가격을 낮추는 것을 뜻한다.

트럭 도매상

소매상에 대해 판매와 배달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판로를 확대해 가는 도매상으로 서 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부패성이 강한 한정된 상품 계열만을 취급하면서 슈퍼마켓, 소규모 야채 상점, 병원, 음식점 및 호텔 등을 순화하면서 판매한다.

**판매 장려금
(販賣獎勵金)**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상장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포전 매매(圃田賣買)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매인

중도매인에게 직접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소매상인을 말한다.

하인(荷印)

포장 화물의 표면에 기입하는 특정한 기호, 목적지, 취급상의 문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의 목적은 화물 취급자로 하여금 다른 물건과 구분하여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주는 데 있다.

하주

출하주를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후려치기

청과물 또는 수산물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행위로서 출하주에 대해서 매입자가 가격을 흑독하게 깎아내려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Pallet

화물을 일정 수량 단위로 모아 하역, 보관,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역 받침이다. Pallet(팔레트)는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 목재 Pallet, 철제 Pallet, 플라스틱 Pallet, 종이 Pallet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용하는 측면 수에 따라 단면형과 양면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게차가 Pallet를 들어 올릴 수 있기 위해 지게차 팔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수에 따라 2차입식과 4차입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KS 표준팔레트 규격은 가로세로 1.1미터의 정방형 팔레트이다.



**PPS
(Pallet Pool System)**

Pallet의 규격, 척도 등을 표준화하고 상호 교환성이 있도록 한 후 이를 서로 Pool로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기업의 물류 합리화를 달성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 통용어]

| 품 목 | 품종의 통용어 | 용어 해설 |
|-----|-----------|--|
| 감자 | 수미 | 수미(秀美) 감자 |
| | 조풍 | 봄, 여름 1기작용 품종 |
| | 대지 | 대지(大地) 감자 |
| | 남작 | 재배 역사가 가장 긴 식용 감자 |
| 호박 | 쥬키니 | 비덩굴성, 장원통형의 과형 |
| | 단호박 | 암록 반점의 편원형 서양계 호박 |
| | 늙은 호박 | 건강식 수요로 쓰이는 숙과용 호박 |
| | 애호박 | 성숙이 덜된 재래종 어린 호박 |
| 딸기 | 육보(레드필) | 과육은 부드러우나 과피가 단단한 딸기 |
| | 여봉 | 저장성 및 당도가 높은 딸기 |
| | 여홍 | 저장성이 떨어지는 대과형 딸기 |
| | 수홍 | 원추형이며 당도가 높은 딸기 |
| 고추 | 한초(조선고추) | 재래종 건고추 |
| | 호초(호고추) | 개량종 건고추 |
| | 건고추 양건 | 햇볕에 말린 고추 |
| | 건고추 화건 | 화력에 의해 건조한 고추 |
| | 푼고추 | 푼고추 |
| | 붉은 고추 | 건조되지 않은 붉은 고추 |
| | 파리 고추 | 모양이 찌글찌글한 소형 푼고추 |
| | 청양 고추 | 광택이 나는 매운 고추 |
| | 색초 | 모양이 가늘고 길며 색택이 짙은 건고추 |
| | 얼치기 | 재래종과 개량종 중간 정도의 크기인 건고추 |
| | 희나리 | 건조 상태가 나쁘거나 병해로 인해 흰색 또는 푸른색이 혼합되어 건조된 품질이 낮은 고추 |
| | 백통 | 80% 이상이 흰색으로 건조된 고추 |
| | 땡초(대추 고추) | 파키스탄산 수입 고추 |
| | 하늘초 | 하늘 방향으로 열리는 아주 작은 고추 |
| | 지렁이초 | 인도산 수입 고추, 국내 재배분으로 가늘고 길며 모양이 꾸불꾸불한 고추 |
| | 불갱이 | 서리를 맞아 착색이 불안정한 건고추 |
| 마늘 | 올마늘 | 조생종(早生種) 햇마늘 |
| | 벌마늘 | 쪽이 많고 열구가 심한 난지형 마늘 |
| | 육쪽 마늘 | 한지형, 재래종 마늘 |
| | 토종 마늘 | 재래종 마늘 |
| | 아까 마늘 | 구(球)의 색택이 엷은 붉은색의 재래종 마늘 |
| | 암마늘 | 열구된 마늘 |
| | 백마늘 | 수입산 마늘의 국내 재배분으로 외형이 크고 백색인 마늘 |
| | 통마늘 | 줄기를 제거한 상태의 마늘 |

| 품 목 | 품종의 통용어 | 용어 해설 |
|-----|---------|---------------------------------------|
| 마늘 | 쪽마늘 | 쪽을 분리한 상태의 마늘 |
| | 간마늘 | 껍질을 벗긴 마늘 |
| 양파 | 옥파 | 구(球)가 작고 둥근 양파 |
| | 하스끼 | 잎달린 상태로 거래되는 조생종 햇양파(주로 제주산 햇양파를 일컬음) |
| | 하기리 | 잎을 제거한 후 망 단위로 거래되는 양파 |
| | 숫양파 | 추대가 된 양파 |
| | 대파 | 길이가 40cm 이상으로 큰 파 |
| 파 | 가랑파(중파) | 길이가 30cm 정도의 파 |
| | 당파 | 쪽파 |
| | 로스파 |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대파 |
| | 냉이파 | 제주도산 대파 |
| | 실파 | 잎이 가는 파 |
| 사과 | 할로파 | 줄기와 잎이 연한 파 |
| | 후지 | 부사 |
| | 홍로 | 숙기가 9월 중·하순경인 조생종 사과 |
| | 양광 | 숙기가 10월 상순인 중·만생종 사과 |
| | 아오리 | 여름 부사, 쓰가루 |
| 감 | 부유 | 숙기가 11월 상순인 만생종감 |
| | 서촌조생 | 숙기가 9월 하순인 극조생감 |
| | 차랑 | 숙기가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인 만생종감 |
| | 하지야 | 외관상 팽이 모양을 한 뽕은감 |
| | 약시 | 과육이 부드러운 원형 모양의 뽕은감 |
| 고구마 | 밤 고구마 | 붉은 색으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으며 속이 밤처럼 견실한 고구마 |
| | 물 고구마 | 색택이 얇으며 수분 함량이 많은 큰 고구마 |
| | 호박 고구마 | 약간 누런 색으로 당도는 높지 않으며 속이 호박과 같음 |
| 오이 | 가시 오이 | 가시가 많고 주름이 많은 장과형(長果型) 오이 |
| | 청풍 오이 | 백침계 오이 |
| | 백다다기 | 반백색의 단과형 오이 |
| | 취청 | 겨울에 재배되는 오이 중에서 검푸른색 계통의 오이 |
| | 노각 오이 | 절임용 오이 |

[수산물 통용어]

| 품 목 | 품종의 통용어 | 용어 해설 | |
|----------|---------|---------------------------------|--------------------|
| 고등어 | 생고 | 생물 고등어 | |
| | 냉고 | 냉동 고등어 | |
| | 염장 | 염장 고등어 | |
| | 고돌이 | 고등어 새끼 | |
| | 망치 | 일반 고등어의 별칭 | |
| 갈치 | 풀치 | 성장이 덜된 어린 갈치 | |
| | 석어 | 일반 조기의 별칭 | |
| | 참조기 | 이마 부분에 ◇표시가 있음 | |
| 조기 | 수조기 | 빨간색 조기 | |
| | 부세 | 중국산 수입 조기 | |
| | 굴비 | 참조기를 엮어 말린 것 | |
| 명태 | 생태 | 냉장된 상태로 출하된 명태 | |
| | 동태 | 얼린 명태 | |
| 물오징어 | 이까 | 물오징어의 별칭 | |
| 돔 | 삼마 | 돔의 별칭 | |
| | 구로다이 | 검은 돔 | |
| | 아까다이 | 붉은 돔 | |
| 전갱이 | 배들래기 | 적당한 크기의 돔 | |
| | 아지 | 전갱이 큰 것(전갱이의 사투리) | |
| | 메가리 | 전갱이 새끼 | |
| 임연수어 | 이면수 | 임연수어의 별칭 | |
| | 새치 | 임연수의 새끼 | |
| 방어 | 메지 | 방어 새끼 | |
| 삼치 | 삼돌이 | 삼치 새끼 | |
| 적어 | 열갱이 | 적어의 사투리 | |
| 도루묵 | 은어 | 몸의 배쪽이 은빛이 남 | |
| | 오바 | 가장 큰 멸치로 황백색에 6~8cm 이상 | |
| | 쥬바 | 중간 정도 크기의 멸치 | |
| | 훈쥬바 | 쥬바 중에서 크기가 균일한 멸치 | |
| | 오쥬바 | 크기가 5~6cm 정도의 멸치 | |
| | 고쥬바 | 쥬바보다 약간 작은, 길이 3~6cm 정도의 황백색 멸치 | |
| | 건멸치 | 고바 | 고쥬바보다 약간 작은 멸치 |
| | | 죽방 | 국물용으로 쓰이는 큰 멸치 |
| | | 가이리 | 길이 2cm 정도의 멸치, 세멸치 |
| 가이리고바 | | 길이 2.5cm 정도의 멸치 | |
| 까나리(까네기) | | 몸통이 가늘고 긴 멸치 | |
| 실치 | | 갈치 새끼를 건조한 것 | |

| 품 목 | 품종의 통용어 | 용어 해설 |
|---------|----------------------|--|
| 건멸치 | 지리멸 | 길이 1cm 정도로 작은 애멸치 |
| | 지리 가이리 | 지리멸 보다 약간 큰(1.5cm 정도)소멸치 |
| | 오사리 | 7~8월 성어기 사이에 어획된 멸치 |
| | 중사리 | 8~9월 사이에 어획된 멸치 |
| | 만사리 | 10~11월 사이에 어획된 멸치 |
| | 늦사리 | 12월에 어획된 멸치 |
| | 건오징어 | 대이까 |
| 중이까 | | 중간 정도 크기의 건오징어 |
| 소이까 | | 작은 크기의 건오징어 |
| 근해산 오징어 | | 동해안 근해에서 어획 건조한 건오징어 |
| 덤장 오징어 | | 정치망으로 어획하여 건조한 건오징어 |
| 서해안 오징어 | | 서해안에서 어획하여 건조한 건오징어 |
| 냉동 오징어 | | 냉동 후 건조한 오징어 |
| 물하사끼 | | 일본 훗카이도 근해에서 어획하여 건조한 오징어 |
| 얼룩이 | | 건조 과정에서 변색된 건오징어 |
| 먹통 | | 갑오징어 |
| 김 | | 노랭이 |
| | 하동 노랭이 | 하동 지방에서 출하되는 누른색을 띤 김 |
| | 광양 노랭이 | 광양 지방에서 출하되는 누른색을 띤 김 |
| | 청김 | 파래 |
| | 검청김 | 검청색을 띤 김 |
| | 흑김 | 검은색을 띤 김 |
| | 돌김 | 자연산 채취분으로서 햇볕에 건조한 김 |
| | 화입김 | 화력에 의해 건조한 김 |
| | 깔깔이 | 자연산 김 |
| | 오리 | 개량종 김 |
| 건명태 | 히라 | 재래종 김 |
| | 북어 | 말린 명태 |
| | 노가리 | 북어 새끼 |
| | 황태(노랑태, 언태, 동지태) | 1.5~5개월 간 얼렸다 말렸다 20회 이상 거듭한 것 |
| | 영태황태 | 4~5개월 정도 높은 산에서 말린 것 |
| | 바닥태황태 | 45~75일 정도 바닷가 덕장에서 바닥에 깔아 말린 것 |
| | 반황태(반노랑태, 얼바람태, 반얼태) | 35~45일 정도 말린 것 |
| | 흑태, 먹태 | 5~30일 정도 말린 것 |
| | 코달이 | 흑태 중에서 5~7일 정도 말린 것으로 코를 끼운 것 |
| | 엮걸이 | 흑태 중에서 5~7일 정도 말린 것으로 코달이 중 작은 것을 5~10마리를 엮으로 엮은 것 |

| 품 목 | 품종의 통용어 | 용어 해설 |
|--------|---------|------------------------|
| | 골태 | 건조 도중 비를 맞은 흑태 |
| | 바닥태 | 눈 속에서 조금 얼게 한 후 건조한 것 |
| | 추태 | 가을에 건조한 흑태 |
| | 춘태, 신태 | 봄에 건조한 흑태 |
| | 바람태 | 주로 바람에 의존해서 건조한 흑태 |
| 건명태 | 동건품 | 얼렸다 말리는 작업을 반복해서 건조한 것 |
| | 일건품 | 햇빛에 의해 건조한 것 |
| | 열풍 건조품 | 화력에 의해 건조한 것 |
| | 대태 | 크기가 큰 건명태 |
| | 중태 | 크기가 중간 정도의 건명태 |
| | 소태 | 크기가 작은 명태 |
| | 화포 | 건미역 |
| 미역 | 울진각 | 울진 근해에서 생산되는 건미역 |
| | 절임미역 | 염장미역 |
| 굴 | 석화 | 반만 깬 것 |
| | 오젓 | 음력 5월에 담은 새우젓 |
| | 육젓 | 음력 6월에 담은 새우젓 |
| 새우젓 | 추젓 | 가을에 담은 새우젓 |
| | 동백하 | 겨울에 담은 새우젓 |
| | 잡젓 | 여러 종류의 고기를 섞어 담은 것 |
| | 쥐포 | 쥐치를 벗겨 얇게 썰어 말린 것 |
| 쥐치 | 알포 | 쥐치 껍질을 벗겨 가공시킨 것 |
| | 꾼포 | 쥐치 껍질을 벗겨 구운 후 눌린 것 |
| | 줄포 | 여러 마리를 붙여 길이가 긴 쥐포 |
| 해래기 | | 동죽(조개)을 깬 것 |
| 물동죽 | | 물에 담아 놓은 동죽 |
| 것동죽 | | 물에 담지 않은 동죽 |
| 고니 | | 동태 내장 |
| 모시=가무락 | | 모시 조개 |
| 물바 | | 물바지락 |
| 간바 | | 간바지락 |
| 오알 | | 오징어 알 |
| 오피 | | 갑오징어 껍질 |
| 희라=날개 | | 키조개(가이바시)에서 날개를 떼어 낸 것 |
| 게지 | | 키조개를 깬 것 |
| 꼬록=꼬르기 | | 꿀뚜기 |
| 개우렁 | | 바다 우렁 |
| H.S=석화 | | 굴 종류로서 반만 깬 것 |

| 품 목 | 품종의 통용어 | 용어 해설 |
|----------|---------|---------------------|
| A.K.S | | 석화 껍질 반만 깬 것 |
| 참미 | | 자연산 미더덕 |
| 왕왕 | | 대합의 크기 용어 |
| 시바새우 | | 껍질이 하얀 새우 |
| 백살(백새우살) | | 시바새우 깬 것 |
| 소망 | | 홍합망의 크기(대망, 중망, 소망) |
| 홍살 | | 홍합살 |
| 석굴 | | 굴 종류로서 안간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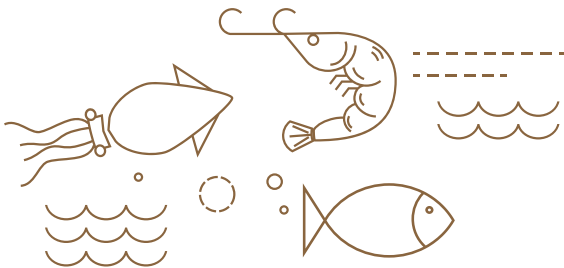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공인기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전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부록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 홈페이지

[물가 및 농산물가격 정보제공 웹사이트 목록]

| 기관 및 단체 | 주소 | 주요내용 |
|---------------------------|---------------------------|-------------------------------|
| aT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 www.kamis.co.kr | 도·소매가격, 유통실태, 동향 및 전망 |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http://global.at.or.kr | 식품가격, 식품산업 정보 및 동향 |
| 농협 | www.nonghyup.com | 농산물 유통정보 및 가격정보 |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정보 | www.garak.co.kr | 경매 및 도매시장 유통정보 |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 http://at.agromarket.kr | 출하자 및 전자경매정보, 도매시장 거래동향 파악 |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 www.nongsaro.go.kr | 농식품동향 및 도·농업관련 정보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시스템 | https://aglook.krei.re.kr | 농축산물 주요통계 및 거래동향 |
| 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시스템 | https://www.price.go.kr |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 |
| 행안부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 | www.mois.go.kr | 지방물가정보 및 통계 |
| 한국물가협회 | www.kprc.or.kr | 물가 및 적산자료 원가조사 정보 |
| 한국물가정보 | www.kpi.or.kr | 물가 및 적산자료 원가계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제2판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편집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개선 전문가협의체 및 관계기관

|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
| 행정 (5) |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 | 김종구 |
| | | 과장 | 홍인기 |
| | | 사무관 | 곽병배 |
| | | 사무관 | 이시행 |
| | | 주무관 | 윤준수 |
| 전문가 협의체 (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협의체 위원장) | 선임연구위원 | 김병률 |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부장 | 이영선 |
| | | 차장 | 진태훈 |
| | 농촌진흥청 | 과장 | 위태석 |
|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팀장 |
| | P/L | | 이성재 |
| | 충남대학교 | | 교수 |
| | 상명대학교 | 교수 | 양석준 |
| | 순천대학교 | 교수 | 이춘수 |
| | 아이콘마케팅연구소 | 대표 | 김대수 |
| | 엘리스경영연구소 | 대표 | 김은정 |
| | (주)비즈패스 | 이사 | 박성기 |
| | (주)농제연 | 대표 | 송정환 |
| 농산업융합연구소 | 소장 | 성형주 | |
| 자문 | 농안법 자문관 | 자문관 | 서판대 |

자료문의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부(홍지수 주임, 고연주 주임 061-931-1043)
인쇄·디자인 오픈마인드(02-516-87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제2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